

2025회계연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보고서

행	정	안	전	부	소관
중	앙	선	거	관	리 위 원 회 소관
진	실	·	화	해	를 위 한 과 거 사 정 리 위 원 회 소관
인	사	혁	신	처	소관
경		찰		청	소관
소		방		청	소관

2026. 9.

행 정 안 전 위 원 회

목 차

I. 소관부처 결산	1
II. 심사경과	3
III. 결산개요	4
【행정안전부 소관】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27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53
【인사혁신처 소관】	63
【경찰청 소관】	82
【소방청 소관】	101
IV.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111
【행정안전부 소관】	11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125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130
【인사혁신처 소관】	131
【경찰청 소관】	133
【소방청 소관】	138
V. 대체토론의 요지	142
VI.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145
VII. 찬반토론의 요지	146
VIII. 심사결과	147
IX. 소수의견의 요지	148
X. 기타 필요한 사항	148
※ <별첨> 2025회계연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2025회계연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결산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26. 9. .

행정안전위원회

I. 소관부처 결산

1. 행정안전부 소관

- 일반회계 : 세입 및 세출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세입 및 세출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일반회계 : 세입 및 세출

3.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 일반회계 : 세입 및 세출

4. 인사혁신처 소관

- 일반회계 : 세입 및 세출
- 공무원연금기금 : 수입 및 지출

5. 경찰청 소관

- 일반회계 : 세입 및 세출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경찰병원) : 세입 및 세출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세출

6. 소방청 소관

- 일반회계 : 세입 및 세출

Ⅱ. 심사경과

1. 제 출 일 자 : 2026년 5월 29일

2. 회 부 일 자 : 2026년 7월 1일

3. 상정일자 및 의결일자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6. 8. 24.)

행정안전부 소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인사
혁신처 소관, 경찰청 소관, 소방청 소관 :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2026. 8. 25.)

행정안전부 소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인사
혁신처 소관, 경찰청 소관, 소방청 소관 :

상정 · 심사 · 의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6. 9. 1.)

행정안전부 소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인사
혁신처 소관, 경찰청 소관, 소방청 소관 :

상정 · 소위원회 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원안
가결)

Ⅲ. 결산개요

【행정안전부 소관】

1. 세입·세출 결산

- 2025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소관 회계·기금은 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등 2개 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금은 없음.

2025회계연도 세입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액은 1,630억 7,700만원이나 1,646억 2,0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1,298억 4,600만원이 수납(수납률 78.9%)되었고 347억 7,3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

-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예산액이 1,433억 9,200만원이나 928억 4,1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770억 6,500만원이 수납(수납률 83.0%)되었고 157억 7,5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예산액이 196억 8,500만원이나 717억 7,9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527억 8,100만원이 수납(수납률 73.5%)되었고 189억 9,8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

[2025회계연도 행정안전부 회계별·계정별 세입 결산(총계기준)]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일반회계	143,392	92,841	77,065	15,775	2	83.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9,685	71,779	52,781	18,998	-	73.5
지역자율계정	5,766	26,363	25,814	549	-	97.9
지역지원계정	13,919	45,391	26,942	18,449	-	59.4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25	25	-	-	100.0
세종특별자치시계정	-	-	-	-	-	-
합 계	163,077	164,620	129,846	34,773	2	78.9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됨

□ 2025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액은 85조 9,821억 8,300만원, 예산현액은 86조 2,431억 4,100만원이며, 이 중 86조 934억 4,500만원이 지출(집행률 99.8%)되었고 305억 700만원이 이월, 1,191억 8,900만원이 불용되었음.

□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예산액이 82조 5,548억 1,300만원, 예산현액은 82조 8,155억 4,400만원이며, 이 중 82조 6,776억 7,300만원이 지출(집행률 99.8%)되었고 303억 4,400만원이 이월, 1,075억 2,600만원이 불용되었음. 지역균형발전1특별회계는 예산액이 3조 4,273억 7,000만원, 예산현액은 3조 4,275억 9,700만원이며, 이 중 3조 4,157억 7,200만원이 지출(집행률 99.8%)되었고 1억 6,200만원이 이월, 116억 6,3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행정안전부 회계별·계정별 세출 결산(총계기준)]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일반회계	82,554,813	82,815,544	82,677,673	30,344	107,526	99.8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427,370	3,427,597	3,415,772	162	11,663	99.8
지역자율계정	252,898	252,898	252,898	-	-	100.0
지역지원계정	3,158,051	3,158,278	3,146,453	162	11,663	99.6
제주특별자치도계정	10,303	10,303	10,303	-	-	100.0
세종특별자치시계정	6,118	6,118	6,118	-	-	100.0
합 계	85,982,183	86,243,141	86,093,445	30,507	119,189	99.8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총수입·총지출 결산

(1) 일반회계

가. 총수입

□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총수입은 예산액이 1,433억 9,200만원이나 928억 4,1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770억 6,500만원이 수납(수납률 83.0%)되었고 157억 7,5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관/항/목	예산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재산수입(11)	18,938	16,642	15,079	1,563	-	90.6
관유물대여료(51)	3,400	6,874	6,286	588	-	91.4
토지대여료(511)	424	117	116	1	-	99.1
건물대여료(512)	2,976	6,757	6,170	587	-	91.3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54)	15,538	9,768	8,793	975	-	90.0
기타재산이자수입(546)	15,538	9,768	8,793	975	-	90.0
기타재산이자외수입(547)	15,538	9,768	8,793	975	-	90.0
경상이전수입(12)	115,079	65,282	51,480	13,800	2	78.9
벌금,몰수금및과태료(56)	-	1,570	341	1,229	-	21.7
몰수금및추징금(562)	-	48	-	48	-	0.0
징계부과금(564)	-	54	25	29	-	46.3
과징금(565)	-	1,468	316	1,152	-	21.5
변상금및위약금(57)	945	1,645	625	1,018	2	38.0
변상금(571)	-	8	-	8	-	0.0
위약금(572)	945	1,637	625	1,010	2	38.2
가산금(58)	-	5	1	4	-	20.0
가산금(581)	-	5	1	4	-	20.0
기타경상이전수입(59)	114,134	62,065	50,513	11,549	-	81.4
기타경상이전수입(596)	114,134	62,065	50,513	11,549	-	81.4
재화및용역판매수입(13)	1,297	1,530	1,119	412	-	73.1
면허료및수수료(65)	38	19	19	-	-	100.0
면허료및수수료(651)	38	19	19	-	-	100.0

(단위: 백만원, %)

관/항/목	예산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잡수입(69)	1,259	1,511	1,100	412	-	72.8
기타잡수입(691)	1,259	1,511	1,100	412	-	72.8
수입대체경비수입(14)	8,078	9,386	9,386	-	-	100.0
잡수입(69)	8,078	9,386	9,386	-	-	100.0
기타잡수입(691)	8,078	9,386	9,386	-	-	100.0
관유물매각대(15)	-	1	1	-	-	100.0
재고자산매각대및유동자산(73)	-	1	1	-	-	100.0
유동자산매각대(732)	-	1	1	-	-	100.0
합 계	143,392	92,841	77,065	15,775	2	83.0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총지출

① 총 괄

-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총지출은 예산액이 82조 5,548억 1,300만원, 예산현액은 82조 8,155억 4,400만원이며, 이 중 82조 6,776억 7,300만원이 지출(집행률 99.8%)되었고 303억 4,400만원이 이월, 1,075억 2,6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분야/부문/프로그램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일반·지방행정	81,110,160	81,280,082	81,151,852	26,215	102,2015	99.8
일반행정	1,001,665	980,953	953,555	1,005	26,393	97.2
기록물관리	45,336	50,013	48,713	257	1,044	97.4
민주화지원및과거사정리	322,510	270,616	260,488	50	10,076	96.3
정부의전	18,656	18,753	17,731	10	1,012	94.6
청사관리	227,123	233,283	229,374	210	3,769	98.3
행정안전행정지원	388,040	408,288	397,349	445	10,493	97.3

(단위: 백만원, %)

분야/부문/프로그램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정부자원관리	790,534	970,664	921,012	24,864	24,787	94.9
인사관리	167	167	160	-	7	95.6
전자정부	765,235	945,365	898,141	24,055	23,170	95.0
정부혁신조직	25,132	25,132	22,712	810	1,610	90.4
지방행정·재정지원	79,317,961	79,328,466	79,277,285	346	50,835	99.9
이북5도	2,291	2,291	2,150	-	141	93.9
지방교부세	67,038,505	67,038,505	67,038,505	-	-	100.0
지방자치분권	39,480	48,727	42,509	164	6,055	87.2
지방자치인재개발	14,370	15,627	15,309	-	319	98.0
지방재정경제	12,197,169	12,197,169	12,152,676	182	44,311	99.6
지역발전	26,146	26,146	26,136	-	10	99.9
공공질서및안전	1,444,653	1,535,461	1,525,821	4,129	5,511	99.4
경찰	68,252	68,252	66,686	-	1,552	97.7
과학수사	68,252	68,252	66,686	-	1,552	97.7
재난관리	1,376,401	1,467,223	1,459,135	4,129	3,959	99.4
안전관리	36,062	36,449	34,244	669	1,537	93.7
재난관리	1,100,184	1,187,438	1,186,654	78	706	99.9
재난안전기술개발	91,965	91,965	91,377	-	588	99.4
재난안전정보화	148,190	151,371	146,860	3,382	1,129	97.0
사회복지	-	-	-	-	-	-
취약계층지원	-	-	-	-	-	-
일자리지원	-	-	-	-	-	-
합 계	82,554,813	82,815,544	82,677,673	30,344	107,526	99.8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② 이월·불용

□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이월률)이 큰 사업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비상대비정보화(정보화)’ 사업은 예산현액 79억 400만원 중 33억 8,200만원(이월률 42.8%)을 이월하였고,

‘정책연구개발’ 사업은 예산현액 9억 3,000만원 중 3억 600만원(이월률 33.0%)을 이월하였으며,

‘정부혁신추진 및 확산’ 사업은 예산현액 200억 3,400만원 중 7억 6,100만원(이월률 13.9%)을 이월하였고,

‘재난안전사업평가’ 사업은 예산현액 15억 3,200만원 중 1억 6,500만원(이월률 10.8%)을 이월하였으며,

‘기관운영및예산지원관리’ 사업은 예산현액 18억 600만원 중 1억 3,900만원(이월률 7.7%)을 이월하였음.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사업 중 이월률 상위 5개 세부사업]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이월액 (B)	불용액	이월률 (B/A)
비상대비정보화(정보화)	7,904	7,904	4,512	3,382	10	42.8
정책연구개발	922	930	572	306	51	33.0
정부혁신추진 및 확산	5,492	5,482	4,185	761	535	13.9
재난안전사업평가	1,466	1,532	1,272	165	94	10.8
기관운영및예산지원관리	1,682	1,806	1,586	139	81	7.7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불용률)이 큰 사업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인건비(진실화해위원회)’ 사업은 예산현액 7,700만원 중 7,600만원
(불용률 99.5%)을 불용하였고,

‘진실화해위원회 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10억 8,900만원 중 10억
2,600만원(불용률 94.2%)을 불용하였으며,

‘진실화해위원회기본경비’ 사업은 예산현액 6억 6,400만원 중 5억
7,100만원(불용률 86.0%)을 불용하였고,

‘의정관실(총액)’ 사업은 예산현액 3,100만원 중 1,400만원(불용률
47.2%)을 불용하였으며,

‘국민통합위원회 운영’ 사업은 예산현액 75억 1,300만원 중 32억
900만원(불용률 42.7%)을 불용하였음.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총지출 불용률 상위 5개 세부사업]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B)	불용률 (B/A)
인건비(진실화해위원회)	0	77	0	0	76	99.5
진실화해위원회 지원	0	1,089	63	0	1,026	94.2
진실화해위원회기본경비	0	664	93	0	571	86.0
의정관실(총액)	29	31	16	0	14	47.2
국민통합위원회 운영	7,513	7,513	4,304	0	3,209	42.7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됨

□ 마지막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불용액 합계(미집행률)이 큰 사업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인건비(진실화해위원회)’ 사업은 예산현액 7,700만원 중 7,600만원(미집행률 99.5%)을 미집행하였고,

‘진실화해위원회 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10억 8,900만원 중 10억 2,600만원(미집행률 94.2%)을 미집행하였으며,

‘진실화해위원회기본경비’ 사업은 예산현액 6억 6,400만원 중 5억 7,100만원(미집행률 86.0%)을 미집행하였고,

‘의정관실(총액)’ 사업은 예산현액 3,100만원 중 1,400만원(미집행률 47.2%)을 미집행하였으며,

‘비상대비정보화(정보화)’ 사업은 예산현액 79억 400만원 중 33억 9,200만원(미집행률 42.9%)을 미집행하였음.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총지출 미집행률 상위 5개 세부사업]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이월액 (B)	불용액 (C)	미집행액 (D=B+C)	미집행률 (D/A)
인건비(진실화해위원회)	0	77	0	0	76	76	99.5
진실화해위원회 지원	0	1,089	63	0	1,026	1,026	94.2
진실화해위원회기본경비	0	664	93	0	571	571	86.0
의정관실(총액)	29	31	16	0	14	14	47.2
비상대비정보화(정보화)	7,904	7,904	4,512	3,382	10	3,392	42.9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가. 총수입

- 2025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총수입은 예산액이 196억 8,500만원이나 717억 7,9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527억 8,100만원이 수납(수납률 73.5%)되었고 189억 9,8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

[2025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계정/목	예산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지역자율계정	5,766	26,363	25,814	549	-	97.9
재산수입(11)	483	968	932	36	-	96.3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54)	483	968	932	36	-	96.3
기타재산이자수입(546)	483	968	932	36	-	96.3
경상이전수입(12)	5,283	25,395	24,882	513	-	98.0
기타경상이전수입(59)	5,283	25,395	24,882	513	-	98.0
기타경상이전수입(596)	5,283	25,395	24,882	513	-	98.0
지역지원계정	13,919	45,391	26,942	18,449	-	59.4
재산수입(11)	1,010	3,349	2,705	644	-	80.8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54)	1,010	3,349	2,705	644	-	80.8
기타재산이자수입(546)	1,010	3,349	2,705	644	-	80.8
경상이전수입(12)	12,909	42,042	24,237	17,805	-	57.6
별금,몰수금및과태료(56)	-	240	-	240	-	0.0
과징금(565)	-	240	-	240	-	0.0
기타경상이전수입(59)	12,909	41,802	24,237	17,565	-	58.0
기타경상이전수입(596)	12,909	41,802	24,237	17,565	-	58.0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25	25	-	-	100.0
재산수입(11)	-	5	5	-	-	100.0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54)	-	5	5	-	-	100.0
기타재산이자수입(546)	-	5	5	-	-	100.0
경상이전수입(12)	-	20	20	-	-	100.0
기타경상이전수입(59)	-	20	20	-	-	100.0
기타경상이전수입(596)	-	20	20	-	-	100.0
합 계	19,685	71,779	52,781	18,998	-	73.5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총지출

① 총괄

□ 2025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총지출은 예산액이 3조 4,273억 7,000만원, 예산현액은 3조 4,275억 9,700만원이며, 이 중 3조 4,157억 7,200만원이 지출(집행률 99.7%)되었고 2억 2,700만원이 이월, 116억 6,3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분야/부문/프로그램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일반·지방행정	2,392,218	2,392,401	2,391,352	162	887	99.9
정부자원관리	9,135	9,135	9,095	-	40	99.6
정부혁신조직	9,135	9,135	9,095	-	40	99.6
지방행정·재정지원	2,383,083	2,383,266	2,382,257	162	846	99.9
지방자치분권	25,759	25,842	25,253	77	512	97.7
지방재정경제	1,000,000	1,000,000	999,969	5	26	99.9
지역발전	1,357,324	1,357,424	1,357,035	80	309	99.9
공공질서및안전	1,010,613	1,010,613	1,002,913	-	7,700	99.2
재난관리	1,010,613	1,010,613	1,002,913	-	7,700	99.2
안전관리	1,005,013	1,005,013	997,313	-	7,700	99.2
재난안전기술개발	5,600	5,600	5,600	-	-	100.0
사회복지	24,539	24,583	21,507	-	3,076	87.5
취약계층지원	24,539	24,583	21,507	-	3,076	87.5
일자리지원	24,539	24,583	21,507	-	3,076	87.5
합계	3,427,370	3,427,597	3,415,772	162	11,663	99.7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② 이월·불용

□ 2025회계연도 이월이 있었던 사업은 총 2개 세부사업임.

□ ‘지역발전활성화’ 사업은 예산현액 54억 2,800만원 중 8,000만원(이월률 1.5%)을 이월하였고,

‘자원봉사활성화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133억 2,100만원 중 7,700만원(이월률 0.6%)을 이월하였음.

[2025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총지출 이월 세부사업]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이월액 (B)	불용액	이월률 (B/A)
지역발전활성화	5,328	5,428	5,040	80	308	1.5
자원봉사활성화지원	13,321	13,321	13,175	77	69	0.6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불용률)이 큰 사업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지방시대위원회운영’ 사업은 예산현액 19억 1,900만원 중 4억 4,300만원(불용률 23.1%)을 불용하였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사업은 예산현액 198억 9,700만원 중 30억 6,500만원(불용률 15.4%)을 불용하였으며,

‘지역발전활성화’ 사업은 예산현액 54억 2,800만원 중 3억 800만원(불용률 7.1%)을 불용하였고,

‘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 사업은 예산현액 9,443억 3,200만원 중 77억 원(불용률 0.8%)을 불용하였으며,

‘마을기업육성사업’ 사업은 예산현액 16억 7,500만원 중 1,000만원 (불용률 0.6%)을 불용하였음.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총지출 이월률 상위 5개 세부사업]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B)	불용률 (B/A)
지방시대위원회운영	1,836	1,919	1,476	0	443	23.1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19,853	19,897	16,832	0	3,065	15.4
지역발전활성화	5,328	5,428	5,040	80	308	7.1
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	944,332	944,332	936,632	0	7,700	0.8
마을기업육성사업	1,675	1,675	1,665	0	10	0.6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마지막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불용액 합계(미집행률)이 큰 사업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지방시대위원회운영’ 사업은 예산현액 19억 1,900만원 중 4억 4,300만원(미집행률 23.1%)을 미집행하였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사업은 예산현액 198억 9,700만원 중 30억 6,500만원(미집행률 15.4%)을 미집행하였으며,

‘지역발전활성화’ 사업은 예산현액 54억 2,800만원 중 3억 9,600만원(미집행률 7.1%)을 미집행하였고,

‘자원봉사활성화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133억 2,100만원 중 1억 4,600만원(미집행률 1.1%)을 미집행하였으며,

‘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 사업은 예산현액 9,443억 3,200만원 중 7,700만원(미집행률 0.8%)을 미집행하였음.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총지출 미집행률 상위 5개 세부사업]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이월액 (B)	불용액 (C)	미집행액 (D=B+C)	미집행률 (D/A)
지방시대위원회운영	1,836	1,919	1,476	0	443	443	23.1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19,853	19,897	16,832	0	3,065	3,065	15.4
지역발전활성화	5,328	5,428	5,040	80	308	396	7.1
자원봉사활성화지원	13,321	13,321	13,175	77	69	146	1.1
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	944,332	944,332	936,632	0	7,700	7,700	0.8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 예비비 지출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배정사유	지출결정액	지출액	자금배정일	이월액	불용액
일반		정보자원관리 지원(정보화)	국정자원 화재('25.9.26.) 사고로 화재 복구 예비비 국무회의 의결('25.10.21.)	510	510	11.26.	-	-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전자정부 구축(정보화)	국정자원 화재('25.9.26.)로 인한 재해 복구비	4,265	4,265	11.20.	-	-
		데이터기반 행정활성화 (정보화)	국정자원 화재('25.9.26.)로 인한 재해 복구비	2,785	2,785	12.5.	-	-
		소 계		7,560	7,560		-	-
일반		대통령기록 관리체계구축 (정보화)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1,492	1,490	04.08.	-	2
		대통령기록 관리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3,165	2,938	04.08.	207	19
		소 계		4,656	4,428		207	21
일반		기관운영	제21대 대통령 임기 개시에 따라 국정기획·인수 역할의 운영체계인 「국정기획위원 회」 운영경비 요청	6,563	6,037	6.11.	-	526
		소 계		6,563	6,037	6.11.	-	526
목적	법적의무지출	공직선거관리 및지방의회 역량강화	공직선거추진	7,796	7,796	4.8.	-	1,173
		소 계						
목적	재해대	국가정보자원 관리원운영 (정보화)	국가전산망 복구 지원	21,810	8,359	10.22.	5,485	7,966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배정사유	지출결정액	지출액	자금배정일	이월액	불용액
	책	국가정보자원 관리원운영 (정보화)	정보시스템 복구 및 이전 지원	10,231	6,448	2025.11.17	1,402	2,362
		중앙행정기관 등 노후장비 통합구축 사업	국정자원 화재('25.9.) 복구를 위한 전산장비 구매	129,823	129,823	10.22.	-	-
		소 계		161,864	144,630		6,887	10,328
목적	재해대책	재난대책비 (보조)	8월 호우피해 복구지원	31,006	31,006	10.02	-	-
		재난대책비 (보조)	9월 호우피해 복구지원	8,300	8,300	11.25	-	-
		소 계		39,306	39,306			

자료: 행정안전부

4. 재무결산

가. 재정상태 분석

□ 2025년 말 기준 행정안전부의 자산총액은 14조 1,344억 300만원으로, 전기 말 대비 2조 1,919억 2,800만원(18.4%)감소하였으며, 주요 원인은 금융자산이 큰폭으로 증가(2조 1,650억 7,200만원)하였기 때문이다.

□ 부채총액은 1조 219억 700만원으로 전년 말 대비 8,425억 1,500만원(469.7%)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원인은 차입부채가 8,412억 7,000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 이에 따라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순자산은 13조 1,124억 9,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조 3,494억 1,200만원(11.5%)이 감소하였음.

[2025년도 행정안전부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A)	2024(B)	증감	
			증감액(C=A-B)	증감율(C/B)
I. 자산(a)	14,134,403	11,942,475	2,191,928	18.4 %
· 금융자산	2,249,081	84,009	2,165,072	2,577.2 %
· 유·무형자산	11,859,288	11,817,655	41,633	0.4 %
· 기타자산	26,034	40,812	(14,778)	(36.2 %)
II. 부채(b)	1,021,907	179,392	842,515	469.7 %
· 차입부채	1,018,423	177,153	841,270	474.9 %
· 충당부채	-	-	-	-
· 기타부채	3,484	2,239	1,245	55.6 %
순자산(a-b)	13,112,496	11,763,084	1,349,412	11.5 %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 2025(A) : 2025년 12월 31일자 잔액

2024(B) : 2024년 12월 31일자 잔액

자산의 종류	설 명
유동자산	재정상태표일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되거나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미수채권 등)
투자자산	투자 또는 권리행사 등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장기금융상품, 장기투자증권, 장기대여금, 기타투자자산 등)
일반유형자산	고유한 행정활동에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집기·비품, 건설중인 일반유형자산 등)
무형자산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자산(산업재산권, 소프트웨어 등)
기타비유동자산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및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

나. 재정운영 분석

- 재정운영표는 프로그램(사업) 전체의 원가인 재정운영 결과를 나타내기 위한 표로, 프로그램 순원가·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수익, 비교환수익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재정운영 결과는 프로그램총원가에서 프로그램 수익을 차감한 프로그램순원가에 관리운영비와 비배분비용을 합산하고, 비배분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를 계산한 후, 여기에 국세, 부담금 등 비교환수익을 차감한 것임.

[재정운영 결과 계산식]

-	프로그램 총원가	프로그램 수행시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	프로그램 수익	프로그램과 직접 관련 있는 수익
	프로그램 순원가	
+	관리운영비	인건비 등 프로그램 수행을 지원하는 비용
+	비배분비용	프로그램에 직접 대응하기 어려운 비용
-	비배분수익	과오지급금 회수금 등 프로그램에 직접 대응하기 어려운 수익
	재정운영 순원가	
-	비교환수익	국세, 부담금 등
	재정운영 결과	(프로그램 전체의 원가)84조 7,116억 1,100만원

- 2025년도 행정안전부의 재정운영순원가는 프로그램순원가 84조 2,800억 5,800만원 및 관리운영비 4,685억 1,600만원, 비배분비용 341억 8,700만원을 합산하고, 비배분수익 711억 5,000만원을 차감한 84조 7,116억 1,100만원이며, 비교환수익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재정운영결과는 재정운영순원가와 동일한 84조 2,800억 5,800만원임.

[2025년도 행정안전부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A)	2024(B)	증감	
			증감액(C=A-B)	증감율(C/B)
I. 프로그램순원가	84,280,058	69,857,299	14,422,759	20.6 %
II. 관리운영비	468,516	440,163	28,353	6.4 %
III. 비배분비용	34,187	3,798	30,389	800.1 %
IV. 비배분수익	71,150	72,924	(1,774)	(2.4 %)
V. 재정운영순원가 (I + II + III - IV)	84,711,611	70,228,336	14,483,275	20.6 %
VI. 비교환수익 등	-	-	-	-
VII. 재정운영결과(V-VI)	84,711,611	70,228,336	14,483,275	20.6 %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 2025(A) :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024(B)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 순자산변동 분석

- ☐ 순자산 변동표는 순자산의 변동내역을 표시하는데, 기초순자산에서 재정운영결과를 차감하고 재원의 조달·이전 및 조정항목을 합산한 결과를 기말순자산으로 표시함.

[기말순자산 계산식]

-	기초순자산 재정운영결과	전기 既 보고된 순자산 금액에 오류 등을 반영하여 조정한 것 재정운영표상 사업원가
+	재원의조달	국세·부담금 등 비교환수익, 국고수입
+	재원의이전	중앙관서간의 무상이전거래, 국고이전지출
+	조정항목	순자산의 증가·감소효과를 발생시키는 거래 중 납입자본의 증감, 투자증권 평가손익 등 재원의 조달·이전 비 해당 거래
	기말순자산	

□ 행정안전부의 순자산은 2025년 말 기준 13조 1,124억 9,600만원이며, 2025년 기초순자산은 11조 7,630억 8,400만원, 재정운영결과는 84조 7,116억 1,100만원,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86조 654억 800만원, 조정항목은 - 43억 8,400만원임.

[2025년도 행정안전부 순자산변동표(일반회계+특별회계) 요약]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A)	2024(B)	증감	
			증감액(C=A-B)	증감율(C/B)
I. 기초순자산	11,763,084	12,002,232	(239,148)	(2.0 %)
II. 재정운영결과	84,711,611	70,228,336	14,483,275	20.6 %
III. 재원의조달및이전	86,065,408	70,091,610	15,973,798	22.8 %
IV. 조정항목	(4,384)	(102,422)	98,038	95.7 %
V. 기말순자산 (I - II + III + IV)	13,112,496	11,763,084	1,349,412	11.5 %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 2025(A) :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024(B)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5. 성인지 결산

- 행정안전부 성인지사업은 여성 지방공무원의 대표성 제고, 여성의 사회진출 및 경제활동 지원, 재난상황에 여성의 대응역량 강화를 목표로 4개 세부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총 세출예산현액은 33억 2,400만원이고 집행액은 32억 6,000만원으로 집행률은 98.1%임.

[2025년도 행정안전부 성인지사업 예산집행결과]

(단위: 백만원, %)

회계	세부사업명	2025년			2024년 지출액 (c)	전년대비 증감 (d=b-c)	전년대비 증감률 (d/c)
		예산 현액(a)	집행액 (b)	집행률 (b/a)			
일반회계 소계(A)		3,324	3,260	98.1	1,329	1,931	145.3
일반 회계	(1)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수입대체경비	546	546	100.0	557	△11	△2.0
	- 여성리더양성·심화 과정운영 ²⁾	546	546	100.0	557	△11	△2.0
	(2)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지원 ²⁾	613	574	93.7	499	75	15.1
	(3) 재난관리전문인력 양성	1,890	1,889	100.0	-	1,889	-
	(4) 사회재난교육훈련 및 역량지원강화 ²⁾	275	250	91.0	273	△23	△8.4
특별회계 소계(B)		-	-	-	-	-	-
성별영향평가사업 소계		-	-	-	-	-	-
직접목적사업 소계		-	-	-	-	-	-
합 계(A+B)		3,324	3,260	98.1	1,329	1,931	145.3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주 1) 직접목적 사업

2) 성별영향평가 사업

6.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

- ☐ 2025회계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에는 행정안전부 소관 사업이 포함되지 않았음.

7. 지방교부세 결산

- 지방교부세란 「지방교부세법」 제2조제1호¹⁾상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전으로서 중앙정부-지방정부 및 지방정부간 재정력 편차를 보전해주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일환임. 같은 법에 따라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부동산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됨.

[지방교부세의 구분]

(단위: 백만원, %)

구 분		목 적	재 원
보통교부세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내국세 정률분 ^{주)} 의 97%
특별교부세	지역현안	지연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 대응	내국세 정률분의 3% × 40%
	국가지방협력	국가적 장려사업 및 국가·지방 협력사업 촉진	내국세 정률분의 3% × 50%
	재난안전관리	재난복구 및 안전관리 수요 대응	내국세 정률분의 3% × 10%
부동산교부세		지방세(종합토지세)를 국세(종합부동산세)로 전환한 후의 지방재원 감소 보전	종합부동산세의 100%
소방안전교부세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안전 관리 강화 및 시설 확충 수요 대응	담배개별소비세의 45%

주) 내국세 정률분: 내국세에서 담배개별소비세 45% 및 종합부동산세·목적세를 제외한 것의 19.24%

자료: 행정안전부, 「2024년 지방교부세 산정 해설」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1) 「지방교부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교부세”란 제4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서 제6조, 제9조, 제9조의3 및 제9조의4에 따라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1. 일반회계

가. 세입결산

(1) 총괄

-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2억 9,900만원으로, 41억 8,3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징수결정액 대비 60.8%인 25억 4,5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6억 3,500만원임.

[2025회계연도 세입결산 개요]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합계	1,299	4,183	2,545	195.9	60.8	1,635
재산수입	41	30	30	73.2	100	-
경상이전수입	1,229	4,150	2,512	204.4	60.5	1,635
재화및용역판매수입	29	3	3	10.3	100	-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세입 주요내역

- 2025회계연도 세입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토지대여료, 기타관유물대여료, 기타재산이자수입 등 “재산수입” 3,000만원, 과태료, 변상금, 위약금, 가산금, 기타경상이전수입 등 “경상이전수입” 25억 1,200만원, 기타잡수입 등 “재화및용역판매수입” 300만원임.

[2025회계연도 세입 주요 증감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A)	징수 결정액	수납액 (B)	과부족 (B-A)	세 부 내 역
합 계		1,299	4,183	2,545	1,246	
○	재산수입	41	30	30	△11	
	▪ 토지대여료	26	15	15	△11	국유재산 허가 사용료
	▪ 기타관유물대여료	5	3	3	△2	임차 관사 등 허가 사용료
	▪ 기타재산이자수입	10	12	12	2	금융기관 예치이자액 등
○	경상이전수입	1,229	4,150	2,512	1,283	
	▪ 과 태 료	100	286	111	11	공직선거법 등 위반 과태료
	▪ 변 상 금	3	0	0	△3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 위 약 금	0	4	4	4	계약해지관련 계약보증금등
	▪ 가 산 금	1	1	0	△1	공직선거법 등 위반 과태료 채납에 따른 가산금
	▪ 기타경상이전수입	1,125	3,859	2,397	1,272	후보자 기탁금, 선거보전비용반환금 등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29	3	3	△26	
	▪ 기타잡수익	29	3	3	△26	폐기문서, 불용품 매각대금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 분 석

- 2025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세입결산액은 25억 4,500만원으로, 전년도 세입결산액 56억 7,100만원 대비 55.1% 감소하였음. 이는 선거규모 등의 차이로 후보자의 기탁금 국고귀속액 등 기타 경상이전수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전년도 대비 세입결산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C/A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2024년	10,017	6,929	5,671	56.6	81.8	1,258	-
2023년	863	2,180	871	101.0	40.0	1,293	16
증감율	1060.7	217.8	550.7	-	-	△2.7	△100.0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025년도에는 세입예산액 12억 9,900만원의 195.9%인 25억 4,500만원을 징수하여 세입예산을 초과하였음.
- 한편, 최근 5년간 세입예산 대비 징수 현황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2021년 및 2024년에는 징수액이 예산액에 미달하였고, 나머지 연도에는 징수액이 예산액을 초과함.

[최근 5년간 세입예산 징수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과부족 (C-A)	징수율 (C/A)
2021년	1,537	2,812	1,145	△392	74.5
2022년	4,035	8,099	6,679	2,644	165.5
2023년	863	2,180	871	8	101.0
2024년	10,017	6,929	5,671	△4,346	56.6
2025년	1,299	4,183	2,545	1,246	195.9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이처럼 징수율 변동 차가 큰 데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적정 세입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전국단위 공직선거의 실시 여부, 규모, 후보자수, 당선무효자수 등에 따라 연도별 세입액(특히 경상이전수입) 편차가 크고, 기탁금 국고귀속액 및 선거보전비용 반환금 등 기타경상이전수입 및 과태료는 사전에 정확히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나. 세출결산

(1) 총괄

□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추경포함)은 3,634억 700만원이고, 예비비 4,804억 4,8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8,438억 8,100만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6.6%인 8,155억 8,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세출예산현액의 3.4%인 282억 9,6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회계연도 세출결산 개요]

(단위: 백만원)

구분	2024 결산	2025년			
		예산액		예산 현액	지출액
		본예산	추경		
총계	854,516	363,407	363,407	843,881	815,584
<1100선거의공정한관리>	556,790	66,241	66,241	543,181	516,001
<1131공직선거관리>	441,079	2,876	2,876	397,047	373,818
• 대통령선거(1131-300)	-	-	-	290,061	269,399

구 분	2024 결산	2025년			
		예산액		예산 현액	지출액
		본예산	추경		
• 국회의원선거관리(1131-301)	287,613	-	-	-	-
• 전국동시지방선거(1131-302)	-	45	45	45	44
• 재보궐선거관리(1131-303)	90	149	149	78	77
• 재외선거관리(1131-305)	8,539	1	1	10,539	8,491
• 위탁선거관리(1131-306)	230	136	136	131	128
• 선거보전금(1131-307)	109,380	-	-	93,734	93,281
• 선거장비및물품관리(1131-309)	35,227	2,545	2,545	2,459	2,400
<1132정당발전지원>	101,068	52,449	52,449	104,830	104,828
• 정당사무지원(1132-320)	65	66	66	63	61
• 정당보조금(1132-322)	101,003	52,383	52,383	104,767	104,766
<1133시민교육및공명선거정착>	13,998	10,304	10,304	39,657	35,870
• 민주시민의식함양및지원(1133-330)	920	477	477	459	456
• 교육및연구기반조성(1133-331)	1,213	1,240	1,240	1,123	1,105
• 공명선거기반조성(1133-332)	1,155	740	740	7,423	7,345
• 위법행위예방활동(1133-333)	10,024	7,439	7,439	30,331	26,648
•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ODA)(1133-334)	685	408	408	321	318
<1135선거관리지원>	645	612	612	1,648	1,485
• 인터넷심의기반조성(1135-313)	97	93	93	344	337
• 선거방송토론(1135-314)	271	281	281	724	648
• 선거여론조사심의(1135-315)	277	238	238	580	500
<7100선거관리행정지원>	297,726	297,166	297,166	300,700	299,583
<7101인건비>	224,138	225,570	225,570	229,476	229,352
• 인건비(7101-150)	224,138	225,570	225,570	229,476	229,352
<7111기본경비>	14,540	15,099	15,099	14,959	14,637
• 위원회기본경비(7111-250)	14,540	15,099	15,099	14,959	14,637
<7132기관운영지원>	52,280	49,765	49,765	49,533	48,995
• 법제지원및법규운용(7132-310)	418	336	336	333	328
• 선거관리역량강화(7132-340)	589	-	-	-	-
• 시험관리및전문성강화(7132-343)	393	340	340	333	328
• 선거정보및기록물관리(7132-344)	1,413	1,313	1,313	1,309	1,267
• 국제교류협력(7132-345)	1,099	926	926	919	908
• 감사활동및공직윤리확립(7132-347)	164	137	137	137	137
• 차량및물품관리(7132-349)	917	605	605	584	565
• 전산운영경비(정보화)(7132-350)	19,228	18,491	18,491	18,491	18,460
• 위원회운영(7132-351)	1,685	703	703	703	694
• 선거연수원운영(7132-352)	1,947	1,909	1,909	1,879	1,860
• 청사관리(7132-354)	24,426	25,005	25,005	24,845	24,452
<7136선거행정정보화>	6,769	6,682	6,682	6,682	6,548
• 온라인투표기반조성(정보화)(7136-500)	528	563	563	563	554
• 선거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7136-523)	6,241	6,119	6,119	6,119	5,994
<7137예비금>	0	50	50	50	50
• 예비금(7137-430)	0	50	50	50	50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이·전용 등

(가) 이·전용

- 2025회계연도 이·전용액은 전체 예산액의 0.3%인 10억 3,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2억 7,900만원 감소(△88.9)하였음. 주요 내역은 공무원 보수 부족액 9억 8,600백만원, 선거재해보상금 부족액 5,000만원임.
- 2025회계연도 전용액은 전체 예산액의 0.4%인 16억 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32억 6,700만원 감소(△89.2%)하였음. 주요 내역은 각급 위원회 청사관리 공공요금 등 청산관리경비 10억 8,700만원, 공무원 보수 부족액 4억 2,400만원, 선거재해보상금 부족액 7,800만원임.

[2025회계연도 이·전용 내역]

(단위: 백만원, %)

프로그램	예산액(A)	예산현액(B)	이·전용(C)	C/A
합 계	363,407	843,881	2,637	0.7
1100 선거의공정한관리	66,241	543,181	12	0.01
7100 선거관리행정지원	297,166	300,700	2,625	0.9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5회계연도 이·전용 증감율]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4년도	증감	증감율
이 용	1,036	9,315	△8,279	△88.9
전 용	1,601	14,868	△13,267	△89.2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이 월

□ 2025회계연도 이월액은 없고, 전년대비 2,600만원 순감하였음.

[2025회계연도 이월내역]

(단위: 백만원, %)

프로그램	예산액(A)	예산현액(B)	이월액(C)	C/A
합 계	363,407	843,881	-	-
1100 선거의공정한관리	66,241	543,181	-	-
7100 선거관리행정지원	297,166	300,700	-	-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5회계연도 이월 증감율]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4년도	증감	증감율
이 월	0	26	△26	△100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다) 불 용

□ 2025회계연도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7.8% 수준인 282억 9,700만원으로, 전년도 불용액 26억 8,500만원 대비 256억 1,200만원 증가(953.9%)하였음. 불용내역은 단위사업별로 공직선거관리 232억 2,600만원, 정당 발전지원 200만원, 시민교육및공명선거정착 37억 8,300만원, 선거관리지원 1억 6,300만원, 인건비 1억 2,400만원, 기본경비 3억 2,100만원, 기관운영지원 5억 3,300만원, 선거행정정보화 1억 3,400만원임.

[2025회계연도 불용내역]

(단위: 백만원, %)

프로그램	예산액(A)	예산현액(B)	불용액(C)	C/A
합 계	363,407	843,881	28,297	7.8
1100 선거의공정한관리	66,241	543,181	27,180	41.0
7100 선거관리행정지원	297,166	300,700	1,117	0.4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5회계연도 불용 증감율]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4년도	증감	증감율
불 용	28,297	2,685	25,612	953.9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라) 예비금

☐ 2025회계연도 예비금 예산액은 5,000만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음.

[2025회계연도 예비금 지출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예비금	50	50	-	-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 분 석

(가) 세출결산 전반

-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액(추경포함)은 3,634억 7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600만원, 예비비 4,804억 4,800만원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8,438억 8,100만원임. 이 중 96.6%인 8,155억 8,400만원을 집행하였고, 3.4%인 282억 9,7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예산액 (A)	전년 이월	예비비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C)			이월액(D)		불용액(E)	
					금액	(C/A)	(C/B)	금액	(D/B)	금액	(E/B)
363,407	26	480,448	±5,774	843,881	815,584	224.4	96.6	-	-	28,297	3.4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세출예산은 2025회계연도가 별도의 공직선거가 없는 해로 전년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으나, 2025.4.4. 대통령 탄핵선고(2024헌나8)에 따라 2025.6.3. 제21대 대통령선거가 궐위선거로 치러짐에 따라 예비비 4,804억 4,800만원이 편성되어 예산현액은 8,438억 8,100만원에 달함. 2025회계연도 단위사업별 집행액은 공직선거관리 3,738억 2,000만원, 정당발전지원 1,048억 2,700만원, 시민교육및공명선거정착 358억 7,200만원, 선거관리지원 14억 8,500만원, 인건비 2,293억 5,200만원, 기본경비 146억 3,700만원, 기관운영지원 489억 9,900만원, 선거행정정보화 65억 4,800만원임.

[최근 5년간 세출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집행액(C)			이월액	불용액
			금액	(C/A)	(C/B)		
2021년	385,228	385,261	359,938	93.4	93.4	64	25,259
2022년	870,615	870,679	839,892	96.5	96.5	122	30,665
2023년	406,700	406,822	399,967	98.3	98.3	1	6,855
2024년	857,227	857,228	854,516	99.7	99.7	26	2,685
2025년	363,407	843,881	815,584	224.4	96.6	-	28,297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024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산 분석 결과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세출예산 집행액은 전년 대비 4.6% 감소한 8,155억 8,400만원임. 이는 예정된 공직선거가 실시된 전년도와 달리, 예산편성 당시 예상하기 어려웠던 대통령 궐위선거를 준비·실시하는 과정에서 불용액이 크게 발생함에 따라 전년도와 유사한 규모의 예산현액에도 불구하고 불용률이 상승하였기 때문임.
- 둘째, 이용액은 10억 3,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2억 7,900만원, 전용액은 16억 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32억 6,700만원 각각 88.9%, 89.2% 감소하였음.

(나) 이 · 전용

- 2025회계연도 이용액은 전체 예산액의 0.3%인 10억 3,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2억 7,900만원 감소(△88.9)하였음. 주요 내역은 공무원 보수 부족액 9억 8,600백만원, 선거재해보상금 부족액 5,000만원임.
- 2025회계연도 전용액은 전체 예산액의 0.4%인 16억 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32억 6,700만원 감소(△89.2%)하였음. 주요 내역은 각급 위원회 청사관리 공공요금 등 청산관리경비 10억 8,700만원, 공무원 보수 부족액 4억 2,400만원, 선거재해보상금 부족액 7,800만원임.

[2025회계연도 이 · 전용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4년도	증감	증감율
이 용	1,036	9,315	△8,279	△88.9
전 용	1,601	14,868	△13,267	△89.2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최근 5년간 예산액에 대한 이 · 전용액의 비율을 보면 2022년도 및 2024년도를 제외하고 매년 1.0% 미만이며, 2022년도 이 · 전용액 증가 사유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시간 연장에 따른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비, 국선 재보궐선거 실시에 따른 선거관리경비, 청년추천보조금 신설에 따른 지급 채원 등이 부족함에 따른 것이며, 2024년도 이 · 전용액 증가 사유는 국회의원선거 경비, 공무원 보수,

청사 공공요금, 부담비용 청구 증가에 따른 선거보전금 재원 등이 부족하였기 때문임. 다만, 2024년, 2025년 모두 공무원 보수 부족과 각급 위원회 청사 공공요금 및 청사관리비 부족액으로 인해 이·전용이 발생하였음.

[최근 5년간 이·전용액 비율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예 산 액	385,228	870,615	406,700	857,227	363,407
이·전용액	257	81,349	3,673	24,183	2,637
예산액 대비 이·전용액 비율	0.07	9.3	0.9	2.8	0.7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최근 5년간 이·전용액 및 사유]

(단위: 백만원)

연 도	이·전용 사유	이·전용액
2021년	계	257
	▪ 보궐선거 사전투표사무원 낙상사고에 따른 재해보상금 지급	1
	▪ 공공요금 부족	207
	▪ 선거범죄 신고자 포상금 부족	11
	▪ 유권자의식조사 연구용역비 부족액	11
	▪ 사회복지무요원 여비 부족액	11
	▪ 장애인 (예비)후보자 활동보조인 수당·실비	7
	▪ 재외선거관리시스템 인식개선프로그램 개발비 부족	6
	▪ 국가소송 일부 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비 부족	3
2022년	계	81,349
	▪ 제20 대통령선거 투표시간 연장 관련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 등 부족 (이용 4,384, 전용 50,182)	54,566

연 도	이 · 전용 사유	이 · 전용액
	▪ 코로나19 예방·대책비용 전용에 따른 선거보전금 부족액	17,400
	▪ 국선 재보궐선거 실시에 따른 선거관리경비 및 보전금 부족	4,940
	▪ 청년추천보조금 지급 재원 부족	4,400
	▪ 유상임차청사 임차료 부족	28
	▪ 기타직보수 부족	15
2023년	계	3,673
	▪ 보안컨설팅 후속 조치에 따른 전산장비 등 구입 비용	2,657
	▪ 4분기 기관운영비(공공요금및제세) 부족액	1,015
	▪ 국선 재보궐선거 실시에 따른 유권자 의식조사 비용	1
2024년	계	24,183
	▪ 수검표 도입 및 (사전)투표 참관인 증가 등에 따른 국선 선거경비	14,181
	▪ 공무원 보수 부족액	5,943
	▪ 부담비용 청구대상 정당수 증가에 따른 선거보전금 부족액	2,368
	▪ 각급위원회청사 공공요금 부족액	1,475
	▪ 시스템통합 유지보수 컨설팅 재원 부족액	140
	▪ 직원 상시학습 여비 부족액	72
	▪ 재외선거관련 인력운용에 따른 고용부담금 부족액	4
2025년	계	2,637
	▪ 공무원 보수 부족액	1,410
	▪ 청사관리 부족액	1,087
	▪ 선거재해보상금 부족액	128
	▪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부족액	12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다) 이 월

□ 2024회계연도 이월액은 없고, 전년대비 2,600만원 순감하였음.

[2025년도 이월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4년도	증감	증감율
이 월	-	26	△26	-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최근 5년간 예산액에 대한 이월액의 비율을 보면, 2021년도에는 0.06%, 2022년도에는 0.01%, 2023년도에는 0.001%, 2024년도에는 0.003% 수준의 이월액이 발생하였고, 2025년도에는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아, 이월액 비율은 평균적으로 0.0185% 수준으로 예산액 대비 매우 적은 수준임.

[최근 5년간 이월액 비율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예 산 액	385,228	870,615	406,700	857,227	363,407
이 월 액	64	122	1	26	-
예산액 대비 이월액 비율	0.06	0.01	0.001	0.003	-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최근 5년간 이월액 및 사유]

(단위: 백만원)

연 도	이월사유	이월액
2021년	계	64
	▪ 코로나19로 인하여 생산 차질이 발생하여 선거장비 지원센터 운반장비(지게차 및 핸드파레트) 납품 지연에 따른 대금 미지급금	64
2022년	계	122
	▪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레미콘 공급 차질 등 납품 지연에 따라 발생한 공기연장에 대한 미지급금	122
2023년	계	1
	▪ 12월 카드사용분 대금 미청구로 인한 미지급금	1
2024년	계	26
	▪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보전 유예금	26
2025년	계	-
	▪ 해당없음	-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라) 불 용

- 2025회계연도 불용액은 282억 9,700만원으로, 전년도 불용액 26억 8,500만원 대비 256억 1,200만원 증가(953.9%)하였음. 불용내역은 단위사업별로 공직선거관리 232억 2,600만원, 정당발전지원 200만원, 시민교육및공명선거정착 37억 8,300만원, 선거관리지원 1억 6,300만원, 인건비 1억 2,400만원, 기본경비 3억 2,100만원, 기관운영지원 5억 3,300만원, 선거행정정보화 1억 3,400만원임.

[2025년도 불용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4년도	증감	증감율
불 용	28,297	2,685	25,612	953.9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최근 5년간 예산액 대비 불용액 비율은 2021년도 6.6%, 2022년도 3.5%, 2023년도 1.7%, 2024년도 0.3%, 2025년도 7.8%로 올해 불용액 비율이 최고이나, 예비비, 이·전용등을 고려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은 3.4%임. 다만, 불용액은 2022년도 다음으로 많은 규모임.

[최근 5년간 불용액 비율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예 산 액	385,228	870,615	406,700	857,227	363,407
불 용 액	25,259	30,665	6,855	2,685	28,297
예산액 대비 불용액 비율	6.6	3.5	1.7	0.3	7.8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구체적인 불용사유는 대부분 인건비 집행잔액, 각급 위원회 집행잔액 등이며, 2025년도의 경우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경비(예비비)가 불용액의 94.7%를 차지하였음.

[최근 5년간 불용액 및 불용사유]

(단위: 백만원)

연 도	불용사유	불용액
2021년	계	25,259
	▪ 인건비 집행잔액	13,694
	▪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사업 규모 축소·미 실시	7,615
	▪ 기타 267개 위원회 집행잔액	3,950
2022년	계	30,665
	▪ 정당보조금 집행잔액	5,624
	▪ 인건비 집행잔액	3,706
	▪ 선거보전금 집행잔액	2,275
	▪ 기타 267개 위원회 집행잔액	19,060
2023년	계	6,855
	▪ 인건비 집행잔액	1,153
	▪ 기타 269개 위원회 집행잔액	5,702
2024년	계	2,685
	▪ 인건비 집행잔액	364
	▪ 전산운영경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72
	▪ 위법행위예방활동 집행잔액	263
	▪ 270개 각급 위원회 집행잔액	1,786
2025년	계	28,297
	▪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경비(예비비) 집행잔액	26,793
	▪ 270개 각급 위원회 집행잔액	1,504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 프로그램

(가) 선거의공정한관리 프로그램(110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세출은 “선거의공정한관리(1100)” 및 “선거관리행정지원(7100)” 2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

□ “선거의공정한관리(1100)”는 최적의 선거관리기반 구축하고 수요자 중심의 선거서비스를 제공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아래 표와 같이 i) 공직선거관리(1131), ii) 정당발전지원(1132), iii) 시민교육및공명선거정착(1133), iv) 선거관리지원(1135)의 4개 단위사업과 각 단위사업 내 2~8개의 사업 등 총 1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5회계연도 선거의공정한관리 프로그램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 결산	2025년			
		예산액		예산 현액	지출액
		본예산	추경		
<1131공직선거관리>	441,079	2,876	2,876	397,047	373,818
• 대통령선거(1131-300)	-	-	-	290,061	269,399
• 국회의원선거관리(1131-301)	287,613	-	-	-	-
• 전국동시지방선거(1131-302)	-	45	45	45	44
• 재보궐선거관리(1131-303)	90	149	149	78	77
• 재외선거관리(1131-305)	8,539	1	1	10,539	8,491
• 위탁선거관리(1131-306)	230	136	136	131	128
• 선거보전금(1131-307)	109,380	-	-	93,734	93,281
• 선거장비및물품관리(1131-309)	35,227	2,545	2,545	2,459	2,400
<1132정당발전지원>	101,068	52,449	52,449	104,830	104,828

구 분	2024 결산	2025년			
		예산액		예산 현액	지출액
		본예산	추경		
• 정당사무지원(1132-320)	65	66	66	63	61
• 정당보조금(1132-322)	101,003	52,383	52,383	104,767	104,766
<1133시민교육및공명선거정착>	13,998	10,304	10,304	39,657	35,870
• 민주시민의식함양및지원(1133-330)	920	477	477	459	456
• 교육및연구기반조성(1133-331)	1,213	1,240	1,240	1,123	1,105
• 공명선거기반조성(1133-332)	1,155	740	740	7,423	7,345
• 위법행위예방활동(1133-333)	10,024	7,439	7,439	30,331	26,648
• 한국선거제도해의전파(ODA)(1133-334)	685	408	408	321	318
<1135선거관리지원>	645	612	612	1,648	1,485
• 인터넷심의기반조성(1135-313)	97	93	93	344	337
• 선거방송토론(1135-314)	271	281	281	724	648
• 선거여론조사심의(1135-315)	277	238	238	580	500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선거관리행정지원 프로그램(7100)

□ “선거관리행정지원(7100)”은 선거관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사무 공간을 확보하고 기본경비를 지원하며, 선거정보시스템을 고도화 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선거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아래 표와 같이, i) 인건비(7101), ii) 기본경비(7111), iii) 기관운영지원(7132), iv) 선거행정정보화(7136), v)예비금(7137)의 5개의 단위사업과 5개의 단위사업 내 1~11개의 사업 등 2025회계연도 기준 총 15개의 세부사업²⁾으로 구성됨.

2) 2024회계연도 기준 총 16개 세부사업이나, “선거관리역량강화”(7132-340) 사업이 2025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음에 따라 2025회계연도 기준으로는 총 15개 세부사업임.

[2025회계연도 선거관리행정지원 프로그램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 결산	2025년			
		예산액		예산 현액	지출액
		본예산	추경		
<7101인건비>	224,138	225,570	225,570	229,476	229,352
• 인건비(7101-150)	224,138	225,570	225,570	229,476	229,352
<7111기본경비>	14,540	15,099	15,099	14,959	14,637
• 위원회기본경비(7111-250)	14,540	15,099	15,099	14,959	14,637
<7132기관운영지원>	52,280	49,765	49,765	49,533	48,995
• 법제지원및법규운용(7132-310)	418	336	336	333	328
• 선거관리역량강화(7132-340)	589	-	-	-	-
• 시험관리및전문성강화(7132-343)	393	340	340	333	328
• 선거정보및기록물관리(7132-344)	1,413	1,313	1,313	1,309	1,267
• 국제교류협력(7132-345)	1,099	926	926	919	908
• 감사활동및공직윤리확립(7132-347)	164	137	137	137	137
• 차량및물품관리(7132-349)	917	605	605	584	565
• 전산운영경비(정보화)(7132-350)	19,228	18,491	18,491	18,491	18,460
• 위원회운영(7132-351)	1,685	703	703	703	694
• 선거연수원운영(7132-352)	1,947	1,909	1,909	1,879	1,860
• 청사관리(7132-354)	24,426	25,005	25,005	24,845	24,452
<7136선거행정정보화>	6,769	6,682	6,682	6,682	6,548
• 온라인투표기반조성(정보화)(7136-500)	528	563	563	563	554
• 선거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7136-523)	6,241	6,119	6,119	6,119	5,994
<7137예비금>	0	50	50	50	50
• 예비금(7137-430)	0	50	50	50	50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예비비 지출

□ 2025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예비비 배정액은 대통령 선거관리 2,900억 6,100만원, 재외선거관리 105억 3,800만원, 선거보전금 937억 700만원, 정당보조금 523억 8,300만원, 공명선거기반 조성 66억 9,500만원, 위법행위예방활동 235억 100만원, 인터넷심의기반조성 2억 6,000만원, 선거방송토론 4억 5,000만원, 선거여론조사심의 3억 5,300만원, 인건비 24억 9,800만원으로 총 4,804억 4,800만원이며, 이 중 4,536억 5,400만원을 집행하고 267억 9,4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회계연도 예비비 교부 및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배정액	집행액	불용액
대통령선거관리	290,061	269,399	20,662
재외선거관리	10,538	8,491	2,047
선거보전금	93,707	93,263	444
정당보조금	52,383	52,383	-
공명선거기반조성	6,695	6,619	76
위법행위예방활동	23,501	20,086	3,415
인터넷심의기반조성	260	259	1
선거방송토론	450	381	69
선거여론조사심의	353	276	77
인건비	2,498	2,498	-
합 계	480,448	453,654	26,794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주요사업별로 살펴보면, 대통령선거관리에는 예비비 2,900억 6,100만원이 배정되었으나, 이 중 2,693억 9,900만원을 집행하고 206억 6,200만원을 불용하였음.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통령선거 후보자 수가 예상보다 적어 선거벽보 첩부비용 등 선거운동관리 사업의 집행이 저조하였고, 참관인 신고·선정 인원도 예상에 미치지 못하여 참관인 수당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함.
- 재외선거관리에는 예비비 105억 3,800만원이 배정되었고, 이 중 84억 9,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억 4,700만원을 불용하였는데, 이는 대통령 궐위선거를 위한 재외선거관이 단신 부임함에 따라 여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재외공관의 일용인부임 등에서도 집행잔액이 발생하데서 기인함.
- 위법행위예방활동에는 예비비 235억 100만원이 배정되었으나, 이 중 200억 8,600만원을 집행하고 34억 1,500만원을 불용하였는데, 이는 공정선거지원단 운영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신고·제보 건수 감소에 따라 포상금 지급액이 예상보다 줄어든데 따른 것임.

3. 재무결산

가. 재정상태 분석

- 자산은 7,880억 7,600만원으로 전년 7,859억 3,500만원 대비 0.3% 증가하였음. 금융자산은 93억 9,400만원으로 전년 89억 4,200만원 대비 5.1% 증가하였으며, 이는 변상금 등에 대한 미수제재금수익과 미수기타수익, 미수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유·무형자산은 7,676억 6,100만원으로 전년 7,659억 1,900만원 대비 0.2% 증가하였으며, 이는 정부내자산기부 등으로 토지가 감소하였으나 취득 등으로 건물과 구축물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기타자산은 110억 2,000만원으로 전년 110억 7,400만원 대비 0.5% 감소하였으며, 이는 기타의선급비용 감소에서 기인함.
- 부채는 26억 5,400만원으로 전년 60억 3,100만원 대비 56.0% 감소하였음. 차입부채는 26억 5,200만원으로 전년 60억 3,100만원 대비 56.0% 감소하였으며, 이는 금융리스부채의 상황에 따라 감소함. 기타부채는 200만원으로 전년 100만원 대비 100% 증가하였으며, 이는 기타의선수수익 증가에서 기인함.
- 순자산은 자산가액에서 부채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7,854억 2,200만원이며 전년대비 0.7% 증가하였음.

[2025회계연도 재정상태 개요]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A)	2024(B)	증 감 (A-B)	
			금 액	비 율
자 산	788,076	785,935	2,141	0.3%
부 채	2,654	6,031	△3,377	△56.0%
순자산	785,422	779,904	5,518	0.7%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재정운영 분석

- 재정운영결과는 재정운영순원가에서 비교환수익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8,722억 2,000만원이며 전년 8,713억 1,500만원 대비 0.1% 증가함. 프로그램순원가는 선거의공정한관리 프로그램으로 5,241억 6,100만원이 발생하여 전년대비 1.9% 감소하였으며, 이는 공직선거관리 경비 감소에서 기인함. 관리운영비는 3,486억 9,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하였으며, 이는 인건비 증가에 따른 것임. 비배분수익은 6억 3,400만원으로 전년대비 69.0% 감소하였으며, 이는 기타이전비용 미발생에서 기인한 것임.

[2025회계연도 재정운영 개요]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A)	2024(B)	증 감 (A-B)	
			금 액	비 율
I. 프로그램순원가	524,161	534,159	△ 9,998	△ 1.9%
II. 관리운영비	348,692	339,196	9,496	2.8%
III. 비배분비용	1	2	△ 1	△ 50.0%
IV. 비배분수익	634	2,042	△ 1,408	△ 69.0%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872,220	871,315	905	0.1%
VI. 비교환수익 등	-	-	-	-
VII. 재정운영결과(V - VI)	872,220	871,315	905	0.1%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다. 순자산변동 분석

□ 기말순자산액 7,854억 2,200만원은 기초순자산액 7,799억 400만원에서 재정운영결과인 8,722억 2,000만원을 차감하고, 재원의조달 및 이전액 8,803억 7,600만원과 조정항목 △26억 3,700만원을 더한 값임.

[2025회계연도 순자산변동 개요]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A)	2024(B)	증 감 (A-B)	
			금 액	비 율
I. 기초순자산	779,904	742,951	36,953	5.0%
II. 재정운영결과	872,220	871,315	905	0.1%
III. 재원의조달및이전	880,376	910,096	△ 29,720	△ 3.3%
IV. 조정항목	△ 2,637	△ 1,828	△ 809	△ 44.3%
V. 기말순자산 (I - II + III + IV)	785,422	779,904	5,518	0.7%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주요 순자산변동내역 및 금액은 다음과 같음.

[2025년 주요순자산 변동내역 및 금액]

- 기초순자산	779,904백만원
- 재정운영결과	872,220백만원
- 재원의 조달	886,071백만원
• 국고수입	815,584백만원
• 국고이전수입	0백만원
• 사회보험수익	0백만원
• 부담금수익	0백만원
• 제재금수익	2,322백만원
• 기타이전수익	70,255백만원
- 재원의 이전	5,696백만원
• 국고이전지출	2,545백만원
• 세출예산지출액	0백만원
• 기타이전비용	3,151백만원
- 조정항목	△ 2,637백만원
• 자산재평가이익	△ 2,637백만원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1. 일반회계

가. 세 입

☐ 2025회계연도 진실화해위원회 일반회계에 세입예산은 계상하지 않았으며, 1억 1,100만원³⁾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함.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징 수 결정액(A)	수납액 (B)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B/A)
일반회계	-	110	110	-	-	100.0
합 계	-	110	110	-	-	100.0

3)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및 정보공개청구 수수료 등 109,900,350원

나. 세 출

(1) 총 괄

- 2025회계연도 진실화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었음. 세출예산액은 167억 6,300만원이었고, 예산액 대비 90.9%인 152억 4,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위원회 활동 종료(2025.11.26.)에 따라 미집행 예산 18억 3,000만원을 행정안전부로 이체하여 다음연도 이월액 및 불용액은 없음.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예산액		예비비	전년도 이월액	이체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지출액 (C)	다 음 연 도 이월액	불용액	A/C (%)	B/C (%)
본예산	추경 (A)										
16,763	16,763	-	309	△1,830	-	15,242	15,242	-	-	90.9	100.0

- 동 세출예산은 ‘진실화해위원회 운영’과 ‘진실화해위원회 행정지원’ 2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고, 진실화해위원회 운영 프로그램에는 진화위운영 단위사업(진화위운영 세부사업 1개)이, 진실화해위원회 행정지원 프로그램에는 진화위인건비 단위사업(세부사업 1개) 및 진화위기본경비 단위사업(세부사업 1개)이 각각 편성되었음.

[2025회계연도 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2026예산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결산(B)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총 계	16,763	16,763	309	△1,830	15,242	15,242	90.9	-
1000 진실화해위원회 운 영 계	3,266	3,266	309	△1,089	2,486	2,486	76.1	-
1031 진 화위운영	3,266	3,266	309	△1,089	2,486	2,486	76.1	-
진 화위운영 (1031-300)	3,266	3,266	309	△1,089	2,486	2,486	76.1	-
7000 진실화해위원회 행 정 지 원 계	13,497	13,497	-	△ 741	13,341	12,756	94,5	-
7001 진 화위인건비	6,811	6,811	-	△ 77	6,734	6,734	98.8	-
진 화위인건비 (7001-150)	6,811	6,811	-	△ 77	6,734	6,734	98.8	-
7002 진 화위기본경비	6,686	6,686	-	△ 664	6,022	6,022	90.0	-
진 화위기본경비 (7002-250)	6,686	6,686	-	△ 664	6,022	6,022	90.0	-

(2) 이·전용

☐ 위원회 활동 종료(2025.11.26.)에 따라 미집행 예산 18억 3,000만원을 행정안전부로 이체함.

(3) 이 월

☐ 위원회 활동 종료(2025.11.26.)에 따라 이월은 해당 없음.

(4) 불 용

- ☐ 위원회 활동 종료(2025.11.26.)에 따른 미집행 예산 이체로 불용은 해당 없음.

2. 예비비 지출

- ☐ 2025회계연도 진실화해위원회 예비비 지출은 해당 없음.

3. 재무결산

- ☐ 진실화해위원회 재무결산은 일반회계 1개로 편성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음.

가. 재정상태 분석

- ☐ 진실화해위원회는 조사활동을 종료하고 2025년 12월 31일 결산일 현재 청산을 완료하였으므로 2025년의 재정상태표는 청산 완료 후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을 표시하고 있음. 따라서 2025회계연도 말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은 0원이 됨.
- ☐ 2025회계연도 말 진실화해위원회의 자산은 0원으로 전년도 33억 9,600만원 전액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위원회 활동 종료에 따라

금융자산이 16억 6,700만원, 유무형자산이 11억 3,900만원 및 기타자산이 5억 9,000만원 각각 감소하였기 때문임.

□ 2025회계연도 말 진실화해위원회의 부채는 0원으로 전년도 5억 4,200만원 전액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위원회 활동 종료에 따른 충당부채 감소에 기인함.

□ 이에 따라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순자산은 0원으로 전기 대비 28억 5,400만원 감소함.

[위원회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A)	2024(B)	증 감 (A-B)	
			금 액	비율(%)
자산합계(a)	-	3,396	-3,396	-100.0
I. 금융자산	-	1,667	-1,667	-100.0
II. 유·무형자산	-	1,139	-1,139	-100.0
III. 기타자산	-	590	-590	-100.0
부채합계(b)	-	542	-542	-100.0
I. 차입부채	-	-	-	-
II. 충당부채	-	542	-542	-100.0
III. 기타부채	-	-	-	-
순자산(a-b)	-	2,854	-2,854	-100.0

※ 2025(A) : 2025년 12월 31일자 잔액, 2024(B) : 2024년 12월 31일자 잔액

[자산·부채 종류에 대한 설명]

구분	설 명
금융자산	현금 또는 현금을 수취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자산을 교환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인 자산(현금및현금성자산, 금융상품, 미수채권, 기타 금융자산 등)
유·무형자산	일반유형자산: 고유의 행정활동에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집기 및 비품 등) 무형자산: 물리적 실체는 없으나 일정 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자산(소프트웨어, 산업재산권 등)
기타자산	금융자산과 유·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
충당부채	지출시기 또는 지출금액이 불확실한 부채(퇴직급여충당부채, 복구충당부채 등)

나. 재정운영 분석

- 재정운영표는 프로그램(사업) 전체의 원가인 재정운영 결과를 나타내기 위한 표로, 프로그램 순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수익, 비교환수익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재정운영결과는 프로그램총원가에서 프로그램 수익을 차감한 프로그램순원가에 관리운영비와 비배분비용을 합산하고, 비배분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를 계산한 후, 여기에 국세, 부담금 등 비교환수익을 차감한 것임.

[재정운영 결과 계산식]

-	프로그램 총원가	프로그램 수행시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프로그램 수익	프로그램과 직접 관련 있는 수익
	프로그램 순원가	
+	관리운영비	인건비 등 프로그램 수행을 지원하는 비용
+	비배분비용	프로그램에 직접 대응하기 어려운 비용
-	비배분수익	프로그램에 직접 대응하기 어려운 수익
	재정운영 순원가	
-	비교환수익	국세, 부담금 등
	재정운영 결과	(프로그램 전체의 원가)

- 2025년도 위원회 재정운영순원가는 프로그램순원가 33억 5,500만원에 관리운영비 138억 4,900만원을 합산하고 비배분수익 9,200만원을 차감한 171억 1,300만원임.

□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면, 프로그램순원가는 일반연구용역비 및 국고보조사업비 등 감소로 전년 대비 13억 1,100만원 감소하였고,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및 기타경비가 각각 3억 6,900만원, 3억 9,100만원 감소하여 전년 대비 7억 6,000만원 감소하였으며, 비배분수익은 지출금반납금 감소 등에 따라 전년 대비 7,000만원 감소함.

[2025년도 위원회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A)	2024(B)	증 감 (A-B)	
			금 액	비율(%)
I. 프로그램순원가	3,355	4,666	-1,311	-28.1
가. 프로그램 총원가	3,355	4,666	-1,311	-28.1
나. 프로그램 수익	-	-	-	-
II. 관리운영비	13,849	14,609	-760	-5.2
III. 비배분비용	-	-	-	-
IV. 비배분수익	92	162	-70	-43.2
V. 재정운영순원가 (I + II + III - IV)	17,113	19,113	-2,000	-10.5
VI. 비교환수익 등	-	-	-	-
VII. 재정운영결과(V-VI)	17,113	19,113	-2,000	-10.5

※ 2025(A) :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024(B)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 순자산변동 분석

- 순자산변동표는 순자산의 변동내역을 표시하는데, 기초순자산에서 재정운영결과를 차감하고 재원의 조달, 이전 및 조정항목을 합산한 결과를 기말순자산으로 표시함.

[기말순자산 계산식]

	기초순자산	전기 既 보고된 순자산 금액
-	재정운영결과	재정운영표상 사업원가
+	재원의조달	국세·부담금 등 비교환수익, 국고수입
+	재원의이전	중앙관서간의 무상이전거래, 국고이전지출
+	조정항목	순자산의 증가·감소효과를 발생시키는 거래 중 납입자본의 증감, 투자증권 평가손익 등 재원의 조달·이전 비해당 거래
	<u>기말순자산</u>	

- 위원회의 순자산은 0원으로 2025년 말 기준 청산이 완료되어, 전년도 말 순자산 대비 28억 5,400만원이 순감하였음.
- 구체적으로 기초순자산 28억 5,400만원에서 순자산 가산항목인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이 142억 5,900만원 발생하고,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가 171억 1,300만원 발생하여 기말순자산은 0원이 됨.

[위원회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구분	2025(A)	2024(B)	증 감	
			금액(C=A-B)	비율(C/B)
I. 기초순자산	2,854	4,182	-1,328	-31.8
II. 재정운영결과	17,113	19,113	-2,000	-10.5
III. 재원의조달및이전	14,259	17,785	-3,526	-19.8
IV. 조정항목	-	-	-	-
V. 기말순자산 (I - II + III + IV)	-	2,854	-2,854	-100.0

※ 2025(A) :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024(B)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인사혁신처 소관】

1. 일반회계

가. 세 입

-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620억 500만원이며, 623억 5,0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620억 9,000만원을 수납하였고,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2억 6,100만원을 미수납하였음. 수납액은 예산현액에 비해 1억 8,500만원 많음.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과 목 별	예산현액 (A)	징 수 결정액	수납액 (B)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증 감 (B-A)
재 산 수 입	5	16	16	-	-	11
경상이전수입	1,349	1,397	1,137	-	261	△212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1,145	1,079	1,079	-	-	△66
수입대체경비수입	4,020	4,372	4,372	-	-	352
정부내부수입및기타	55,486	55,486	55,486	-	-	-
합 계	62,005	62,350	62,090	-	261	85

나. 세 출

(1) 총 괄

□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예산액 6조 4,085억 6,700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9.9%인 6조 4,057억 7,7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1%인 27억 9,000만원임.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프로그램	예산액 (추경)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전 용	이 용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 음 연 도 이월액	불용액 (C)	B/A (%)	C/A (%)
• 자체 지출	235,751	-	-	±1,434	-	235,751	232,961	-	2,790	98.9	98.9
- 인재채용	19,950	-	-	-	-	19,950	19,644	-	306	98.5	98.5
- 인재개발	53,190	-	-	-	-	53,190	53,126	-	64	99.9	99.9
- 공직신뢰구현	2,787	-	-	-	-	2,787	2,754	-	33	98.8	98.8
- 인사혁신확산	48,227	-	-	±4	-	48,227	48,090	-	137	99.7	99.7
- 공무원후생복지	8,350	-	-	±106	-	8,350	8,316	-	34	99.9	99.9
- 국가인재원교육운영	17,728	-	-	-	-	17,728	17,122	-	604	96.6	96.6
- 인사혁신행정지원	85,519	-	-	±1,326	-	85,519	83,911	-	1,608	98.2	98.2
• 회계기금간 거래	6,172,816	-	-	-	-	6,172,816	6,172,816	-	-	100.0	-
- 공무원연금기금 전출	6,172,816	-	-	-	-	6,172,816	6,172,816	-	-	100.0	-
합 계	6,408,567	-	-	±1,434	-	6,408,567	6,405,777	-	2,790	99.9	0.1

(2) 전 용

- ☐ 「국가재정법」 제46조에 의한 전용액은 14억 3,400만원으로 전용 사유는 인건비 부족 13억 1,000만원, 소송 비용 대응액 1억 2,000만원, 기타 400만원임.

[2025회계연도 전용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내 역
합 계	1,434	
1. 인건비 부족	1,310	봉급 및 육아휴직수당 등 각종 수당 지출 증가
2. 소송비용 대응	120	각종 소송비용 대응 등
3. 기타	4	기간제근로자 고용보험료 등

(3) 이 용

- ☐ 「국가재정법」 제47조에 따른 이용액은 없음.

(4) 이 월

- ☐ 「국가재정법」 제48조에 따른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음.

(5) 불 용

- 불용액은 예산현액(6조 4,085억 6,700만원)의 0.1%인 27억 9,000만원으로
불용 사유는 인건비 잔액 8억 1,300만원, 집행잔액 19억 7,700만원임.

[2025회계연도 불용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내 역
합 계	2,790	
1. 인건비 잔액	813	정원·호봉 미달에 따른 인건비 잔액
2. 집행잔액	1,977	계약 낙찰차액, 사업완료 후 정산잔액 등

(6) 성인지 결산

- 2025년 성인지 예산은 ‘성별 영향을 고려한 공직자 역량개발 및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을 목표로 2개 사업에 예산 4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음.
- 지출액은 예산현액(41억 9,000만원) 대비 98.3%인 41억 1,9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고, 불용액은 7,100만원임.

[202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

(단위 : 백만원)

세부·내역사업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	불용
합 계	4,190	4,190	4,119	-	71
공무원후생복지지원 (공무원예술대전개최)	260	260	259	-	1
교육과정 운영	3,930	3,930	3,860	-	70

2. 공무원연금기금

가. 일반현황

- 공무원연금기금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 「공무원연금법」 제76조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음.
- 「공무원연금법」 제21조에 따른 기여금, 부담금, 보전금 및 기금운용수익금 등을 주된 재원으로 하며, 「공무원연금법」 제28조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과, 공무원 또는 공무원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 대한 대부, 기금 증식사업,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공단 운영을 위한 경비 등으로 운용하고 있음.
- 공무원연금기금은 「공무원연금법」 제77조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이 관리·운용하고 있음.

나. 자금 조달 및 운용

- 2025회계연도 기금 조달액은 33조 1,312억 5,605만원으로 계획 대비 6,424억 3,095만원(△1.9%) 감소하였음. 이는 자치단체 보수예산의 계획대비 감소로 인한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수입 감소, 국내·해외 증시 호황에 따른 보유주식 증가로 회수규모 감소 등에 기인함.

□ 기금 조달액의 세부내역은 기여금(공무원 본인),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지자체) 등 자체수입이 22조 7,051억 2,100만원,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국가) 등 정부내부수입이 7조 1,570억 3,200만원, 여유자금 회수가 3조 2,691억 300만원임.

□ 2025회계연도 기금 운용액은 33조 1,312억 5,605만원임. 구체적으로는 사업비 지출 28조 40억 5,300만원, 기금운영비 712억 3,600만원, 정부내부지출 656억 9,600만원, 여유자금운용액 4조 9,902억 7,100만원임.

[2025회계연도 공무원연금기금 조달 및 운용]

(단위: 백만원, %)

과 목		계 획(A)	실 적(B)	비율(B/A)
기금의 조달	자체수입	23,136,465	22,705,121	98.1
	정부내부수입	7,188,898	7,157,032	99.6
	여유자금회수	3,448,324	3,269,103	94.8
	합 계	33,773,687	33,131,256	98.1
기금의 운용	사업비	28,310,492	28,004,053	98.9
	기금운영비	72,815	71,236	97.8
	정부내부지출	65,696	65,696	100.0
	차입금이자상환	228	-	-
	여유자금운용	5,324,456	4,990,271	93.7
	합 계	33,773,687	33,131,256	98.1

다. 재무상태

- 2025년도 말 기준 공무원연금기금의 자산은 24조 4,692억 1,100만원으로 금융자산은 2조 3,072억 2,000만원 증가하고, 유·무형자산이 842억 9,300만원 증가하고, 기타자산은 70억 400만원 증가하여, 2024년도 말 대비 2조 3,985억 1,600만원 증가함.
- 2025년도 말 기준 부채는 1,137조 4,859억 2,200만원으로 차입부채는 2,906억 1,900만원 증가하고, 충당부채가 26조 1,960억 8,600만원 증가하고, 기타부채는 3,460억 7,700만원 증가하여 2024년도 말 대비 24조 4,342억 6,500만원 증가함.
- 2025년도 말 순자산총액은 △1,113조 167억 1,100만원으로 2024년도 말 대비 24조 4,342억 6,500만원 감소하였음.

[2025회계연도 공무원연금기금 재무상태]

(단위 : 백만원)

과 목		금 액		
		2025년도(A)	2024년도(B)	증감(A-B)
자산	< 자 산 >	24,469,211	22,070,695	2,398,516
	(1) 금융자산	17,441,751	15,134,531	2,307,220
	(2) 유·무형자산	7,007,608	6,923,315	84,293
	(3) 기타자산	19,853	12,849	7,004
부채 및 순자산	< 부 채 >	1,137,485,922	1,110,653,141	26,832,781
	(1) 차입부채	5,740,843	5,450,224	290,619
	(2) 충당부채	1,131,205,546	1,105,009,460	26,196,086
	(3) 기타부채	539,534	193,457	346,077
	< 순 자 산 >	△1,113,016,711	△1,088,582,446	△24,434,265

라. 기금운용계획 변경 현황

- 공무원연금기금은 2025회계연도 총 5회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있었으며, 변경사유는 대여학자금 대부 건수 및 단가 증가에 따른 대여학자금융자 부족예산 증액, 공무상재해 승인건수 증가 및 급여 단가 상승에 따른 재해보상급여 부족예산 증액, 세금납부에 필요한 주택사업관리 공공요금및제세 부족예산 증액, 퇴거세대 증가에 따른 주택임대보증금 반환예산 증액, 임대주택 노후화에 따른 보수비용 상승으로 시설유지비 증액, LH 공공임대주택 기관 공급 추진을 위해 임차보증금 증액, 2025년 인건비 예산 편성 시 고객센터 및 퇴직지원센터 상담사 임금인상률(3%) 미적용으로 고객지원사업 상용임금 부족예산 증액임.

[2025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

(단위 : 백만원)

순번	세부사업명	당 초(A)	변 경(B)	증 감(B-A)
1	대여학자금융자	267,900	342,480	74,580
	통화금융기관예치	2,501,230	2,426,650	△ 74,580
2	재해보상급여	204,771	227,670	22,899
	퇴직급여	23,559,168	23,536,269	△ 22,899
3	주택사업관리	358,141	359,344	1,203
	임대주택건립	23,261	22,328	△ 933
	지부시설관리	21,899	21,629	△ 270
4	주택사업관리	359,344	415,345	56,001
	통화금융기관예치	2,426,650	2,370,649	△ 56,001
5	고객지원사업	8,374	8,450	76
	인건비	55,349	55,273	△ 76

3. 예비비

□ 인사혁신처는 2025회계연도에 예비비 배정 및 집행액이 없음.

4. 재무결산

□ 인사혁신처는 일반회계, 공무원연금기금을 포함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음.

가. 재정상태 분석

□ 2025년 말 인사혁신처 자산 총액은 24조 5,580억원으로 2024년 말 대비 2조 6,070억원(11.9%) 증가하였으며, 주로 금융자산 증가(2조 5,128억원) 및 유·무형자산 증가(782억원)에 기인함.

□ 부채 총액은 1,136조 5,663억원으로 2024년 말 대비 26조 7,708억원 (2.4%) 증가하였으며, 주로 충당부채⁴⁾ 증가(26조 1,962억원)에 기인함.

□ 이에 따라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순자산은 △1,112조 83억원으로 2024년 말 대비 24조 1,638억원(2.2%) 감소하였음.

4)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충당부채) 충당부채는 지출시기 또는 지출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로서 퇴직급여충당부채, 연금충당부채, 보험충당부채 및 기타 장기충당부채 등을 말한다.

[2025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A)	2024(B)	증 감 (A-B)	
			금액(C=A-B)	비율(C/B)
자산합계(a)	24,557,952	21,950,985	2,606,967	11.9
Ⅰ. 금융자산	17,274,921	14,762,119	2,512,802	17.0
Ⅱ. 유·무형자산	7,248,467	7,170,272	78,195	1.1
Ⅲ. 기타자산	34,564	18,594	15,970	85.9
부채합계(b)	1,136,566,340	1,109,795,581	26,770,759	2.4
Ⅰ. 차입부채	4,948,947	4,609,177	339,770	7.4
Ⅱ. 충당부채	1,131,205,740	1,105,009,548	26,196,192	2.4
Ⅲ. 기타부채	411,653	176,855	234,798	132.8
순자산(a-b)	△1,112,008,388	△1,087,844,595	△24,163,793	△2.2
Ⅰ. 기본순자산	4,688,907	4,688,907	-	-
Ⅱ. 적립금 및 잉여금	△1,123,435,418	△1,098,213,304	△25,222,114	2.3
Ⅲ. 순자산조정	6,738,123	5,679,802	1,058,321	18.6

※ 자료: 인사혁신처, 「2025회계연도 인사혁신처 결산보고서」, 2026.

자산의 종류	설 명
금융자산	현금 또는 현금을 수취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자산을 교환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인 자산(현금 및 현금성자산, 금융상품, 투자증권, 정부출자금, 대여금, 미수채권 등)
유·무형자산	유·무형자산은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및 무형자산으로 구분 · 일반유형자산이란 고유한 행정활동에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집기·비품·차량운반구 등) · 사회기반시설이란 국가의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 대규모로 투자하여 건설하고 그 경제적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자산 · 무형자산이란 물리적 실체는 없으나 일정 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자산(산업재산권, 소프트웨어 등)
기타자산	금융자산과 유·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

나. 재정운영 분석

- ☐ 중앙관서의 재정운영표는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와 성질별 재정운영표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 ☐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는 프로그램(사업)별 원가가 얼마인지 계산해서 표시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총원가(프로그램 수행시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서 프로그램수익(프로그램과 직접 관련 있는 수익)을 차감한 프로그램순원가에 관리비용(인건비 등 프로그램 수행을 지원하는 비용)과 비배분비용(대손상각비 등 프로그램에 직접 대응하기 어려운 비용)을 합산하고, 비배분수익(과오지급금 회수금 등 프로그램에 직접 대응하기 어려운 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를 표시하며, 여기에 국세, 부담금 등 비교환수익을 차감하여 재정운영 결과를 표시함.

$$\begin{aligned} \text{재정운영결과(국가 사업의 원가 분석)} = & \\ & \text{프로그램 순원가(프로그램 총원가 - 프로그램 수익)} \\ & + \text{관리비용} + \text{비배분비용} \\ & - \text{비배분수익} \\ & - \text{비교환수익} \end{aligned}$$

- ☐ 2025년 인사혁신처의 재정운영순원가는 프로그램순원가 42조 7,648억원 및 관리운영비 1,017억원, 비배분비용 412억원을 합산하고, 비배분수익 7,469억원을 차감한 42조 1,608억원임.

□ 2025년 재정운영결과는 재정운영순원가 42조 1,608억원에서 비교환수익 등 5조 5,020억원을 차감한 36조 6,588억원임.

□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프로그램순원가는 프로그램총원가 61조 3,234억원에서 프로그램수익 18조 5,586억원을 차감한 42조 7,648억원으로, 프로그램순원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공무원연금급여지급 프로그램’이며 동 프로그램총원가는 60조 8,665억원이고 프로그램수익은 18조 1,681억원임.
- 둘째,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737억원과 기타경비 280억원을 합산한 1,017억원임.
- 셋째, 비배분비용은 자산처분손실 242억원, 감액손실 64억원, 운영비 69억원 및 기타비용 37억원 등을 합산한 412억원임.
- 넷째, 비배분수익은 이자수익 1,786억원, 배당수익 1,864억원, 자산처분이익 3,679억원 및 기타수익 140억원 등을 합산한 7,469억원임.
- 마지막으로, 비교환수익 등은 전액 기금회계 금액으로 기타이전수익 5조 5,020억원임.

[2025회계연도 인사혁신처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I. 프로그램순원가	42,764,822
II. 관리운영비	101,733
III. 비배분비용	41,219
IV. 비배분수익	746,947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42,160,828
VI. 비교환수익 등	5,502,064
VII. 재정운영결과(V - VI)	36,658,764

※ 자료: 인사혁신처, 「2025회계연도 인사혁신처 결산보고서」, 2026.

- ☐ 성질별 재정운영표는 수익과 비용을 구분하여 집계하고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하여 재정운영결과를 계상함. 비용은 이전비용과 국가운영비용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수익은 이전수익 및 국가운영수익을 구분하여 표시함.
- ☐ 2025년 인사혁신처의 비용은 61조 4,664억원으로 이전비용은 992억원, 국가운영비용은 61조 3,672억원임.
- ☐ 인사혁신처의 수익은 24조 8,076억원으로 이전수익은 5조 5,020억원, 국가운영수익은 19조 3,056억원임.
- ☐ 이에 따라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36조 6,588억원이 됨.

[2025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성질별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수익합계(a)	24,807,627
I.이전수익	5,502,064
II.국가운영수익	19,305,562
비용합계(b)	61,466,390
III.이전비용	99,166
IV.국가운영비용	61,367,224
재정운영결과(b-a)	36,658,764

※ 자료: 인사혁신처, 「2025회계연도 인사혁신처 결산보고서」, 2026.

다. 순자산변동 분석

- 순자산 변동표는 순자산의 한 해 동안 변동 내역을 표시하는데, 기초순자산(전기에 이미 보고된 순자산 금액에 전기오류수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정)에서 재정운영결과(재정운영표상 사업원가)를 차감하고 재원의 조달 및 이전(재원의 조달은 직접적인 반대 급부 없이 발생하는 수익인 국세, 부담금 등 비교환수익과 예산배정액의 실제 집행액을 의미하는 국고수입, 재원의 이전은 순자산 감소효과를 발생시키는 중앙관서 간의 무상이전거래와 국고이전지출을 의미함) 및 조정 항목(순자산의 증가 또는 감소효과를 발생시키는 거래 중 납입자본의 증감, 투자증권 평가손익 등 재원의 조달 및 이전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을 합산한 결과를 기말순자산으로 표시함.

$$\text{기말순자산} = \text{기초순자산} - \text{재정운영결과} + \text{재원의 조달 및 이전} + \text{조정 항목}$$

- 인사혁신처의 순자산은 2025년 말 기준 △1,112조 84억원으로, 2025년 기초순자산은 △1,087조 8,446억원, 재정운영결과 36조 6,588억원, 재원의 조달 및 이전 3조 4,078억원, 조정 항목 9조 871억원임.
-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6조 4,058억원 및 기타이전수입 24억원 등 6조 4,082억원이 재원의 조달로, 국고이전지출 621억원 및 기타이전비용 2조 9,383억원 등 3조 4억원이 재원의 이전으로 계상

된 것이며, 조정 항목 9조 871억원은 주로 공무원 연금충당부채 등의 연금보험수리적 손익 변동에 따른 기타순자산증감 8조 288억원과 자산재평가이익 1,830억원 및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 8,753억원 등으로 인한 것임. 이에 따라 기말순자산은 △1,112조 84억원으로 계상됨.

[2025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I. 기초순자산	△1,087,844,595
II. 재정운영결과	36,658,764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3,407,822
IV. 조정 항목	9,087,148
V. 기말순자산(I - II + III + IV)	△1,112,008,388

※ 자료: 인사혁신처, 「2025회계연도 인사혁신처 결산보고서」, 2026.

라. 현금흐름 분석

- 2025년 인사혁신처의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1조 6,538억원으로 주로 연금수입 등으로 인한 현금유입 28조 7,938억원 및 연금비용 등으로 인한 현금유출 27조 1,400억원에 기인함.
- 인사혁신처의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4,685억원으로 주로 투자증권 처분 및 대여금 회수 등으로 인한 현금유입 2조 9,166억원과 투자증권 취득 및 대여금 지급 등으로 인한 현금유출 3조 3,851억원에 기인함.
- 인사혁신처의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499억원으로 주로 정부내차입금 차입 등으로 인한 현금유입 9억원 및 차입금 상환 등으로 인한 현금유출 508억원에 기인함.
- 이에 따라 2025년 인사혁신처의 현금은 3조 222억원으로 2024년 말 대비 1조 1,354억원 증가하였음.

[2025회계연도 인사혁신처 현금흐름표 요약]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I.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653,771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468,489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49,930
IV. 현금의증감(I + II + III)	1,135,351
V. 기초의현금	1,886,862
VI. 기말의현금(IV + V)	3,022,213

※ 자료: 인사혁신처, 「2025회계연도 인사혁신처 결산보고서」, 2026.

【경찰청 소관】

1. 일반회계

가. 세 입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개요>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A)	장수결정액(B)	수납액(C)	수납률 (C/A)	수납률 (C/B)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일반회계 세입	1,465,264	2,796,201	1,417,646	96.8	50.7	7,180	1,371,375

※ 자료 : 경찰청

□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조 4,652억 6,400만원으로, 2조 7,962억 100만원이 장수결정되어, 예산액 대비 96.8%, 장수결정액 대비 50.7%에 해당하는 1조 4,176억 4,6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조 3,713억 7,500만원임.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세입예산현액	장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1,465,264	1,465,264	2,796,201	1,417,646	7,180	1,371,375
재산수입	3,449	3,449	3,713	3,458	5	250
경상이전수입	1,452,238	1,452,238	2,784,481	1,406,235	7,175	1,371,070
재화및용역판매수입	5,555	5,555	6,185	6,140	-	45
관유물매각대	4,022	4,022	1,822	1,813	-	10

※ 자료 : 경찰청

□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대비 수납률은 세입 예산의 약 85.1%를 차지하는 과태료 예산액 증가 등으로 96.8%임.

<연도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대비 수납률(2020년도~2025년도)>

(단위: %)

구 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대비 수납률	102.3	115.6	128.1	122.4	114.6	96.8

※ 자료: 경찰청

□ 세입과목별로 세입예산액 대비 수납 내역을 살펴보면, 재산수입,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은 초과 수납하였으나, 벌금 및 과태료로 구성된 경상이전수입 및 관유물매각대의 수납액은 미달되었음.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대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세 입 예산액	수납액	세입예산액 과의 차이	내 역
합 계	1,465,264	1,417,646	△47,618	
재산수입	3,449	3,458	9	관유물(토지, 건물) 대여료
경상이전수입	1,452,238	1,406,235	△46,003	벌금 및 과료, 과태료
재화및용역판매수입	5,555	6,140	585	기타 잡수입
관유물매각대	4,022	1,813	△2,209	기계기구 등 고정자산 매각대

※ 자료: 경찰청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세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과 목	세 입 예산액	수납액	미수납액	세입예산액 과 수납액 차이	증 감 사 유
합 계	1,465,264	1,417,646	1,371,375	△47,618	
재산수입	3,449	3,458	250	9	
토지대여료	1,335	1,385	202	50	• 토지임대료 수입 증가
건물대여료	1,526	1,670	45	144	• 건물임대료 수입 증가
기타관유물대여료	1	1	-	-	
기타재산수입	587	401	3	△186	• 이자수입 증가
경상이전수입	1,452,238	1,406,235	1,371,070	△46,003	
벌금및과료	79,806	77,307	-	△2,499	• 통고처분 감소
과태료	1,324,272	1,274,049	1,104,061	△50,223	• 과태료 예산액 증가 및 처분 감소
징계부가금	90	232	1,252	142	• 징계부가금 수입 증가
변상금	87	73	5,660	△14	• 채납변상금 징수 감소
위약금	761	427	83	△334	• 위약금 감소
가산금	30,786	34,951	257,207	4,165	• 가산금 수입 증가
기타경상이전수입	16,436	19,197	2,807	2,761	• 과오지급 반환금 등 증 가
재화및용역판매수입	5,555	6,140	45	585	
면허료 및 수수료	678	716	-	38	• 시험응시료 수입 증가
수업료	524	528	24	4	• 수업료 수입 증가
기타잡수입	4,353	4,896	21	543	• 잡수익 증가
관유물매각대	4,022	1,813	10	△2,209	
기계기구매각대	3,310	1,145	9	△2,165	• 기계기구 매각 감소
기타고정자산매각대	406	565	1	159	• 기자재 등 매각 증가
토지매각대	306	103	-	△203	• 토지교환에 따른 차액 감소

※ 자료: 경찰청

- 재산수입에서는 세입예산액의 100.3%에 해당하는 34억 5,800만원이 수납되었는바, 이는 토지대여료 등 수납액 증가에 따른 것임.
- 경상이전수입에서는 세입예산액의 94.4%에 해당하는 1조 3,710억 7,000만원이 수납되었는바, 그 주요원인은 과태료 예산액 증가 및 수납액 감소 등에 따른 것임.
-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에서는 세입예산액의 110.5%에 해당하는 61억 4,000만원이 수납되었는바, 그 주요원인은 기타잡수익이 세입 예산액보다 5억 4,300만원 증가되는 등에 따른 것임.
- 관유물매각대에서는 세입예산액의 45.1%에 해당하는 18억 1,300만원을 수납하였는바, 기계기구매각대 등 수납액 감소에 따른 것임.

나. 세 출

(1) 총 괄

□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3조 4,908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73억 5,800만원 및 예비비 44억 7,0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13조 5,026억 9,800만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8.3%인 13조 5,026억 9,8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724억 1,300만원이며, 불용액은 1,628억 4,300만원임.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프로그램	세 출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전 용 증 감	이 용 증 감	세출예산 현 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불용액
합 계	13,490,870	7,358	4,470	±21,457	±1,592	13,502,698	13,267,442	72,413	162,843
범죄예방 및 치안상황대응강화	63,524	524	-	±8064	-	64,048	62,600	-	1,448
범죄수사활동	389,820	595	-	±187	-	390,415	384,341	620	5,454
교통안전소통확보	305,207	531	-	-	-	305,738	304,558	-	1,180
사회적약자보호	16,491	-	-	±161	-	16,491	15,467	615	409
사회질서유지	192,477	212	4,470	±5,179	±1,257	198,416	196,587	248	1,581
공공안전위험 예방 및 대응강화	37,772	-	-	-	-	37,772	37,072	-	701
국제치안협력 공조강화	15,126	-	-	-	±335	15,461	15,100	-	361
전문경찰양성	71,962	2,091	-	±274	-	74,053	72,684	328	1,041
치안인프라구축	489,279	2,153	-	±10	△1,257	490,175	408,597	70,203	11,375
과학치안활성화	64,027	-	-	-	-	64,027	64,027	-	-
경찰행정지원	11,794,360	1,251	-	±7,582	△335	11,795,277	11,655,584	400	139,293
회계간거래	50,825	-	-	-	-	50,825	50,825	-	-

※ 자료: 경찰청

- ☐ 이용액은 15억 9,200만원으로 임차료 및 인터폴 분담금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것 등이었음.
- ☐ 전용액은 214억 5,700만원으로 공공요금 부족액 등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음.
- ☐ 다음연도 이월액 724억 1,300만원은 경찰차량 구매 절차 지연 570억 3,900만원, 전자충격기 구매 절차 지연 58억 3,800만원, 신형 방탄복 구매 절차 지연 51억 7,900만원 등에 따른 것이며,
불용액 1,628억 4,300만원은 정·현원 차이에 따른 인건비 불용액 1,134억 5,600만원, 관서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493억 8,700만원임.
- ☐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지출규모는 전년 대비 2.9%, 3,730억 8,100만원이 증가한 13조 2,674억 4,200만원임.

<연도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지출현황('20년도~'25년도)>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지출액	11,176,395	11,639,009	11,997,861	12,286,312	12,894,361	13,267,442
증감액	503,392	462,613	358,852	288,451	608,049	373,081
증감률	4.7	4.1	3.1	2.4	4.9	2.9

※ 자료: 경찰청

- ☐ 세출예산 비목별로는 인건비가 인력증원 및 보수인상 등으로 전년대비 3.9% 증가하였고, 물건비는 물가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4.1% 증가함.
- ☐ 전출금 등은 경찰병원 전출금 증액으로 전년대비 2.5% 증가함.

<2024년도 대비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비목별 지출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전출금
2025년도	13,267,442	10,498,390	2,023,223	307,053	387,951	50,825
2024년도	12,894,361	10,106,826	1,942,717	314,304	480,917	49,597
증감액	373,081	391,564	80,506	△7,251	△92,966	1,228
증감률	2.9	3.9	4.1	△2.3	△19.3	2.5

※ 자료 : 경찰청

□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경비성격별 지출현황을 살펴보면, 사업비는 2조 4,980억 6,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23억 1,300만원 (△1.3%) 감소하였고, 인건비는 10조 3,458억 5,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845억 1,100만원(3.9%) 증가하였음.

<2024년도 대비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경비성격별 지출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증 감	
				%
합 계	12,894,361	13,267,442	373,081	2.9
인 건 비	9,961,347	10,345,858	384,511	3.9
기 본 경 비	402,638	423,521	20,883	5.2
사 업 비	2,530,376	2,498,063	△32,313	△1.3

※ 자료: 경찰청

(2) 예비비

□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비비는 44억 7,000만원임.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용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A)	2025년도(B)	증감액(B-A)	증감률
예비비	-	4,470	4,470	순증

※ 자료: 경찰청

□ 예비비내역을 살펴보면, 청와대 경호부대 이전경비 충당을 위한 것이었음.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용내역>

(단위: 백만원)

이 용 내 역	금 액
합 계	4,470
· 청와대 경호부대 이전경비	4,470

※ 자료: 경찰청

(3) 이 용

□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용액은 15억 9,200만원임.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용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A)	2025년도(B)	증감액(B-A)	증감률
이 용	14,080	1,592	△12,488	△88.7

※ 자료: 경찰청

□ 이용내역을 살펴보면, 배상금 및 국제부담금 충당을 위한 것이었음.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용내역>

(단위: 백만원)

이 용 내 역	금 액
합 계	1,592
· APEC행사 관련 임차료 부족분 충당	1,257
· 국제부담금 충당	335

※ 자료: 경찰청

(4) 전 용

-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전용액은 214억 5,700만원으로 2024년도 148억 7,000만원 대비 65억 8,700만원 감소하였음.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전용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A)	2025년도(B)	증감액(B-A)	증감률
전 용	14,870	21,457	6,587	44.3

※ 자료: 경찰청

- 전용내역을 살펴보면, 바디캠 운영비 81억원, 공공요금 부족액 80억원 등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음.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전용내역>

(단위: 백만원)

전 용 내 역	금 액
합 계	21,457
· 바디캠 운영비	8,064
· 공공요금 부족	7,981
· 탄핵선고 우발상황 대비 지원	2,028
· APEC 행사 지원	1,733
· 경호부대 이전 경비	1,190
· 기타(시스템 라이선스 갱신 등)	462

※ 자료: 경찰청

(5) 이 월

-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월액은 724억 1,300만원으로, 2024년도 73억 5,800만원 대비 650억 5,500만원 증가하였음.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A)	2025년도(B)	증감액(B-A)	증감률
이 월	7,358	72,413	65,055	884.1

※ 자료: 경찰청

-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노후차량교체 및 증차 570억 3,900만원, 전자충격기 구매 58억 3,800만원, 신형 방탄복 구매 51억 7,900만원 등이 이월되었음.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월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이 월 내 역
합 계	72,413	
물건비	8,398	· 계약 체결 지연 등
자산취득 및 운용	64,014	· 계약 체결 지연 등

※ 자료: 경찰청

(6) 불 용

-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액은 1,628억 4,300만원으로, 2024년도 733억 3,600만원 대비 895억 700만원이 증가하였음.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A)	2025년도(B)	증감액(B-A)	증감률
불 용	73,336	162,843	89,507	122.1

※ 자료: 경찰청

- 불용내역을 살펴보면, 휴직 등 정·현원 차이에 따른 인건비 불용액 1,134억 5,600만원, 관서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 493억 8,700만원임.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불 용 내 역
합 계	162,843	
인건비	113,456	· 결원(휴직 등 정·현원 차이)로 인한 불용액
물건비	42,329	· 집행잔액
이전지출	2,403	· 집행잔액
자산취득 및 운용	4,655	· 집행잔액

※ 자료: 경찰청

2.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경찰병원)

- 경찰병원은 2006년부터 책임운영기관⁵⁾으로 지정되어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바, 경찰병원의 특별회계는 손익계정과 자본계정으로 구분·운용되고 있음.

가. 세 입

<2025회계연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경찰병원) 세입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손 익 계 정	88,441	81,928	81,907	-	21
영업수입	32,207	22,505	22,485	-	20
채화및용역판매수입 등	6,523	6,350	6,348	-	2
세계잉여금	1,492	4,854	4,854	-	-
정부내부수입및기타	48,219	48,219	48,219	-	-
자 본 계 정	3,098	3,494	3,494	-	-
세계잉여금	490	886	886	-	-
정부내부수입및기타	2,608	2,608	2,608	-	-

※ 자료: 경찰청

- 손익계정의 당초 세입예산액은 884억 4,100만원으로, 819억 2,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819억 700만원을 수납하고, 자본계정의 세입예산액은 30억 9,800만원으로, 34억 9,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를 전액 수납하였음.

5)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책임운영기관”이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公共性)을 유지하면서도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전문성이 있어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사무에 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② ~ ④ (생략)

나. 세 출

<2025회계연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경찰병원) 세출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과 목	예산액	예산결정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초과지출 승인액	전 용	이 용 이 체				
손 익 계 정	88,441	-	-	±82	-	88,441	80,758	-	7,683
인 건 비	50,207	-	-	△82	-	50,125	44,723	-	5,402
기본경비	3,087	-	-	37	-	3,124	2,999	-	125
(총액인건비)									
진료업무지원	25,372	-	-	20	-	25,392	24,247	-	1,145
장례식장운영	3,983	-	-	25	-	4,008	3,561	-	447
공무원연금부담 금	5,790	-	-	-	-	5,790	5,225	-	565
감가상각비	1	-	-	-	-	1	1	-	-
당기순이익	1	-	-	-	-	1	1	-	-
자 본 계 정	3,098	-	-	-	-	3,098	2,621	-	477
기본경비	183	-	-	-	-	183	183	-	-
자산취득	2,915	-	-	-	-	2,915	2,438	-	477

※ 자료: 경찰청

□ 손익계정의 세출예산(현)액은 884억 4,100만원이고, 이 중 지출액은 807억 5,800만원이며, 76억 8,300만원을 불용하였음.

자본계정의 세출예산(현)액은 30억 9,800만원이고, 지출액은 26억 2,100만원이며, 4억 7,700만원은 불용하였음.

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라 함)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74조에 따라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운용하며, 동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별로 구분되어 있음⁶⁾.

□ 경찰청은 동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제주자치경찰인력 지원사업(제주특별자치도계정)을 위한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음.

<2024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과 목	예산액	예산결정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전용	이용 이체				
계	5,006	-	-	-	5,006	5,006	-	-
제주자치경찰인력지원 제주계정	5,006	-	-	-	5,006	5,006	-	-

※ 자료: 경찰청

□ 2025년도 동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액은 50억 5,006만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음.

6)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74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75조(회계의 관리·운용) ① 회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 회계의 예산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세출예산의 배정·자금운영·결산, 그 밖에 회계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계정의 구분) 회계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한다.

4. 재무결산

가. 재정상태 분석

<2025회계연도 경찰청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A)	2025년도(B)	증 감 (B-A)	
			금 액	비 율
I. 자산	18,086,074	18,305,819	219,745	1.2
· 금융자산	1,384,608	1,413,599	28,991	2.1
· 유·무형자산	16,677,813	16,858,312	180,499	1.1
· 기타자산	23,653	33,909	10,256	43.4
II. 부채	402,014	396,421	△5,593	△1.4
· 차입부채	294,388	286,057	△8,331	△2.8
· 충당부채	105,720	108,848	3,128	3.0
· 기타부채	1,906	1,516	△390	△20.5
III. 순자산	17,684,060	17,909,398	225,338	1.3
· 기본순자산	6,898,650	6,898,650	-	-
· 적립금및잉여금	3,933,000	4,193,141	260,141	6.6
· 순자산조정	6,852,410	6,817,607	△34,803	△0.5

※ 자료: 경찰청

□ 2025년말 현재 경찰청의 자산총액은 18조 3,058억 1,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197억 4,500만원(1.2%) 증가하였는데, 주로 토지 및 건물 등의 취득 등에 따른 유·무형자산이 1,804억 9,900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임.

□ 부채 총액은 3,964억 2,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5억 9,300만원(1.4%) 감소하였는데, 이는 어린이집 관련 BTL미지급금 상환으로

인한 차입부채 83억 3,100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 ☐ 이에 따라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순자산은 17조 9,093억 9,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253억 3,800만원(1.3%) 증가하였음.

나. 재정운영 분석

<2025회계연도 경찰청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A)	2025년도 (B)	증 감 (B-A)	
			금 액	비 율
I. 프로그램순원가 (가 - 나)	1,575,482	1,627,209	51,727	3.3
가. 프로그램총원가	1,605,787	1,654,932	49,145	3.1
나. 프로그램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30,305	27,723	△ 2,582	△ 8.5
II. 관리운영비	12,936,306	13,488,970	552,664	4.3
III. 비배분비용	16,361	21,389	5,028	30.7
IV. 비배분수익	50,314	53,511	3,197	6.4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14,477,836	15,084,057	606,221	4.2
VI. 비교환수익 등	194	223	29	14.9
VII. 재정운영결과(V - VI)	14,477,642	15,083,835	606,193	4.2

※ 자료: 경찰청

□ 재정운영결과는 재정운영순원가에서 비교환수익 등을 제외한 금액인바, 2025년도 재정운영결과는 15조 838억 3,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2%인 6,061억 9,3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관리운영비가 5,526억 6,400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임.

□ 2025회계연도 중에 발생한 프로그램순원가는 1조 6,272억 900만원이었음.

□ 2025회계연도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15조 840억 5,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2%인 6,062억 2,100만원이 증가하였음.

다. 순자산변동 분석

<2025회계연도 경찰청 순자산 변동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A)	2025년도(B)	증 감 (B-A)	
			금 액	비 율
I. 기초순자산	17,418,038	17,684,060	266,022	1.5
II. 재정운영결과	14,477,642	15,083,835	606,193	4.2
III. 재원의조달및이전	14,782,699	15,343,976	561,277	3.8
IV. 조정항목	△39,036	△34,803	4,233	10.8
V. 기말순자산 (I - II + III + IV)	17,684,060	17,909,398	225,338	1.3

※ 자료: 경찰청

- 경찰청의 2025년도 기말순자산은 17조 9,093억 9,800만원으로 2024년말 대비 1.3%인 2,253억 3,8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15조 838억 3,500만원 발생한 반면, 순자산 가산항목인 재원의조달및이전은 15조 3,439억 7,600만원, 조정항목은 △348억 300만원 발생하여 순자산 가산항목이 차감항목을 초과하였기 때문이다.

【소방청 소관】

1. 일반회계

가. 세 입

<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A)	징수결정액(B)	수납액(C)	수납률 (C/A)	수납률 (C/B)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일반회계	4,563	4,874	4,864	106.6	99.8	0	10

※ 자료: 소방청

-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45억 6,300만원이며 48억 7,400만원이 징수 결정되어, 징수결정액 대비 99.8%에 해당하는 48억 6,4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000만원임.

<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세입예산 현 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4,563	4,563	4,874	4,864	0	10
재산수입	273	273	158	156	0	2
경상이전수입	1,949	1,949	2,737	2,729	0	8
재화및용역판매수입	270	270	222	222	0	0
수입대체경비수입	2,071	2,071	1,757	1,757	0	0

※ 자료: 소방청

<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세입 세부내역 >

(단위: 백만원)

과 목	세 입 예산액	수납액	미수납액	세입예산액과 수납액 차이	증 감 사 유
합 계	4,563	4,864	10	301	
재 산 수 입	273	155	0	△118	
관유물대여료	17	3	0	△14	중앙소방학교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완 화 지원기간 연장으로 반환금 발생
기타 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256	152	2	△104	국고보조금, 출연금 이자 감소
경상이전수입	1,949	2,729	8	781	
벌금 및 과태료	1	0	8	△1	사유 미발생
변상금 및 위약금	214	156	0	△58	지체상금 발생
기타경상이전수입	1,734	2,574	0	840	국고보조금, 출연금 집행잔액 증가
재화및용역판매수입	270	222	0	△48	
면허료 및 수수료	200	113	0	△87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인원 감소
잡수입	70	109	0	39	중앙소방학교 후생관 등 전기 및 수도 등 사용량 증가
수입대체경비수입	2,071	1,757	0	△314	
책임운영기관 사업수입	1,174	663	0	△511	연구과제 선금 663백만원 수납, 잔금은 차년도 차년도 징수
기타잡수입	897	1,094	0	197	신규임용자 교육수요 증가

※ 자료 : 소방청

- 벌금 및 과태료 미수납액 800만원은 징계부과금 감면 및 재결정을 위한
징계위원회가 연내 개최되지 못함에 따른것이며, 기타이전수입 및 재산
수입 미수납액 200만원은 국고보조사업 이자 미납에 따른 것임.

나. 세 출

(1) 총 괄

-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456억 2,0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은 321억 2,9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3,777억 4,900만원이고, 이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0.9%인 3,434억 4,3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80억 2,600만원이고, 불용액은 63억 2,000만원임.

<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프로그램	세 출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전 용 증 감	이 용	세출예산 현 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불용액
합 계	345,620	32,129	-	±2,162	±2,757	377,749	343,403	28,026	6,320
소방정책지원	257,599	22,133	-	±1,834	-2,757	276,975	243,871	27,329	5,776
소방행정지원	88,021	9,996	-	±328	+2,757	100,774	99,532	697	544

※ 자료 : 소방청

<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이·전용 현황 >

(단위: 백만원)

사업구분	예 산 액	예산현액	이 용	전 용
계	345,620	377,749	±2,757	±2,162
인 건 비	75,430	78,166	+2,757	-
기 본 경 비	10,535	11,023		322 -292
사 업 비	259,655	288,560	-2,757	1,840 -1870

※ 자료 : 소방청

(2) 전 용

□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전용액은 21억 6,200만원임.

□ 전용내역을 살펴보면, 소방공무원 건강검진 비용 및 기본경비 부족재원 3억 2,200만원, 중앙119구조본부 대용량포 외자구매 분 유로환율 상승으로 인한 부족 재원 3억 7,400만원 등을 전용 하였음.

<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전용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전 용 내 역
합 계	±2,162	
기본경비	322 -292	건강검진 비용 및 기본경비 부족분 마련(322) 등
사업비	1,840 -1,870	외자구매 유로환율 상승으로 인한 부족분(374) 등

※ 자료 : 소방청

(3) 이 월

□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월액은 전년대비 41억 300만원 감소한 280억 2,600만원임

<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월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A)	2024년(B)	증감액(A-B)	증감률
이 월	28,026	32,129	△4,103	△12.8

※ 자료 : 소방청

-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다음연도 이월액 280억 2,600만원은 국가항만 중형 소방선(2척) 구매사업 122억 8,500만원, 119항공정비실 건립사업 87억 700만원(시설부대비 포함), 대형소방헬기 배면물탱크 설치 사업 22억원, 기본경비 5억 1,800만원 등이 각각 이월되었음.

<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월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이 월 내 역
합 계	28,026	
절대공기 부족	8,908	항공정비실 건립사업(8,690), 국회업무관리시스템 구축(130) 등
계약 및 협의지연	4,513	대형소방헬기 배면물탱크 설치(2,200), 119구급스마트시스템 구축 4차사업(1,363) 등
기타	14,087	국가항만 중형소방선(2척) 구매사업(12,285), 서산 대용량포방사시스템 구매(1,320) 등
기본경비	518	소방청 및 소속기관 경상적 경비 이월

※ 자료 : 소방청

(4) 불 용

-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액은 전년대비 3억 1,300만원 감소한 63억 2,000만원임.

<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A)	2024년(B)	증감액(A-B)	증감률
불 용	6,320	6,633	△313	△4.7

※ 자료 : 소방청

- 불용 내역을 살펴보면, 불용액 63억 2,000만원은 국립소방병원 건립 사업 등 사업비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58억 9,000만원, 기본경비 집행잔액 3억 8,300만원, 인건비 집행잔액 4,700만원 등임

<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불 용 내 역
합 계	6,320	
인건비 집행잔액	47	인건비 집행잔액
사업비 집행잔액	5,890	개별 사업비의 낙찰차액, 집행잔액
기본경비 집행잔액	383	기본경비 집행잔액

※ 자료 : 소방청

2. 재무결산

가. 재정상태 분석

< 2025회계연도 소방청 재정상태표 요약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A)	2024년도(B)	증 감 (A-B)	
			금 액	비 율
I. 자산	859,363	752,081	107,282	14.3
· 금융자산	3,781	3,537	244	6.9
· 유·무형자산	855,087	746,369	108,718	14.6
· 기타자산	495	2,175	△1,680	△77.2
II. 부채	5,286	2,009	3,277	163.1
· 차입부채	5,284	2,007	3,277	163.3
· 충당부채	0	0	0	0.0
· 기타부채	2	2	0	0.0
III. 순자산	854,077	750,072	104,005	13.9
· 기본순자산	102,344	102,344	0	0.0
· 적립금및잉여금	671,450	567,156	104,263	18.4
· 순자산조정	80,313	80,572	△258	△0.3

※ 자료 : 소방청

- 2025회계연도말 기준 소방청 자산은 전년 대비 1,072억 8,200만원이 증가한 8,593억 6,300만원으로 유·무형자산이 1,087억 1,800만원, 기타 자산이 16억 8,000만원 감소한 것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부채는 전년 대비 32억 7,700만원 증가한 52억원 8,600만원으로 차입부채의 32억원 7,700만원 증가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1,040억 500만원 증가한 8,540억 7,700만원임.

나. 재정운영 분석

< 2025회계연도 소방청 재정운영표 요약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A)	2024년도 (B)	증 감 (A-B)	
			금 액	비 율
I. 프로그램순원가 (가 - 나)	170,434	153,368	17,066	11.1
가. 프로그램총원가	172,184	154,692	17,492	11.3
나. 프로그램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1,750	1,324	426	32.1
II. 관리운영비	109,035	101,183	7,852	7.8
III. 비배분비용	145	256	△111	△43.4
IV. 비배분수익	3,595	3,684	△89	△2.4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276,019	251,123	24,896	9.9
VI. 비교환수익 등	0	0	0	0
VII. 재정운영결과(V - VI)	276,019	251,123	24,896	9.9

- ☐ 2025회계연도 소방청의 프로그램순원가는 1,704억 3,400만원이며, 재정운영결과는 2,760억 1,900만원임.
- ☐ 비용은 프로그램총원가 1,721억 8,400만원, 관리운영비 1,090억 3,500만원, 비배분비용 1억 4,5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 수익 17억 5,000만원, 비배분수익 35억 9,500만원으로 구성됨.
- ☐ 2025년도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 대비 248억 9,600만원 증가한 2,760억 1,900만원임.
- ☐ 이는 주로 소방정책지원으로 발생하였고, 프로그램순원가는 1,704억 3,400만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790억 1,300만원, 경비 200억

2,1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비배분비용은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일반유형자산 감가상각비 1억 4,5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 프로그램순원가는 소방정책지원 프로그램(1,704억 3,400만원)으로 나타났음.

다. 순자산변동 분석

< 2025회계연도 소방청 순자산 변동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A)	2024년도 (B)	증 감 (A-B)	
			금 액	비 율
I. 기초순자산	750,072	644,683	105,389	16.3
II. 재정운영결과	276,019	251,123	24,896	9.9
III. 재원의조달및이전	380,282	356,800	23,482	6.6
IV. 조정항목	△258	△288	30	10.4
V. 기말순자산 (I - II + III + IV)	854,077	750,072	104,005	13.9

- 소방청의 2025년도 기초순자산은 7,500억 7,2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8,540억 7,700만원으로 기초순자산 대비 1,040억 500만원(13.9%) 증가하였음.

IV.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행정안전부 소관】

【총괄: 이용·전용·내역변경·세목조정 분석】

- 최근 5년(2021~2025회계연도)간 4회 이상 이·전용등(내역변경·세목조정 제외)을 통한 증액이 있었던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8개 사업임. 이 중 5회(매년) 증액된 것은 재난대책비(총액), 국과수기본경비(총액), 기관운영(총액), 국가정보자원관리원운영(정보화) 등 4개 사업, 4회 증액된 것은 기관운영, 정보보호인프라확충, 청사기본경비(총액), 청사시설유지보수 등 4개 사업임.
- 최근 5년(2021~2025회계연도)간 4회 이상 이용·전용을 통한 감액이 있었던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12개 사업임. 이 중 5회(매년) 감액된 것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운영(정보화), 인건비(국과수), 인건비(본부), 공직선거관리및지방의회역량강화 등 3개 사업, 4회 감액된 것은 인건비(청사), 지자체경쟁력지원, 공무원통근버스 운행, 정부혁신추진및확산, 기록관시설보존관리, 제주4.3피해보상(보상금 등), 부마민주항쟁명예회복지원, 정부청사노후시설등정비, 청사시설관리 및 위탁 등 9개 사업임.
- 2025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예산 중 2월 이전에 이·전용등을 실시한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이 ‘기획조정실’, ‘국과수기본경비(총액)’, ‘과학수사감정지원’ 등 총 9개 세부사업이 있었음.
- 불용률이 30%이상인 사업을 살펴보면, 인건비(진실화해위원회), 진실화해위원회 지원, 진실화해위원회기본경비, 의정관실(총액), 국민통합위원회 운영 및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운영지원(정보화) 등 6개 사업임.
- 이월률이 30%이상인 사업을 살펴보면, 비상대비정보화(정보화), 정책연구개발 등 2개 사업임.

【세 입】

1.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 행정안전부는 최근 3년간 기타경상이전수입(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예산액 대비 수납률이 200%를 초과하는 등의 오차를 보이고 있으므로,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수입예산과 수납액의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행정안전부는 2025년 기타경상이전수입(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73.1%에 불과한데, 이는 국고보조금 반납 지연에 따른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안내를 통해 신속한 정산을 독려하는 한편, 국고보조금 반납시 광역자치단체가 취합하는 방식이 아닌 기초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신속하게 반납하는 방식을 검토하여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수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세 출】

1. 기획조정실 (7011-254)

- 행정안전부는 최근 4~6억원 규모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타 사업으로부터 이·전용을 통해 집행하고 있으므로, 소속기관의 장애인 고용여건을 고려하여 단기적으로는 납부방법 변경 등 이·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장애인 고용노력을 통해 고용부담금의 납부규모를 축소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2. 국경일등정부행사(2131-300)

- ‘국민방한 등 정부의전행사’ 내역사업은 2025년 신년인사회 미개최 및 대통령 탄핵·대선에 따른 정상외교 일정의 추진 제약으로 예산현액 3억 6,500만원 중 8,300만원만 집행하고 2억 8,200만원을 불용하는 등 집행이 부진하였음. 향후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집행 가능성이 낮은 채원의 감액 또는 법령상 허용 범위 내 재배분을 검토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3. 정부포상(2131-301)

- 내내역사업 국민추천포상 운영사업은 최근 5년간 홍보·수여식 대행용역 수요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2025년에도 일반수용비 2억 3,100만원 중 1억 3,800만원을 일반용역비로 조정하는 등 세목조정이 지속되었음. 행정안전부는 홍보·영상제작·행사대행 등 반복적 용역소요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일반용역비에 우선 반영함으로써 비목별 편성의 정확성을 높이고 편성·집행 간 괴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4. 정부조직진단관리(1931-300)

- 행정안전부는 조직관리 전문연구기관을 통한 조직진단 연구결과를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있는데, 해당 시스템에 대한 인식이 낮고 연구결과서에 대한 원문 접근성이 떨어져 대외 공개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보이며, 일부 기간의 결과서(’21~’23년분)에 대해서는 미공개되어 있음. 조직·인력 진단 결과가 정부 기구의 개편 및 인력 배치로 이어져 국가 예산 소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고, 연구 결과서의 투명한 공개로 외부 검증을 통한 진단 품질 제고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미공개된 결과서를 공개하는 한편, 조직관리시스템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여 공개 효과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5. 전자문서소통시스템(정보화)(1932-501)

- 행정안전부는 2회계연도(’25. 5. 23.~’26. 2. 17.)에 걸쳐 진행된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온AI)’ 구축사업의 계약금액 32억원 전액을 선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이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회계 집행임. 비록 재정당국의 지침이 계약금액의 100%까지 선금 지급을 허용하고 있더라도, 이를 다음연도 이행분까지 미리 지급할 수 있는 근거로 볼 수는 없음. 동 사업은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므로 해당연도 집행 가능 금액 내(’25년도분)에서만 선금을 지급했어야 하나, 전액을 선지급한 것은 사고이월 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될 소지가 있음.

행정안전부는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해당연도 집행 가능한 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고, 필요 시 사고이월 절차를 거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6. 정부혁신추진 및 확산(1933-307)

- 행정안전부는 공공서비스디자인 과제운영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면서 매년 특정 기관과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수의계약의 법령상 근거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향후 유사 용역 계약 추진 시 원칙적으로 경쟁입찰 또는 공개모집 방식을 통해 민간의 동등한 사업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특정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이 불가피할 경우 사전에 명시적인 법령상 위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7.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운영지원(2031-505)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운영지원 사업은 본예산의 약 50%인 42억 1,900만원을 재난대책비로 이용하였음에도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약 69.1%에 그치고, 당초 예산 대비 집행률은 약 36%에 그치는바, 행정안전부는 추후 동 위원회와 유사한 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회 구성일정 및 사업 추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8.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운영(2036-500, 정보화)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피해 복구를 위하여 약 320억원의 예비비가 배정되었으나 실제 집행은 약 138억원에 그쳤고, 그 중 공사비로 배정된 약 145억원의 대부분이 이월되거나 불용되었으며, 동 세부사업의 다음연도 이월액 및 불용액이 약 364억원으로 화재피해복구를 위하여 배정된 예비비보다 과다하여 예산의 이·전용을 통하여 충당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예비비 배정 단계에서 사업내용과 소요액 및 연도 내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청사관리 및 기관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제세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예산의 이·전용 등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행정안전부는 과거 집행실적과 월별 공공요금 고지액 등을 바탕으로 연간 소요액과 집행계획을 면밀히 산정하여 예산을 적정한 수준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9.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및 운영(2040-501, 정보화)

- 행정안전부는 내역사업인 ‘스마트워크센터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에서 시스템 통합에 따른 개인정보 결합·공유의 보안상 위험이 사전에 확인되어 통폐합 예외사유에 해당하였음에도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전액인 7,200만원을 불용한바, 이는 사업 추진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향후에는 사전 검토를 강화하여 집행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10. 공공데이터개방및이용활성화지원(2046-502, 정보화)

- 내역사업인 ‘공공데이터 구축 개방 확대’ 사업과 관련하여 전국 통합 데이터 개방 확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이 지연되어 과업 종료일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5억 5,500만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고, 이는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집행관리 및 사업의 분리 추진에 따른 비효율성으로 인한 것인바, 향후에는 사업 추진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사 사업을 통합·조정하여 계획된 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11. 국민통합위원회 운영(1145-300)

- 2025년 정책연구용역은 5건 모두 9월 이후에 착수되었고, 전임 위원장이 재임한 상반기에는 착수 실적이 없었음. 정권교체 등 대외 여건을 고려하더라도, 기초·상시 연구과제는 지속 추진할 수 있는 만큼 과제 수요조사, 연간 발주계획 수립 및 계약 준비를 회계연도 초부터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연구용역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2025년 정책연구용역 5건 중 4건의 계약 종료일이 12월 19일로 집중되었고, 일부 과제는 54일 또는 39일의 단기계약으로 체결되는 과정에서 연구계획상 기간, 실제 계약기간, 투입인력, 보고일정 및 계약금액 간 정합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측면이 있음. 연구용역 발주 시 과업량·계약기간·연구인력·보고일정 및 계약금액을 상호 연계하여 설계하고, 연말 종료일에 맞추어 연구기간을 일률적으로 단축하는 방식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12. 주민직접참여형 자치입법플랫폼 구축(1131-319)

- 행정안전부는 ‘주민e직접 플랫폼’이 주민의 다양한 직접참여제도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재 주민조례청구·주민투표청구·주민감사청구만 제공하고 있는 ‘주민청구’ 서비스에 주민소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규칙 제·개정·폐지의견제출 등의 기능을 추가하고, 별도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등과도 연계하여 주민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다양한 주민참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주민생각’ 서비스는 2024년 2월 서비스 개시 이후 등록된 208건의 설문 중 일반시민이 작성한 설문이 38건(18.2%)에 불과하고, 일반시민 설문도 참여자 비율이 대상지역 인구의 0~0.4% 수준에 그치는 등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제한적인 상황이므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13. 공직선거관리 및 지방의회역량강화(1132-300)

- 행정안전부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예비비 89억 6,900만원 중 14억 3,300만원을 불용하였고, 지방자치단체별 재배정 예산의 집행률도 65.2~95.9%로 편차가 크므로, 향후 선거기간 및 과거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소요액을 면밀히 산정하고 객관적이고 일관된 재배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행정안전부는 기 구축된 사무정보관리시스템의 유지·관리 비용 1억 7,500만원을 일반연구비로 편성하였다가 회계연도 개시 직후 관리용역비로 전용하였는데, 향후 사업의 성격과 지출 목적에 맞는 비목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직후 예산을 전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14.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금(1131-300)

- 행정안전부는 자율통합지원금을 전액 교부하여 집행률이 100%로 나타나고 있으나, 실제 지자체의 실집행률은 창원시 83.8%, 청주시 86.7%에 그치고 집행잔액 및 이월액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의 사업 추진상황과 실집행률을 면밀히 점검하여 불필요한 이월을 최소화하고, 특히 지원이 종료된 창원시의 이월예산 및 집행잔액에 대해서도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되는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음.

15.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운영(1431-301)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으로 2024년 741만원, 2025년 6,590만원을 실제 납부하였음에도 2025회계연도 예산에 관련 경비를 별도로 편성하지 않아 다른 사업에서 5,000만원을 세목조정하여 재원을 마련하였고, 2026회계연도에도 이를 편성하지 않았음. 특히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대상 범위 등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있더라도 실제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관련 기준을 조속히 명확히 하고, 향후 지급이 예상되는 경비는 과거 집행실적 및 관련 기준 등을 토대로 예산에 사전 반영하여 반복적인 세목조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16.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1237-300)

-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내역사업 ‘K-주소 해외진출 추진’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내용과 예산액을 국회의 예산심의 취지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주소기반산업협회는 용역 발주시에는 위탁기간 내에 해당 용역이 완수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하고 연말 발주를 주의하고, 행정안전부는 주소기반산업협회를 비롯한 수탁기관이 위탁기간을 준수하여 위탁사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17. 지역균형발전추진지원(1231-302) 및 지역발전활성화(1231-303)

- 행정안전부는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기본사회 관련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 등을 거쳐 예산을 이용(移用)하고, 기본사회 정책 추진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안에 반영하여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국회의 각종 심의를 거쳐 관련 예산을 집행하도록 시정이 필요함.

18. 마을기업육성사업(3131-301)

- 행정안전부는 내내역사업 ‘마을기업 DB 홈페이지’와 관련하여 신규 사업 추진시 사업의 방식과 소요 예산규모를 사전에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행정안전부는 예산 집행시 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여 계약 당사자를 결정하고, 수의계약 체결시에는 수의계약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 DB 홈페이지와 사회연대경제 통합 플랫폼의 구축·운영의 중복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간 기능 및 데이터 연계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19.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3131-301)

- 행정안전부는 내역사업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조성’과 관련하여 사전 행정절차 이행상황과 향후 사업 추진일정을 사전에 면밀히 점검한 후, 사업의 단계에 맞추어 집행가능한 금액만 교부하는 등 집행관리를 보다 강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겠음.

20. 자원봉사활성화지원(제주)(1131-304) 및 자원봉사활성화지원(1141-302)

- 행정안전부는 내역사업 ‘전국 통합 자원봉사 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과 관련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 수준은 유지하되 사고의 유형·정도에 따라 보장범위를 달리하거나 중복 보장 방지, 도덕적 해이 예방 및 사전교육 강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자원봉사자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행정안전부는 세부사업 ‘자원봉사활동지원(제주)’ 사업과 ‘자원봉사활성화지원’ 사업의 효율적 집행과 내역사업 간 회계 계정의 일원화를 위하여 향후 예산 편성 시 해당 사업이 지역지원계정으로 통합·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당국과 적극 협의할 필요가 있음.

21. 지역발전 활성화(1231-303)

- 내역사업인 ‘온천산업활성화’의 경우 온천제도 운영을 위하여 편성된 2,500백만원의 예산이 편성 목적과 달리 내역변경 없이 연례적으로 균형발전지원국 내 일반수용비, 임차료 등의 관서운영경비로 사용되었으므로, 행정안전부는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22. 지자체 빈집정비 지원(1232-300)

- 지자체 빈집정비 지원 사업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전액 반납하거나 전액 이월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총 21억 3,700만원 상당의 이월 및 반납이 발생한 만큼, 행정안전부는 추후 동 사업과 유사한 사업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별 사업 추진 여건 및 집행 가능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23.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1349-306)

-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국비지원액이 당초 계획과 달리 인구감소지역 및 수도권은 각각 36.1%, 28.4% 미달하였고, 불교부단체 및 비수도권은 각각 69.4%, 25.9% 초과하는 등 계획 대비 차이를 보였으므로, 각 자치단체 유형별로 국비배분액이 당초 계획과 차이가 발생한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인구감소지역에 국비가 원활하게 계획대로 배분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4. 지방세정보화 추진 (1333-500)

- 행정안전부는 위탁사업자에게 교부한 사업비가 사업지연으로 인해 장기간 집행되지 못한 경우 「국가재정법」상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취지에 맞게 위탁사업자가 사업비를 장기간 관리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업관리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25. 지역경제활성화(1349-301)

-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의 내역사업인 ‘지방규제개혁 추진’ 사업과 ‘지방규제 개혁 공론화과정 지원’ 사업은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지침」에도 불구하고 지방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 관련 예산액 1억 4,300만원 중 7,600만원이 불용되고, 상위 실행계획의 미수립을 이유로 연구용역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 연구용역비 5,0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러한 예산 집행은 재정 운용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행정안전부는 집행 관리를 철저하게 하여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26. 민생회복소비쿠폰(1350-301)

- ‘민생회복소비쿠폰’ 사업은 사업에 대한 다각도 검토 없이 사업을 시급히 추진하는 것에 집중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시스템 구축 예산을 전용·불용하고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연구용역비 예산 편성으로 해당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을 초래하였는데, 이는 재정 운용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사전 검증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행정안전부가 현금 지원성 사업을 추진할 때 마다, 관행적으로 과거의 예산 편성 방식을 답습하여 지원금 지급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예산의 전용 및 불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유사한 지적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경제성 분석에 치중된 연구용역 집행 관행을 개선하고 정책 전반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환류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행정안전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교부한 국고 보조금이 2026회계연도 내 반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보조금 반납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27.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3131-303)

- 행정안전부는 향후 다년도 사업 종료시 단계적인 일몰 계획을 예산 당국과 사전에 협의하여 사업을 종료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행정안전부는 사업 종료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기존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신규 사업을 마련하고 추가적인 연구용역의 필요성 여부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28. 인건비(청사)(7002-104)

- 정부청사관리본부 내 방호직 공무원의 경우 근속승진으로 인해 현재 7·8급의 현원이 정원보다 과도하고, 9급 정원이 현원보다 많아 정·현원의 괴리가 크며, 이로 인해 2025회계연도 33억원의 예산을 이용 및 내역변경하는 등 반복적인 예산 이·전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행정안전부는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원 및 예산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29. 제주4·3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2431-303)

- 터파기 공사 중 연약지반 보강, 공동수급체 법정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인해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의 집행부진이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추가적인 지연 없이 잔여 과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30. 제주4·3 피해보상(보상금 등)(2431-306)

- 제주4·3사건 피해보상금의 연례적인 집행부진 및 타 사업으로의 과도한 이·전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적정예산 편성 및 보상금 지급 업무 처리 활성화를 통한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31. 대일항쟁기강제동원조사지원 및 운영(2432-300)

- 2027년 제출한 신규 성과지표가 잘 정착되도록 관리하는 한편, 전년도 실적과 효율적 예산 투입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목표 등을 감안한 합리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국민 요구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32. 민주화운동기념사업지원(2435-300)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사업의 경우 자료증빙의 어려움, 타지역 거주자에 대한 조사기간 과다소요 등으로 보상금의 지급 지연과 집행부진이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보상금 지급 및 심의 업무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추가적인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한편, 유사 보상금 지급 사업의 예산편성 시 연도별 지급 가능 금액을 면밀히 추계하여 과도한 이·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5·18 기록보존소 확충 사업의 경우 사업추진 과정에서 공사 사업부지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 수정과 총사업비 협의 진행 등으로 인해 사업지연이 발생하였고, 총사업비도 기존보다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으므로, 향후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추가적인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한편, 철저한 예비조사를 통해 예기치 못한 계획변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33. 재난안전사업평가(2631-304)

- 내역사업 ‘재난안전시스템 연구’는 총 18개의 연구용역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내 집행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10월 이후에 7개 과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 1억 6,500만원의 이월액을 발생시켰으므로, 행정안전부는 향후 연구용역 과제의 발주 및 계약 시기를 감안하여 연내 집행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 수행 계획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음.

34. 국민안전의식선진화(2632-301)

- 행정안전부는 내역사업 ‘안전교육 체계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콘텐츠를 제작·발굴하여 국민안전교육플랫폼에 등록하고 있는데, 등록된 콘텐츠의 92%에 해당하는 161개 콘텐츠의 조회 수가 500회 미만으로 나타나는 등 국민안전교육플랫폼에 등록된 안전교육 콘텐츠에 대한 국민의 이용도가 낮은 것으로 보이는 바, 행정안전부는 국민안전교육플랫폼을 고도화하거나 동 사업을 통해 개발된 안전교육 콘텐츠에 대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여 활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사업 결과 확산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

35. 승강기안전관리개선(2632-306)

- 내역사업 ‘승강기 안전이용 홍보’는 편성된 예산 2억 4,000만원 중 1,000만원만 집행하고 95.8%인 2억 3,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는데, 행정안전부는 동 사업의 추진 일정과 관련하여 명확한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사업 추진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36. 지진대비인프라 구축(2731-307)

- 내역사업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는 2025년 보조사업자인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1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집행률이 70%에 미치지 못하면서 전체 실집행률이 57.9%로 저조한데, 현재 사업 구조 하에서는 국민의 시설물 지진 안전성 확인이라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는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37. 침수우려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2733-310)

- 내역사업 ‘시스템 구축 지원’은 2025년 총 67개소의 하상도로 진입 자동차단 시스템 구축을 위해 국비를 보조하는 내용인데, 집중호우가 나타나는 7~8월 이전에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사업 개소는 18개소에 불과하였으므로,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 시기 이전에 각 사업 개소별로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어 동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음.

38. 재난대책비(보조)(2734-300)

- 내역사업 ‘재난대책비 지원’은 당해연도 발생한 재난 피해 복구를 위한 재난대책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024년 약 537억원, 2025년 약 479억원 규모의 이·전용을 통해 부족 재원을 확보하는 등 대규모 이·전용을 반복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는 당해연도 발생한 재난에 대한 국비 지원은 당해연도의 본예산 또는 예비비 등을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대규모 이·전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은 2025년 실집행률이 68.4%로 나타났는데, 재해복구사업의 절대 공기 확보의 필요성을 감안하더라도 실집행이 연례적으로 3회계연도에 걸쳐 재이월되거나 대규모 공사와 무관한 재난지원금/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이 이월되는 등 피해 복구가 지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행정안전부는 피해 복구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지원 유형별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보조금 교부 및 집행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39. 민방위교육훈련 및 시설장비확충(2634-304)

- 내역사업 ‘민방위시설장비확충’ 중 ‘접경지역 대피시설 확충’ 사업은 2025년 실집행률이 39.6%에 불과하는 등 매년 사업의 실집행 부진이 반복되고 있는데, 해당 사업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집행 지연 요소들을 파악하고, 집행 부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함으로써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40. 산불지역 마을단위 복구·재생(2635-302)

- 행정안전부는 2025년 추가경정예산으로 확정된 100억원의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했으나 ‘산불지역 마을단위 복구·재생’ 사업의 실집행률은 14.9%에 불과하였으므로, 2026년 본예산에 동 사업 예산이 120억원 편성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실집행 부진이 반복되고 신속한 복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보조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총괄】

1. 대규모 예비비 집행 사업 전반의 과다 추계 및 사후관리 개선 필요

- 2025회계연도는 제21대 대통령선거(궐위선거) 실시로 세출 본예산(3,634억원)의 1.3배가 넘는 4,804억원의 예비비가 집행된 이례적인 회계연도로, 국회의 사전심의없이 집행된 예비비의 비중이 매우 큰 만큼 결산 단계의 검증이 더욱 철저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예비비가 배정된 10개 세부사업에서 총 272억원의 불용이 발생하였고 이는 위원회 전체 불용액의 96.2%에 해당하는바, 궐위선거의 불확실성을 감안하더라도 개별 사업의 불용률이 최대 97%에 이르는 등 예비비 신청 단계의 소요 추계가 정밀하지 못하였으므로, 과거 집행 실적자료, 선거 유형별 특성, 선거 발생 계기 등을 기반으로 향후 예비비 신청 시 면밀한 예산추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대규모 예비비가 투입된 사업에 대해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과 세부 집행내역을 별도로 제시하는 등 국회의 결산심사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 제출 양식과 보고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인건비 부족재원 충당을 위한 이·전용 관행 개선 및 적정 인건비 예산 편성 필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건비 예산 부족으로 20개 이상의 세부사업에서 예산을 이·전용하였고 최종적으로 불용이 발생하였는바, 인건비 소요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통해 연례적인 연말 인건비 이·전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적정 예산 편성을 위해 재정 당국과 긴밀한 협조를 노력할 필요가 있음.

3. 국외출장 관리의 적정성 제고 필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국외출장 시 배우자 동행의 필요성을 상대국 또는 방문기관의 별도 초청 여부, 공식일정에서의 역할 등을 바탕으로 사전에 검토하고, 관련 일정과 내용을 출장 결과보고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명확히 기재·공개할 필요가 있음.

- 위원장·위원·직원 국외출장에서 출장 목적과 방문기관·일정 간의 정합성이 미흡한 사례가 확인되었는바, 국외출장 심사 시 방문기관의 사전 확정 여부와 목적 부합성을 실질적으로 심사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위원 국외출장은 잔여 임기와 출장 성과의 기관 환류 가능성을 고려하고, 다수 위원이 단기간에 유사한 목적으로 연이어 출장을 실시하지 않도록 시기와 인원을 조정하는 등 운영의 적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세입결산】

4.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임의채납된 국가선거보전비용 및 기탁금 미반환액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징수(재)위탁하고 시효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수납률 제고를 위한 활동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세출결산】

5. 대통령선거관리(1131-300)

- 제21대 대통령선거(궐위선거) 관리경비 2,900억원 전액이 국회의 사전 심의 없이 예비비로 집행되었고 그중 206억원이 불용되었는바, 실제 집행 소요 추계를 예비비 신청 단계에서 정밀화할 필요가 있음.
- 예비비 배정 약 6주 만에 12억원 규모의 임차료 세목조정이 이루어졌음에도 조정액의 73%가 불용되었는바, 세목조정 단계의 소요 산정도 정밀화할 필요가 있음.
- 선거공보 발송에 279억원이 집행되었으나 유권자의 실제 이용률이 낮다는 조사 결과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전자적 방식 병행 등 선거공보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반복적인 선거물품·용역의 대체업체와 시장 현황을 파악하여 경쟁 기반을 확대하고,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에 대한 장기적 의존이 고착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등 선거관리 핵심 물품의 예산 산출기준

에 대하여 선거가 있는 연도마다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투표용지 인쇄매수 산정기준과 같이 선거관리의 근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정식 의결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내부 의사결정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6. 재외선거관리(1131-305)

- 재외선거관의 단신부임은 궐위선거의 단기 파견 구조상 예비비 신청 시점에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가족동반 기준의 여비·체재비가 편성되어 대규모 불용(재외선거 인력운영 불용률 52.2%)이 발생하였는바, 파견 여건을 반영한 소요 산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7. 위탁선거관리(1131-306)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단체에서 부담하는 위탁선거관리경비를 법률의 명시적 근거 없이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하고 있는 바, 위탁선거관리경비 운용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 노력을 다할 필요가 있음.

8. 선거보전금(1131-307)

- 선거비용 보전금과 점자형 선거공보 등 작성비용 보전(부담비용)이 하나의 지출결의로 합산 일괄지급되고 있는바, 성격이 다른 두 비용의 회계 구분이 명확히 관리되도록 지급·정산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9. 선거장비및물품관리(1131-309)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물품 보관·관리 용역의 시·도별 개별계약 구조에서 특정 업체에 다수 지역이 집중되고 있는바, 통합계약 방식과의 비교 검토를 통해 계약 구조의 효율성과 경쟁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10. 교육및연구기반조성(1133-331)

- 2025년 11월 독일 국외출장에서 선거 인력·물품 부족으로 인한 투표소 혼란 사례(2021년 베를린)를 명시적 연구주제로 조사하고도, 불과 6개월여 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동일 유형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였는바, 국외출장·연구 성과가 실제 선거관리에 환류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11. 인터넷심의기반조성(1135-313)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반복·유사 신청의 처리 절차를 효율화하여 중대한 불공정 보도에 심의 역량을 집중하고, 재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위원회의 개최 경비가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회의별로 서로 다른 세부사업에서 수당이 집행되고 있는바,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정례 회의 경비를 본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12. 위원회기본경비(7111-25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격려금이 통상업무 수행이나 전 부서에 관행적으로 배분되지 않도록 지급요건과 심사절차를 객관화하고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과장 직위를 현행 법률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이에 부합하는 직책수행경비 지급단가를 적용하며, 구·시·군선관위 담당관의 직책수행경비 지급단가와 근거를 재검토하고 부적정하게 지급된 경비가 있는지 점검하는 등 직책수행경비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집행지침에 따른 특근매식비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는 한편,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적정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13. 선거정보및기록물관리(7132-344)

- 2025년 예산안 편성 시 필요예산이 과소 반영되어 일부 사업이 미추진되었고, 사업완료 시점도 2027년 이후로 지연되었으므로, 향후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미추진 과업을 완수할 수 있는 필요예산을 2027년 정부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조할 필요가 있음.

14. 청사관리(7132-35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청사관리 사업의 공공요금및제세 예산 부족이 연례적으로 반복되어 매년 타 세목·타 사업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으므로, 실제 지출 소요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통해 적정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복지무요원 관리 내역사업의 경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배정소요가 충족되지 못해 편성예산의 미집행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예산편성 시 배정소요와 함께 실제 배정되는 인원 수, 평균 충원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1. 총괄 검토

-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가 2026년 2월 26일 출범하였으나 위원회 구성 지연 및 직원 임용 미완료 등으로 인해 신규 진실규명 접수사건의 본격적인 조사개시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조속히 직원 임용 등을 마무리 하여 진실규명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2. 진화위 운영(1031-300)

-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활동이 2025년 5월 26일 종료되어 현지조사를 위한 국내여비 집행소요가 감소하였으나, 예산은 전년 대비 크게 감액되지 않아 75% 이상이 미집행되었으므로, 향후 예산편성 시 당해 소요 금액을 정확히 추산하여 적정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종료 및 사무실 임대차계약 만료로 인해 원상 복구비 지출이 필요해졌으나, 해당 금액을 공사계약이 아닌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행하였고, 임대인에게 지급된 금액은 원상복구가 아닌 제3기 위원회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사용되어 본래 편성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졌으므로,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3. 진화위 인건비(7001-150)

- 제2기 위원회의 활동이 2025년 11월 26일 종료되어 직원들이 11개월을 근무하였으나, 12개월분으로 편성한 예산이 대부분 집행된 점을 볼 때, 적정 인건비 예산이 편성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인건비 예산요구 시 적정 인건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4. 진화위 기본경비(7002-250)

- 우수직원 등에 대한 포상금을 기타운영비, 포상금 등 서로 다른 두 비목에서 집행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이므로, 향후 포상금 등은 포상금 비목에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예산편성목적에 부합하는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인사혁신처 소관】

【일반회계】

1.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 인사혁신처는 교육훈련비 환수·반납채권의 미수납 증가에 대응하여 장기 미납 교육훈련비에 대한 강제징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채권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교육훈련비 환수율을 제고하고 공무원 교육훈련의 책임성 확보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2. 인건비(본부)(7001-100)

- 인사혁신처는 예산을 편성하는 주무 부처와 보다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예상되는 인건비 소요 증가분을 예산에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안정적인 인건비 예산 운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3. 국가시험시행(1631-300)

- 인사혁신처는 PSAT 도입 확대의 실질적 수요 검증 및 중장기 재정추계 미흡, 구직자의 다중 수험 부담 우려 등을 감안하여 사업 타당성을 우선 확보하고, PSAT의 직무수행평가 대체 한계와 공공기관 채용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 정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운영(2044-305)

- 인사혁신처는 퇴직예정공무원과 퇴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지원사업 간 기능과 역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원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5. 국가 인재개발 지능형 오픈 플랫폼 운영(정보화)(1732-301)

- 인사혁신처는 국가인재개발지능형오픈플랫폼과 나라배움터 간 기능·이용대상 및 시스템 연계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중·장기적인 이용대상 확대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학습콘텐츠 및 학습이력의 연계·활용을 강화하는 등 양 플랫폼의 상호 보완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공무원연금기금】

6. 건물대여료(11-51-512)

- 공무원연금공단은 임대주택의 입주·재계약·퇴거 현황과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주택임대보증금 수입 및 반환 규모에 대한 추계의 정확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음.

7. 공무원연금정보화경비(정보화)(3576-207)

- 공무원연금공단은 맞춤형복지시스템 재구축 사업의 추진 지연 원인을 점검하고, 기존 BPR/ISP 결과가 사장되지 않도록 재원확보와 사업 우선순위를 고려한 단계별 구축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재구축 전까지 현행 시스템의 장애·보안 위험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8. 공무원연금대부(용자)(3142-322)

- 공무원연금공단은 연금대부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규모를 확대하고, 유사기관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1인당 대부 한도의 조정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9. 은퇴지원교육 수입대체경비(3162-650)

- 공무원연금공단은 향후 예산편성 시 수입과 지출 규모를 보다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한편, 재정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수입대체경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예산편성과 사업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10. 주택사업관리(3151-333)

- 공무원연금공단은 퇴거 예정 세대, 신규 입주 수요 및 임대보증금 반환 규모 등에 대한 예측의 정확성을 높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경찰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1. 과태료 미수납액 증가 및 수납률 정체에 따른 개선 필요

- 경찰청 세입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과태료의 수납률이 최근 지속적으로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미수납액 또한 증가 추세에 있는바, 체납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과 함께 징수 및 체납관리 체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건물대여료 납부 관리 체계 강화 필요

- 경찰청은 「국유재산법」에 따른 행정재산 사용료 선납 원칙이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건물대여료의 납부 관리 체계를 보다 철저히 운영할 필요가 있음.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경찰병원)】

3. 전년도세계잉여금(89-893)

- 전년도세계잉여금은 최근 결산에서 예산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지속적으로 초과하고 있으며, 특히 2025년에는 수납률이 325.4%에 달하는 등 예산액과 실제 수납액 간 괴리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 경찰병원은 의료대란 등에 따른 인건비 불용액 증가를 주요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전년도세계잉여금의 과소 편성은 이미 2021회계연도 결산에서도 지적된 사항으로 최근에도 반복되고 있는바, 과거 결산 실적과 불용액 발생 추이 등을 반영하여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세입예산 편성·관리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일반회계 세출결산】

4. 대규모 계약사업의 사업일정 및 위험관리 강화 필요

- 경찰청의 사고이월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일부 대규모 계약사업의 집행 지연으로 사고이월 금액은 전년 대비 약 1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최근 사고이월이 일부 대규모 사업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5. 치안활동지원(7131-311)

- 2025년 경찰관서 임시청사 임차 예산 345억원 중 317억원을 집행하여 12개 경찰서 임시청사를 운영하였는데, 청사 건축의 지연으로 임시청사를 임차한 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연장되어 임차 비용이 증가 또는 증가가 예상되는 사례가 12개 중 10개로 다수이고, 서울 소재 경찰서의 임시청사 월차임은 1억 6천만원에서 4억 7천만원으로 장기간 임차할 경우 신축 비용과 비교하여 적지 않으며, 향후에도 서울 등 대도시에는 현부지 재건축 방식을 통한 경찰서 재건축이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청사 건축의 지연에 따라 임시청사 임차기간이 당초 계획과 비교하여 과도하게 연장되지 않도록 하는 등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6. 감사·감찰·인권 활동(7133-311)

- 경찰청은 일부 포상금을 법령상 근거 없이 내부 규정에 따라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보전금에 해당하는 포상금의 지급 근거 및 한도를 법령에 규정하도록 한 예산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포상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7. 장비관리유지(4231-314)

- 경찰청은 2025년 상반기 전자충격기를 해외업체 제품인 테이저7 모델로 교체할 계획을 세웠으나, 관련 소송에 따른 조달청의 구매절차 중단 및 재개, 경찰청과 소송을 진행한 국내 업체의 입찰 참여 의사 표시에 따른 구매방식 변경 및 이에 따른 기술평가방식 변경 등에 따라 2025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예산을 이월하였음. 향후에는 사업 초기부터 역량을 갖춘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합한 계약 방식 등을 미리 정하여 사업이 연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2025년 전시비축물자 사업에서 개인화기, 공용화기, 방독면은 예산 편성 시 당초 계획한 수량보다 적은 수량을 구매했는데,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도 예산 편성 시 계획한 수량보다 적은 수량의 물자를 도입한 사례가 있으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개인화기와 공용화기의 예산액 및 산출내역은 동일하게 편성되고 있음. 동 사업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예산의 산출내역을 작성할 때 실제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가능한 한 정확히 산정하고,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예산 편성 당시 계획한 물자의 수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8. 범죄대응및치안상황관리(1132-311)

- 당초 비통신형 바디캠 구매를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통신형 바디캠 및 영상관리시스템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사업기간·총사업비·계약방식 및 예산집행 방식까지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향후 신규사업의 예산 편성 단계에서 사업방식 및 대안별 비용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계획과 예산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감리 용역계약은 감리비 확보를 위한 예산 전용 절차가 완료되기 이전에 체결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향후에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예산 전용 등 추가적인 예산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련 예산조치를 우선 완료하여 배정된 예산을 확보한 후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를 추진함으로써 「국고금관리법」상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및 계약 집행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9. 교통안전활동(1331-312)

- 2025년 교통안전활동의 특정업무경비인 예산 172억 300만원을 외근 및 내근을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게 지급하고, 경찰공무원의 휴직 등 결원 발생에 따른 잔여 예산을 활용하여 외근에 해당하는 체납과태료 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에게 20만원씩 지급했는데, 내근을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은 특정업무경비를 지급받는 반면 내근을 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특정업무경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보이고, 특정업무경비는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라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에는 정액 지급과 실비 지급 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0. 사이버수사역량강화(1231-315)

- 사이버·포렌식 수사 지원활동 사업은 추경 증액 사업에서 상당 규모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추경 편성 시 실제 소요액 및 예산낙찰률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여 실소요에 기반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11. 사이버수사역량강화(1231-315), 사이버수사시스템구축(정보화)(1232-513)

- 사이버수사역량강화(1231-315), 사이버수사시스템구축(정보화)(1232-513)의 2025년 성과지표인 사이버범죄 검거건수의 목표는 155,253건으로 설정되었는데 2025년 204,903건의 사이버범죄를 검거하여 성과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2025년 사이버범죄 발생건수는 361,577건이고, 검거율은 56.7%로 2024년 총범죄 검거율 77.2%와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이버수사역량강화 및 사이버수사시스템구축(정보화) 사업의 성과지표 목표치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사이버범죄의 검거율은 그 유형별로 정보통신망침해범죄 26.5%(4,765건 발생, 1,265건 검거), 정보통신망이용범죄 55.2%(329,099건 발생, 181,536건 검거), 불법콘텐츠범죄 79.8%(27,713건 발생, 22,102건 검거) 등으로 차이가

있고, 해당 검거율 차이가 2014년 이후 10년 이상 지속되어 왔음. 검거율이 79.8%인 불법컨텐츠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내내역사업 수가 검거율이 26.5%인 정보통신망침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내내역사업 수보다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검거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이버범죄의 대응 역량 강화 방안 및 예산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2. 경찰인재개발(4132-311)

- 2025년 경찰인재개발 사업의 직무교육과정에서는 2025년 교육인원을 14,895명으로 계획했으나 실제 수료 인원은 9,948명으로 계획인원 대비 수료 인원 비율이 66.7% 수준으로 낮았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급식비 집행률이 60%대로 저조한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교육 수요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여 급식비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소방청 소관】

1. 정책우수지역본부 지원(1131-303)

- 「정책우수지역본부 지원」사업은 19개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1년 간의 소방정책 추진실적을 점검·분석·평가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은 소방본부에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인데, 최근 평가 결과를 보면 각 시·도 간 점수가 전반적으로 상향 평준화되면서 미세한 점수 차이로 순위가 결정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 ‘자체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안내율’ 등 일부 지표는 모든 소방본부가 만점을 받는 등 변별력이 떨어지는 지표가 존재하며, 평가 결과가 미흡한 소방본부에 대한 컨설팅 내용이 해당 시·도의 성과 향상을 위한 자체 노력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음.

향후 소방청은 평가 지표의 변별력을 높이고 평가 미흡 기관에 대해 구조적 진단을 바탕으로 예산·인력 확충 등 실질적인 개선수단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환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국립소방병원 건립(1131-305)

- 「국립소방병원 건립」사업은 소방공무원의 체계적 건강관리를 위한 종합병원을 충북 음성에 건립하는 사업임. 2020년 사업착수 이후 2025년 7월 준공되기까지 매년 예산현액의 약 20~ 50%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는데(연평균 이월액: 61억 7,200만원), 이는 당초 사업계획 대비 사업 일정이 지연된 데 주로 기인하는 바, 사업계획 단계에서 관련 위험요인과 추가 소요를 충분히 예측하지 못한 결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복적인 총사업비 조정(총 12회 조정)이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고 보임.

한편, 소방청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소방병원 건립 사업비를 66억 4,900만원 증액 편성(2025.7.4. 국회 의결)하였으나, 소방병원 준공(2025.7.3.) 이후 12억 1,400만원을 이용감액하고 23억 5,200만원을 불용하였음.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추가 재정수요가 발생한 경우 편성하는 예외적 재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추경 편성 직후 사업 종료 단계에서 추경 예산액 대비 53.5%에 이르는 대규모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추가 소요액 산정이 적정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보임.

향후 소방청은 대규모 시설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 및 소요 예산 추계의 정확성

을 높이고, 적정한 예산 비목 편성·집행을 통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국가 자산 관리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3. 전국 소방헬기 통합관리 운영 지원(1132-312)

- 「전국 소방헬기 통합관리 운영 지원」사업의 내역 사업인 ‘119항공정비실 건립사업’은 전국의 소방헬기를 한 곳에서 정비하기 위하여 119항공정비실을 건립하는 사업인데, 2025년도의 예산 집행률이 34.6%에 불과함(46억 1,300만원 집행, 87억 700만원 이월). 이는 부지 계약 지연, 연약지반 보강 공사 추가 및 법정 의무시설인 신재생에너지설비 시설의 실시설계단계 반영 등 총사업비 조정이 필요하였기 때문임.

한편, 2027년 7월에 준공 예정인 119항공정비실의 정상 가동을 위해서는 전문 정비인력의 적기 충원, 지자체 소유 헬기 정비를 위한 「항공안전법」 개정 및 정비조직인증 취득, 중앙 - 지방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향후 소방청은 공사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일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준공 시점에 맞춰 인력 확충 및 관련 법제도 정비를 적기에 추진함으로써 통합정비 체계가 계획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4. 119빅데이터 분석·운영(1133-311)

- 소방청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책 수립 및 현장 대응 지원을 위해 ‘119빅데이터 분석·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25년도에는 예산현액 21억 9,200만원 중 21억 8,100만원을 집행하였음. 그러나, 2022년 이후 분석 과제당 평균 활용 횟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2022년 9.6회 → 2024년 3.5회) 분석결과 활용도가 저하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 일부 과제는 새로운 정책 수요 발굴보다는 기존 정책의 효과를 재확인하는 등 현장 활용에 한계가 있었음.

향후, 소방청은 현행 119빅데이터 분석 사업에 대해 과제 선정 기준, 활용성과 관리체계 및 정책 환류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기존 정책의 효과 검증에 그치는 과제보다는 새로운 정책 수요 발굴, 위험 예측, 자원 배분 최적화 등 빅데이터 분석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과제가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5. 소방행정 정보화(정보화)(1150-506)

- 「소방행정 정보화」 사업의 내역사업인 ‘소방예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특정 소방대상물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소방 관련 정보를 통합 구축·관리하는 사업임. 소방청은 2025년에 소방예방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 과정에서 감리비, 조달수수료, 심의 수당 등 필수 부대경비를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않아 타 세부사업 예산을 전용하거나 다른 세부사업의 예산을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용하였음.

한편, 2025년 고도화 사업을 통해 소방민원 31종을 온라인으로 전환하였으나, 2026년(1-5월)의 월평균 온라인 민원 증가율(18.3%)은 예년 평균 증가 추세(13.7%)와 비교할 때 아직까지는 해당 사업이 가져온 실질적 행정서비스 개선 효과를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향후, 소방청은 정보화 사업 추진 시 필수 부대경비를 예산 편성 시에 반영하고 예산 집행의 절차를 준수하며, 온라인 민원 전환율 및 처리 실적에 대한 성과 분석을 통해 이를 소방예방정보시스템 고도화 시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6. 119구급 현장대응 스마트시스템 구축(1150-511)

- 「119구급 현장대응 스마트시스템 구축」 사업은 노후화되고 분산된 119구급활동 시스템을 정부 주도의 G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고도화하고 구급활동 업무 프로세스 표준화 및 통합 관리를 위한 사업(2022~2026)인데, 그 중 2025년도 사업은 주 서버가 위치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 발생으로 사업 완료 시점이 2026년 1월에서 2026년 7월로 연기되면서 2025년도 예산의 10.0%(1억 5,600만원)만 집행되었음. 한편,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효과적으로 이송하고자 개발한 ‘이송병원 선정기능’의 의료기관 응답률이 48.0%에 불과하여 현장 활용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향후 소방청은 이월된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후속 고도화 사업과의 연계 일정을 철저히 관리하여 사업의 연쇄 지연을 방지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응급의료체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7. 중앙119특수구조대 지원(1171-301)

- 소방청은 2025년에 22억원 추경 편성을 통해 ‘소방헬기 배면물탱크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동 사업예산은 환율 상승에 따른 입찰금액 초과로 전액 이월되었음(집행률 0.0%).

향후, 소방청은 대형 재난 대응과 직결되는 장비 보강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뿐만 아니라 환율 변동, 공급시장 구조 등 사업 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요인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한 관리방안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가항만 소방선박 통합운영’ 내역사업은 총사업비 증액, 공정 차질, 타선 소화설비 등 성능 미달로 인도가 지연되면서 123억 3,200만원(이월률 57.6%)이 2026년으로 이월되었으며, 이에 연동된 ‘소방정대 운영’ 내역사업 역시 선박 미인도로 정상 운영이 불가능해져 당초 예산(17억 3,800만원) 대비 집행률이 23.0%에 그쳤음.

향후, 소방청은 유사 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업비를 면밀히 검토하고 주요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관리 및 제작 공정 관리를 강화하여 사업이 적기에 완료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V. 대체토론의 요지

1. 행정안전부 소관

○ 기획조정실 사업과 관련하여,

- 행정안전부는 비공무원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로 인하여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고용부담금 마련을 위하여 예산을 반복적으로 이전용하고 있음. 비공무원 장애인 채용 확대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과 관련하여,

- 누락되는 국민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한 국민이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신청 및 사용방법·절차 등에 관한 정보접근성이 낮은 계층에 대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사업 관련하여,

- 성과지표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관리 인식도’를 설정하였으나 실제 달성정도는 목표치에 미달하였는데, 성과보고서에 그 이유로 위원회의 노력과 별개로 부정선거 의혹 등 외부환경요인이 성과지표에 반영되었다고 설명하고 향후 선거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2026년 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실시간 투표율 오입력·임의조작 등 선거관리 부실로 인하여 선거 공정성에 대한 국민 불신이 증가한 것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개혁할 수 있는 적극적인 내부쇄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없 음

4. 인사혁신처 소관

○ 청년인턴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 전체 운영비 중 15% 이상이 불용되었는데 그 이유는 청년인턴에게 양질의 일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업무환경이 갖추어지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이며 청년인턴이 단순한 보조인력에 그치지 않고 청년인턴에게 실질적인 국정경험을 제공하고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5. 경찰청 소관

○ 청년인턴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 반복적으로 불용이 발생하고 있는 바 그 이유는 청년인턴에게 양질의 일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업무환경이 갖추어지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이며 청년인턴이 단순한 보조인력에 그치지 않고 청년인턴에게 실질적인 국정경험을 제공하고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6. 소방청 소관

○ 청년인턴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 반복적으로 불용이 발생하고 있는 바 그 이유는 청년인턴에게 양질의 일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업무환경이 갖추어지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이며 청년인턴이 단순한 보조인력에 그치지 않고 청년인턴

에게 실질적인 국정경험을 제공하고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VI.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1. 행정안전부 소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별첨과 같이 시정요구사항 20건을 첨부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별첨과 같이 시정요구사항 7건, 부대
의견 1건을 첨부

3.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별첨과 같이 시정요구사항 4건을 첨부

4. 인사혁신처 소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별첨과 같이 시정요구사항 7건, 부대
의견 1건을 첨부

5. 경찰청 소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별첨과 같이 시정요구사항 13건, 부대
의견 1건을 첨부

6. 소방청 소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별첨과 같이 시정요구사항 10건, 부대
의견 1건을 첨부

VII. 찬반토론의 요지

1. 행정안전부 소관

없 음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없 음

3.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없 음

4. 인사혁신처 소관

없 음

5. 경찰청 소관

없 음

6. 소방청 소관

없 음

VIII. 심사결과

1. 행정안전부 소관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원안 의결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의결

3.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원안 의결

4. 인사혁신처 소관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의결

5. 경찰청 소관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의결

6. 소방청 소관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의결

IX.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 사항 없음

X.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별첨>

2025회계연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2026. 9.

행 정 안 전 위 원 회

<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 결과 요약 >

소 관	세입·세출결산
행정안전부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원안의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의결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원안의결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원안의결
인사혁신처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의결
경찰청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의결
소방청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의결

1.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결과 : 총 70건(결산·예비비 합계)

(단위: 건)

부 처 명	변 상	징 계	시 정	주 의	제도개선	(중복)	합 계
행정안전부	-	-	-	2	20	-	2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2	5	7	-	14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	-	-	4	-	-	4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	-	-	-	-	-	-
인사혁신처	-	-	-	1	6	-	7
경찰청	-	-	-	1	12	-	13
소방청	-	-	-	2	8	-	10
합계	-	-	2	15	53	-	70

2. 시정요구사항(결산)

가. 행정안전부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장애인 고용 확대 및 개선계획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기획조정실(7011-254)	제도개선	행정안전부
		지적사항	○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근로자 등 비공무원 장애인고용률이 의무고용률에 미달하여(2024년 2.71%) 부담금 납부를 위해 기존 사업 예산을 이·전용하고 있으며,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와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를 위한 세목조정에 대해 그동안 결산 심사에서 지적을 받아왔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근로자 등 직군의 장애인 고용 확대 계획과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 발굴,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개선 계획을 수립할 것		
2	AI·정보화 사업의 예산 편성 및 집행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전자문서소통시스템(정보화)(1932-501)	제도개선	행정안전부
		지적사항	○ 해당 사업은 계약 당시부터 사업기간이 다음 연도까지로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연도별 집행계획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여 이월이 발생하였고, 유사 정보화 사업에서도 이월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향후 AI·정보화 사업 추진 시 사업기간 및 연도별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한 사전 검토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행정안전부는 향후 AI·정보화 사업 추진 시 사업규모와 소요예산을 적정하게 산정하고, 계약기간 및 연도 내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도한 낙찰차액에 따른 불용 및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사업관리를 강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	국민통합위원회 정책연구용역 연간 추진계획 및 집행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민통합위원회(1145-300)	제도개선	행정안전부
		지적사항	○ 국민통합위원회의 정책연구비는 예산 현액 4억원 중 2억 4,4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5,600만원을 불용하여 집행률이 61.0%에 그쳤으며, 정책연구용역 추진 건수는 2023년 14건, 2024년 10건에서 2025년 5건으로 감소하였음 ○ 사회갈등 분석, 국민통합 지표·제도 연구 등은 정책환경 변화와 관계없이 상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연구주제임에도, 2025년 정책연구용역 5건이 모두 9월 이후에 착수된 점을 고려하면 연간 연구계획 수립 및 발주 일정관리 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 국민통합위원회는 기초·상시 연구와 신규 정책연구를 구분한 연간 연구계획을 수립하고, 과제 선정·심의·발주를 조기에 추진하여 집행부진과 연말 집중 발주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을 관리할 것		
4	지방소멸 대응기금 장기 미집행 사업 집중 관리 및 실제 소요액에 근거한 운영경비 지급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1261-300)	제도개선	행정안전부
		지적사항	○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은 사전 행정절차 지연으로 사업 절차가 순연되어 2025년 말 기준 지자체에 배분된 지방소멸대응기금 3조 5,379억원 중 사용되지 않은 재원이 9,507억원을 초과하고, 미집행으로 발생한 이자수입이 84억원을 초과함 ○ 기금 운영경비와 관련하여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지방공무원을 파견하는 경우 실제 인건비 지출액이나 남은 금액을 확인·정산하는 절차 없이 파견공무원 소속 지자체에 1인당 연 1억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장기 미집행 사업을 집중 관리하여 집행을 촉진하고, 파견공무원 인건비 등 운영경비는 실제 소요액을 기준으로 지급·정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성과관리 및 집행관리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1261-300)	제도개선	행정안전부
		지적사항	○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자펀드 결성과 투자 집행이 지연되어 모펀드 재원이 실제 사업에 투자되지 않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유보·미집행되고 있어 결산상 집행실적과 국민이 체감하는 실제 투자 사이의 간극이 큼 - 2024년~2025년 2년간 지방소멸대응기금 중 총 2,000억원이 모펀드 조성에 투입되었으나,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모펀드 조성액 중 실제로 자펀드로 출자된 금액은 212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1,788억원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유보되어 있음		
		시정요구사항	○ 행정안전부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의 성과관리 시 모펀드 조성액과 실제 지역사업 투자액을 구분하여 관리·공개하고, 장기간 투자되지 않는 재원이 적기에 지역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 체계를 개선할 것		
6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조성 사업 집행관리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조성(3131-301)	제도개선	행정안전부
		지적사항	○ 국비 교부액 중 실집행액은 18억 200만원으로 실집행률은 60.8%에 그쳤으며, 일부 지역의 실집행률은 10% 미만으로 저조함 - 사업 특성상 사업 추진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와 실제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점검하지 않은 채 국비를 교부하여 실집행률이 저조함		
		시정요구사항	○ 행정안전부는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조성 사업의 보조금 교부 전 사전 행정절차 이행 상황과 사업추진 일정을 점검하고 사업단계별로 실제 집행 가능한 금액만 교부하도록 집행관리 체계를 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	인구감소관심 지역에 대한 지역사랑상품권 추가지원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1349-306)	제도개선	행정안전부
		지적사항	○ 정부는 자치단체 유형별로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 구분하여 국비지원율을 차등화하고 있는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인구감소지역 전 단계로 지방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음에도 이 사업에서 주로 비수도권으로 분류되어 추가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있어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비수도권보다 1%p 높은 6% 국비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8	지역사랑상품권 배분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1349-306)	제도개선	행정안전부
		지적사항	○ 정부는 제2회 추경예산 국비 집행 시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와 비수도권은 계획액보다 각각 75억 4,600만원, 818억 5,200만원 초과하였고, 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은 계획액보다 각각 342억 2,100만원, 551억 7,700만원 미달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유형별 국비 배분액이 당초 계획과 차이가 발생한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 등에 국비가 계획대로 원활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지원율 등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마련하는 한편, 추경 회차별·지자체별 교부액과 실제 지원율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9	사업계획 미흡에 따른 예산 전용·불용 방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민생회복 소비쿠폰(1350-301)	주의	행정안전부
		지적사항	○ 소비쿠폰 지급시스템 구축방식에 대한 사전 검토가 미흡하여 예산의 전용·불용이 발생하였고, 과거 현금 지원성 사업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된 점을 고려하여, 향후 사업 추진 시 민간 클라우드 활용 여부 등 구축방식과 예산 집행계획에 대한 사전 검토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같은 긴급재난지원 사업추진 시 예산 편성의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전용이나 이월·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증절차를 강화하는 등 주의할 것		
10	대규모 국고보조 사업의 지방비 부담구조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민생회복 소비쿠폰(1350-301)	제도개선	행정안전부
		지적사항	○ 해당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관계없이 서울과 비서울 지역으로만 구분하여 국고보조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지자체별 지방비 부담에 차이가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대규모 현금성 지원사업 추진 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과 실제 사업수요 등을 고려한 지방비 부담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같은 대규모 국고보조사업 추진 시 지방자치단체별 재정과 지원대상 규모 등 실제 사업수요를 반영하여 국고보조율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차등화하는 등 지방비 부담구조를 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1	현금성 지원사업 미수령자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성과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민생회복 소비쿠폰(1350-301)	제도개선	행정안전부
		지적사항	○ 해당 사업은 약 165만명이 소비쿠폰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미신청의 상당 부분이 신청 시기·방법 및 절차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하여, 향후 미수령자의 특성과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정보·이동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전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같은 대규모 현금성 지원사업 추진 시 미수령자의 특성 및 미수령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정책 접근성을 포함한 정책 전달체계 전반을 성과평가에 반영할 것		
12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실집행액의 정확한 기재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3131-303)	주의	행정안전부
		지적사항	○ 행정안전부 결산자료에는 167억 5,000만원을 실집행하고 27억 9,500만원을 불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행정안전부의 국고보조금 미수납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동 사업의 미수납액은 약 110억 5,000만원으로, 불용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실집행액은 해당 사업의 성과를 파악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이며 결산서 제출 이후에는 정부 제출 공개 자료로 확인할 방법이 없어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므로, 행정안전부는 재발 방지 약속과 함께 실집행액 정보 기재의 오류가 없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3	다년도사업 종료 시 국비지원 및 집행잔액관리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3131-303)	제도개선	행정안전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실집행률 부진 등을 이유로 2025년 사업이 종료되었는데, 신규 참여자 선발은 지원기간이 최소 2년임을 고려하여 2024년부터 중단하였으나, 대체채용을 계속함에 따라 이미 사업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6년까지 국비 지원을 계속하는 상황이 발생함		
		시정요구사항	○ 행정안전부는 향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과 같은 다년도사업 종료 시 단계적인 일몰계획을 예산 당국과 사전에 협의하고, 사업 종료 이후 추가 재정부담을 발생시키는 채용 등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동 사업의 이월액과 잔여 지원금을 최종 종료 시점까지 철저히 정산·관리할 것		
14	임시유해 안치시설 인건비 확충 및 단일 위령시설 조속 건립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운영(2431-300)	제도개선	행정안전부
		지적사항	○ 임시유해 안치시설의 공휴일 및 휴일 근무자가 없어 유가족 및 추모객의 이용에 불편함이 있고, 2010년 진실화해위원회가 권고한 단일 화해 위령시설 조성은 16년간 지연되고 있으며, 그간 발굴된 일부 유해 중 임시 안치시설에 안치되지 못한 유해도 있는 상황임		
		시정요구사항	○ 행정안전부는 유가족 및 추모객의 원활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임시유해 안치시설의 근무자 증원, 개관시간 확대, 관람안내 프로그램 제공 등에 필요한 제도·인프라 개선에 나서야 하고, 한국전쟁 전후 전국단위 위령시설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하며, 운영 시 충분한 인력과 예산·인프라가 투입되도록 하는 한편, 건립·운영 과정에서 유가족 등 피해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5	철저한 사업 관리를 통한 제주4·3평화 공원 사업 활성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제주4·3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2431-303)	제도개선	행정안전부
		지적사항	○ 터파기 공사 중 단단한 암반층 출현 및 연약지반 보강 필요성에 따른 추가작업과, 건축 시공사 공동수급체의 법정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사업지연이 발생하여 편성예산이 미집행되었는데, 공사업체의 재무상태 악화 가능성을 계약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할 수 없었는지 여부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을 것임		
		시정요구사항	○ 행정안전부는 잔여 과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현재 적격심사 기준의 보완가능성에 대한 점검 노력을 병행할 것		
16	제주4·3피해 보상금 적기 지급 위한 개선방안 모색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제주4·3피해보상(보상금 등)(2431-306)	제도개선	행정안전부
		지적사항	○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연속으로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재해복구비 등 타 사업으로 이·전용되었는데, 실제 집행가능 보상금 규모에 대한 예측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 2025년의 경우 신임위원 위촉이 늦어지며 보상심위분과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아 보상금 심사와 지급이 지연되면서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보상이 적시에 실행되지 못한 문제도 있음		
		시정요구사항	○ 행정안전부는 국가폭력 피해에 대한 배상·보상이 회계연도 중 타 사업의 부족재원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제주4·3보상금 예산을 연차별 지급계획에 부합하는 규모로 편성하고, 실집행기관과 협의하여 심사·지급절차를 개선하며, 사실조사·심의 인력을 확충하여 계획된 지급이 당해연도에 이루어지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7	5·18민주화운동 보상금 적기 지급 위한 개선방안 모색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민주화운동기념사업지원(2435-300)	제도개선	행정안전부
		지적사항	○ 행정안전부는 제1차부터 제7차까지 보상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어 연간 심사가 가능한 인원과 실제 지급 규모를 어느정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지자체가 제시한 조사완료 예상 인원을 그대로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한 결과 집행률이 43.4%에 그치는 집행부진이 발생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행정안전부는 국가폭력 피해에 대한 배상·보상이 회계연도 중 타 사업의 부족재원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5·18민주화운동 보상금 예산을 과거 보상금 심사·지급실적과 실제 사업 일정을 반영하여 집행 가능한 규모로 편성하고, 사실조사·심의 인력을 확충하여 계획된 지급이 당해연도에 이루어지도록 할 것		
18	5·18기록물 보존시설 확충 사업 차질 방지 노력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민주화운동기념사업지원(2435-300)	제도개선	행정안전부
		지적사항	○ 당초 사업계획 수립 당시 기록물 보존센터로 활용하려 했던 옛 국군광주병원 건물이 정밀 안전진단결과 D등급을 받아 건물 전체에 대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황임이 확인되었고, 이에 대체부지를 확보하여 보존센터 건물을 신규 건립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음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 협의 결과 총사업비가 당초 392억원에서 419억 1,000만원으로 증가하였고, 사업완료 예상 시점도 2028년으로 지연됨		
		시정요구사항	○ 행정안전부는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해 향후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한편,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 당시부터 철저한 예비조사를 진행하여 예기치 못한 계획변경 및 시설사업 집행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9	여순사건위원회 손실보상금 지급대상 확대 및 사건처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여수·순천 10·19위원회 지원(2437-300)	제도개선	행정안전부
		지적사항	○ 피해자 손실보상금으로 1억 3,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200만원만 집행하고 1억 1,400만원을 불용하였음 ○ 행정안전부는 2026년부터 조사관 인력을 7명으로 확대하였고, 위원회 임기 내 사건처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으나, 2026년 8월 10일 기준으로 사건처리율은 59%에 불과하여, 위원회 종료까지 잔여 사건(3,387건)이 모두 처리되지 못하거나 줄속으로 처리될 우려가 큼		
		시정요구사항	○ 행정안전부는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한 여순사건위원회 조사관 인력 증원 노력과 함께, 위원회 임기 연장 및 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 확대 방안 마련에 적극 협력할 것		
20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사업 계획 수립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침수우려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2733-310)	제도개선	행정안전부
		지적사항	○ 자동차단시설 시스템 구축 현황을 월별로 살펴보면, 집중호우가 나타나는 7~8월 이전에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사업개소 수는 전체 67개소 대비 약 27%인 18개소에 불과함		
		시정요구사항	○ 행정안전부는 자동차단시설 시스템을 상반기 내로 구축하여 인명 피해 예방이라는 사업 목적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및 지방자치단체의 집행 현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 효과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할 것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과태료 수납률 급락 원인규명 및 징수병목 구간 해소 대책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과태료(56-563)	제도개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적사항	○ 2025년 수납률은 39.2%에 그치고 미수납액은 1억 7,200만원으로, 2022년 이후 가장 저조한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음. 「공직선거법」 제261조제10항에 따라 일정 과태료는 해당 후보자의 기탁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기탁금 반환 이후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이를 공제할 기회를 상실하고 이후 자진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수납으로 이어질 수 있어, 과태료 부과 · 징수 시기와 기탁금 반환 절차 간 연계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거나 과태료 부과 절차가 진행 중인 후보자에 대하여, 예상 과태료 상당액의 기탁금 또는 선거비용 보전액 반환을 일시 보류 하거나 지급을 유예하는 방안 등 과태료 수납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2	국가선거비용 미반환액 수납률 제고노력 지속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제도개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적사항	○ 국가선거비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지원하는 만큼, 당선무효 등의 경우 반드시 환수할 필요가 있으나, 기타경상이전수입 미수납액은 최근 4년간 평균 12억 9,700 만원, 2025년에는 14억 6,200만원에 달하는 등 환수 실적이 저조한 편임		
		시정요구사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임의채납된 국가선거보전비용 및 기탁금 미반환액에 대하여 징수 채위탁 등 적극적인 징수조치를 통해 소멸시효 관리를 철저히 하고, 수납률 제고를 위해 정당별 미수납 상세내역과 채납잔액을 공개하는 등 행정적 · 제도적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위원 국외출장 관행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재외선거관리(1131-305)	주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적사항	○ 위원 출장 중 2건은 임기만료 약 4개월 전 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통상적으로 국외출장은 해외 제도·사례 조사, 관계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 출장 성과를 향후 기관 업무에 활용 및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임기만료를 앞둔 위원의 국외출장이 이러한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와 그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시정요구사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의 국외출장을 심사할 때 잔여 임기와 출장 성과의 기관 환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심사기준을 정비하고, 다수의 위원이 단기간에 유사한 목적으로 연이어 국외출장을 실시하지 않도록 출장 시기·인원 등을 조정하는 등 국외출장 운영의 적정성을 제고할 것		
4	위탁선거 관리경비의 세입세출예산 외 운용 근거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위탁선거관리(1131-306)	제도개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적사항	○ 동 사업 예산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위탁선거관리경비에 한정되고, 위탁단체가 부담하는 경비는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세입 세출예산 외로 운용됨에 따라 국회의 결산심사 및 감사원의 결산검사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음. 2025년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관련 위탁단체 부담경비 역시 정부 결산서에 포함되지 않았음		
		시정요구사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5년간 위탁선거경비의 연도별 수입, 집행 및 잔액 현황과 별도 계좌 관리방식을 공개하고, 해당 자금을 국가 세입 및 세출예산에 편입하거나 최소한 이에 준하는 수준의 결산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	국외출장·연구 성과의 환류체계 점검 및 수립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교육및연구기반조성(1133-331)	제도개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적사항	○ 외국 선거·정치제도 연구 국외출장은 총 2회 실시되었으며, 2025년 11월 독일 출장에서는 베를린의 선거 인력·물품 부족에 따른 투표소 혼란과 재선거 사례, 관련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주요 연구주제로 조사하였음. 그러나 출장 직후인 2026. 6. 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실제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투표소 혼란이 발생하였고, 출장과 같은 시기인 2025년 11~12월에는 위원회 내부에서 투표용지 인쇄매수 산정기준을 축소하는 지침 개정이 진행되고 있었음		
		시정요구사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외출장·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관련 정책 부서에 의무적으로 회람·검토하게 하고 그 검토 결과를 기록하는 환류 절차를 신설하며, 주요 선거 관련 정책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관련성이 있는 기존 연구·출장 결과를 참고·검토할 수 있도록 부서 간 공유체계를 강화하고, 국외출장·연구 성과가 실제 제도 개선이나 정책 수립에 활용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후 활용도를 제고할 것		
6	국외출장 관리의 적정성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위원회기본경비(7111-250), 국제교류협력(7132-345)	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적사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2022년 이후 국외출장 3건은 모두 배우자를 동반하여 실시되었으며, 배우자 관련 경비도 국외출장 예산에서 집행되었으나, 헌법기관장에 대한 예우만으로 배우자 동행의 필요성이 일률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상대국 또는 방문기관의 초청 여부, 공식 일정에서의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국외출장 시 배우자 동행이 필요한 경우 상대국 또는 방문기관의 별도 초청 여부, 공식 일정에서의 역할 및 동행 필요성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반영하여 세부 출장일정을 수립하는 한편, 배우자의 동행 일정과 관련 내용을 출장 결과보고서, 홈페이지 등에 명확히 기재·공개함으로써 배우자 동행의 필요성과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	격려금 지급기준의 객관성 확보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위원회기본경비(7111-250)	주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적사항	○ 2025회계연도 격려금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일부 우수부서나 특별한 성과를 거둔 부서에 한정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직도에 편제된 전 부서에 걸쳐 총 3,580만원을 지급하였고, 이와 별도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선거준비 격려금 명목으로 총 3,360만원을 지급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격려금이 사실상 전 부서에 관행적으로 배분되거나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보편적 보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지급 대상 선정, 금액 산정, 심사·승인 절차 및 다른 수당·보상과의 중복 여부 확인에 관한 내부 기준을 마련하고, 지급 사유와 심사 결과를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는 등 격려금 집행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		

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위원회 조사활동 종료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한 예산편성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진화위운영 (1031-300)	주의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지적사항	○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활동이 2025년 5월 26일 종료되어 현지조사를 위한 국내여비 집행소요가 감소하였으나, 예산액은 5억 400만원으로 전년(6억 3,500만원) 대비 크게 감액 되지 않아 75% 이상이 미집행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진실화해위원회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당해 소요 금액을 정확히 추산하여 적정 금액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	제2기 위원회 종료와 제3기 위 원회 출범 간 원 상복구 비용 지출 문제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진화위운영 (1031-300)	주의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지적사항	○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종료 및 사무실 임대차계약 만료로 인해 원상복구비 지출이 필요해졌으나, 해당 금액을 공사계약이 아닌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행하였고, 임대인에게 지급된 금액은 원상복구가 아닌 제3기 위원회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사용되어 본래 편성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집행이 발생하였음 ○ 진실화해위원회는 임대인에게 원상복구비 지급 시 업체 3곳에서 견적서를 받아 이 중 최저 가격을 제시한 업체의 금액을 지급하였으나, 이와 같은 비용 산정 방식은 경쟁입찰 등을 통한 업체계약 방식과 비교할 때 엄밀성이 부족함		
		시정요구사항	○ 진실화해위원회는 본래 편성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	인건비 예산요구 시 적정 인건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진화위인건비 (7001-150)	주의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지적사항	○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이 2025년 11월 26일 종료되어 직원들이 11개월을 근무하였으나, 12개월분으로 편성한 예산이 대부분 집행되었는바, 적정 인건비 예산이 편성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인건비 중 공무원 보수(110-01목)에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진실화해위원회가 집행한 금액이 편성예산보다 더 큰 상황이 4년간 지속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진실화해위원회는 향후 인건비 예산요구 시 적정 인건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4	예산편성목적에 부합하는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진화위기본경비 (7002-250)	주의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지적사항	○ 기타운영비 비목(210-16목)과 포상금 비목(310-03목) 등 서로 다른 두 비목에서 포상금 집행이 이루어졌는데, 집행지침 상 기타운영비에서 우수부서·직원에 대한 격려금 등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이나, 이는 일정한 포상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급하는 포상금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우수직원 포상금은 포상금 비목(310-03목)에서 집행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포상금 비목에 편성된 900만원 중 480만원만 집행하고 420만원은 미집행 후 이체한 반면, 기타운영비 비목에서 총 38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는데, 포상금 비목에 편성된 예산으로 이를 모두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기타운영비 비목에서 포상금을 지급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임		
		시정요구사항	○ 진실화해위원회는 향후 포상금 등을 포상금 비목에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예산편성목적에 부합하는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할 것		

라. 인사혁신처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PSAT 확대 시행 관련 사업 타당성 확보 및 구체적 제도 운영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가시험시행(1631-300)	제도개선	인사혁신처
		지적사항	○ 인사혁신처는 PSAT를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전반에 확대·공동활용할 계획으로, 이를 검토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하는데 동 사업비 8,800만 원을 집행하였음. 그러나 공공기관의 PSAT 수요 및 활용 가능성(직무평가 대체 불가)에 대한 검증이 미흡하여, 기관의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는 적고 구직자의 시험 준비 부담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인사혁신처는 PSAT의 공공부문 확대 시행에 앞서 실제 도입 수요와 활용 가능성을 충분히 검증하고, 중장기 재정소요와 수험생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구체적인 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		
2	퇴직(예정)공무원 지원사업의 유사·중복 기능 조정 및 중·장기 체계 재정비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운영(2044-305)	제도개선	인사혁신처
		지적사항	○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의 퇴직 전·후를 지원하기 위하여 각각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2025년 예산(계획)현액 총 103억 4,300만원), 두 기관의 지원사업이 각각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사업 간 일부 중첩이 발생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인사혁신처는 퇴직(예정)공무원 지원사업의 대상과 지원내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고, 공무원연금공단과의 역할분담 및 사업 간 연계·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등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퇴직지원 체계를 재정비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	인건비 예산 편성 정확성 개선 및 집행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인건비(본부)(7001-100)	제도개선	인사혁신처
		지적사항	○ 인사혁신처는 2025회계연도 본부 인건비 부족액 19억 1,000만 원(예산액의 약 4.8%)을 인재개발원 인건비에서 13억 1,000만원을 전용하고 수습행정관 등 인건비에서 6억원을 내역변경하는 방법으로 조달(2025.12.8.)한 것과 관련하여 정원 증가, 보수 인상률 상승, 육아휴직 확대 등을 인건비 부족의 주요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상당 부분 예측 가능한 요인임		
		시정요구사항	○ 인사혁신처는 정원 변동, 보수 인상률, 육아휴직수당 등 최근 인건비 집행추세와 제도 변화를 예산 편성 단계에서 충실히 반영하여 인건비 소요를 정확히 추계하고, 인건비 부족으로 인한 반복적인 이 ·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관리를 강화할 것		
4	행정소송 배상금 예산의 적정 계상 및 반복적 전용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윤리복무국(7011-254)	주의	인사혁신처
		지적사항	○ 인사혁신처는 윤리복무국 소관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 결과 배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관련 예산(배상금(310-02))을 편성하지 아니하고, 일반수용비 · 임차료 등 부서 운영경비를 감액하여 자체전용(3회)하는 방법으로 이를 충당하였고, 이후 연말에 재원이 되었던 부서 운영경비(일반수용비)가 부족해지자 피복비 · 임차료에서 세목변경을 통해 이를 다시 충당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인사혁신처는 윤리복무국 소관 행정소송의 최근 3년간 수행 · 확정 현황과 배상금 지급 실적을 분석하여 2027년도 예산 편성시 배상금(310-02)을 적정 규모로 계상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	공무원연금기금 미수납액 증가 원인 파악 및 제도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공무원연금기금 - 일반회계전입금 등(*) * 일반회계전입금(40-91-911) 및 기타특별회계전입금(40-91-912), 자치단체연금부담금(12-55-553)	제도개선	인사혁신처
		지적사항	○ 2025년 공무원연금기금의 미수납액 규모가 이전 5년간(2020-2024)의 연도별 수치에 비해 월등히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특히, 미수납액 증가분의 약 96%를 차지하는 퇴직수당 부담금 미수납액이 전년 대비 2.4배로 증가하였음. 그런데 국가직·지방직공무원의 퇴직인원은 2024년 대비 감소하여 퇴직수당부담금 증가의 원인을 퇴직자 증가에서 찾기 어려운바, 퇴직수당부담금 정산 관련 법령의 미비 또는 미준수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됨		
		시정요구사항	○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기금 미수납액 증가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미수납액 정산 구조를 개선할 것		
6	주택임대 보증금반환 규모 예측의 정확성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공무원연금기금 - 주택사업관리(3151-333)	제도개선	인사혁신처
		지적사항	○ 공무원연금공단은 2025년 4분기 임대보증금 반환예산 부족을 예상하고 11월에 529억 7,300만원을 추가 확보하였으나, 이 중 약 20.4%에 해당하는 108억 500만원이 불용되었음. 회계연도 종료 직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도 상당액이 불용된 것은 반환 소요 추계가 실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퇴거세대 추이와 주택시장 여건 등을 반영하여 주택임대보증금 반환 소요를 정확히 추계하도록 하고, 과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과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관리를 강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	맞춤형복지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단계별 계획 · 재원 확보 및 시스템 안정성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공무원연금기금 - 공무원연금정보화경비(정보화)(3576-207)	제도개선	인사혁신처
		지적사항	○ 맞춤형복지시스템은 2014년 구축 이후 노후화가 진행된 가운데 이용자가 47만명에서 100만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전체 운용장비의 89.5%가 유지보수가 어려운 상태로, 서비스 불능 장애가 수차례 발생하는 등 시스템 안전성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공무원연금공단은 2025년에 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BPR/ISP(2억 5,000만원)를 완료하였으나, 후속 구축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실제 재구축 사업에는 착수하지 못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맞춤형복지시스템 재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단계별 구축계획과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재구축 전까지 기존 시스템의 장애 및 보안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관리할 것		

마. 경찰청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과태료 체납 관리 및 수납 제고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과태료(56-563)	제도개선	경찰청
		지적사항	○ 연례적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매년 50% 내외로 저조하며, 2025년도 미수납액은 1조 1,040억 6,100만원에 달하는 등 과태료 징수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며, 5년 이상 장기 미납액이 전체의 60.7%를 차지하는 등 장기체납 문제가 심각함		
		시정요구사항	○ 경찰청은 과태료의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체납 발생 원인 및 장기 체납 누적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		
2	경찰조직 신설·개편 시 중장기 치안수요 및 인력수요 검토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 유지(1131-311)	제도개선	경찰청
		지적사항	○ 광역예방순찰대는 2024년 28대 330개 팀, 2,668명 규모로 신설되었으나, 2026년에는 1,051명으로 출범 당시보다 60.6% 감소하였으며, 조직 축소 과정에서 광역예방순찰대용으로 구매한 순찰차 330대 중 100대가 타 조직으로 전환되어 사용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경찰청은 조직 신설 이후 투입된 인력·차량·장비 및 관련 예산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규모 조직 신설·개편 시 중장기 치안수요와 인력·재정소요를 면밀히 분석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	신규 장비 도입 시 사업방식에 대한 사전검토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범죄대응 및 치안상황관리(1132-312)	제도개선	경찰청
		지적사항	○ 비통신형 바디캠 도입 전제로 예산 확정 후 불과 2~3개월만에 통신형으로 방식을 변경하여 세출예산을 다른 비목으로 전용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중장기 재정부담 구조도 154억 2,800만원(2년)에서 194억원 8,600만원(5년)으로 변경됨		
		시정요구사항	○ 경찰청은 사업 방식 변경 경위와 방식별 총비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신규 장비 도입 시 예산 편성 전에 사업방식의 적정성 및 중장기 재정부담을 충분히 검토하는 등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		
4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실제 소요액 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사이버수사역량강화(1231-315)	제도개선	경찰청
		지적사항	○ 추정으로 증액한 일부 자산취득사업에서 증액분 4억 3,000만원 중 9,954만원(22.5%)이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으로 나타났는바, 실제 소요액과 예상 계약금액 등을 보다 정확하게 산정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경찰청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과거 계약실적과 조달가격, 예상 낙찰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실제 소요액을 정확히 추계하고, 추정 증액 후 불필요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의 정확성을 제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	사이버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성과목표의 적정성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사이버수사역량강화(1231-315)	제도개선	경찰청
		지적사항	○ 2025년 사이버범죄 발생건수가 36만 1,577건에 달하는 상황에서 성과목표를 15만 5,253건으로 설정한 것은 실제 사이버범죄 발생 규모에 비해 목표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시정요구사항	○ 경찰청은 사이버범죄 발생 추이 및 검거실적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이버수사역량 강화사업의 성과목표를 적정 수준으로 설정하고,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관리를 강화할 것		
6	교육수요를 반영한 급식비 예산 편성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경찰인재개발(4132-311)	제도개선	경찰청
		지적사항	○ 경찰인재개발원은 2025년 교육인원을 1만 4,895명으로 계획하였으나 실제 수료인원은 9,948명에 그쳤으며, 교육인원 감소에 따라 직무교육과정 급식비도 당초 예산 7억 8,700만원 중 5억 1,600만원만 집행하였음 - 급식비는 2023년 61.3%, 2024년 62.4% 등 당초 예산 대비 집행률이 지속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경찰청은 경찰인재개발원의 직무교육 수요와 실제 수료인원 등을 정확히 예측하여 급식비 예산을 적정 규모로 편성하고, 연례적인 집행부진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관리를 강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	경찰차량 적기 조달을 위한 사업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경찰기동력강화(4231-311)	제도개선	경찰청
		지적사항	○ ‘경찰기동력강화’ 사업 중 노후차량 교체 내역사업과 관련하여, 예산현액 839억 8,100만원 중 283억 9,100만원을 집행하고 550억 9,100만원을 이월함 ○ 경찰청은 과거 납기지연 업체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조달시스템에 반영된 이후 신규 발주를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지체상금 부과에 대한 업체의 가처분 신청 등으로 해당 업체의 납기지연 이력이 조달시스템에 반영되는 것이 지연되면서 신규 발주도 지연됨		
		시정요구사항	○ 경찰청은 차량별 교체주기와 납품기간을 고려하여 발주를 조기에 추진하고, 특정 업체의 납기지연이나 법적 분쟁이 전체 차량 도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계약 및 사업 관리를 개선할 것		
8	경찰 보호장비의 체계적인 교체계획 수립 및 적기 조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피복관리(4231-313)	제도개선	경찰청
		지적사항	○ 경찰청은 2016~2017년에 도입된 방탄복 2만 3,000벌 중 내구연한 10년이 도과한 2016년 도입분 1만 1,500벌을 신형 방탄복으로 교체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관련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지 않아 경찰관 희망품목비에서 51억 8,000만원을 조정하여 사용함 ○ 또한 2025년 10월에야 신형 방탄복 구매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2026년 5월까지도 계약이 체결되지 못했음		
		시정요구사항	○ 경찰청은 방탄복 교체 예산 미편성 사유 및 희망품목비 조정 경위를 명확히 하고, 향후 보호장비별 내구연한 및 노후도를 반영한 중장기 교체계획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9	전자충격기 도입 사업의 계약방식 변경 시 일정 및 예산 집행 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장비유지관리(4231-314)	제도개선	경찰청
		지적사항	○ 경찰청은 국산 제품의 도입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당초 경쟁입찰 방식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변경하였으나, 이로 인해 발주 및 계약이 지연되어 당초 연내 조달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고 예산 전액을 이월함 - 특히 2025년 사업 지연으로 실제 구매단가가 당초 예산상 220만원에서 289만원으로 약 31% 상승하여 당초 예산보다 2억 1,335만원 많은 58억 2,335만원을 집행하는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경찰청은 향후 장비 도입 과정에서 계약 방식을 변경할 경우 관리 부실로 인한 사업 일정 지연과 예산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집행관리를 강화할 것		
10	마약검사사업의 법적·제도적 근거 정비 및 예산 편성 절차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감사·감찰·인권보호활동(7133-311)	주의	경찰청
		지적사항	○ 무작위 마약검사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 등에 대한 내부 검토 및 국가경찰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검사키트 구매예산 상당액이 이월됨 ○ 또한 2025년 검사에서 고위직 대상자 911명 중 18명이 동의하지 않아 검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도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시정요구사항	○ 경찰청은 관련 법령 및 하위규정을 조속히 정비하고 검사 대상·선정방식·절차·검사 거부 시 처리절차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기본권 제한과 관련된 신규사업은 법적·제도적 검토를 완료한 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1	경찰위로·복지 기금의 재정 외 운영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경찰복지증진(7135-311)	제도개선	경찰청
		지적사항	○ ‘재단법인 경찰위로·복지기금’은 경찰청의 재정 외 자금으로서, 국가기관이 실질적인 운영 주체로 기능하면서도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책임성·투명성·의회 통제를 약화시킬 소지가 있으므로, 재정운영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		
		시정요구사항	○ 경찰청은 기금 설립 이후 재원별 조성경위와 연도별 수입·지출·잔액 및 사업별 집행 내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외부 전문가 참여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국가 재정체계 내에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관계기관과 검토할 것		
12	KOICA 사업비의 회계관리 및 집행 절차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제치안활동강화ODA(3133-312)	제도개선	경찰청
		지적사항	○ 경찰청은 KOICA의 ODA 프로젝트형 사업 등을 위탁받아 총 6개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KOICA로부터 누적 45억 600만원을 송금받아 집행함 - 경찰청이 국가기관으로서 실질적인 사업 수행과 자금 집행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해당 사업비가 경찰청의 세입·세출예산에 포함되지 않아, 경찰청 회계관계직원의 관여 없이 사업담당자가 직접 집행하여 부적정 집행 적시 확인이 어려움		
		시정요구사항	○ 경찰청은 외교부 및 KOICA와 협의하여 경찰청이 직접 집행하는 ODA 사업비를 수입 대체경비 등 세입·세출 내역에서 관리하는 방안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현행 방식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최소한 경찰청 회계관계 직원의 사전·사후 확인을 의무화 하는 등 별도 계좌에 대한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3	경찰병원 국외교육여비의 집행부진 개선 및 사업 존치 여부 재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특별회계 - 진료업무운영관리(4331-311)	제도개선	경찰청
		지적사항	○ ‘진료업무운영관리’ 사업 중 전문의의 해외 선진의료 연수를 지원하기 위한 국외 교육여비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 연속 전액 불용되었음 ○ 경찰청은 장기간 신청자가 없는 상황에서도 사업의 운영방식 및 존치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동일한 예산이 매년 편성되고 전액 불용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경찰청은 국외교육여비가 6년 연속 전액 불용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원금액·의무복무기간 등 사업조건을 현실화하고, 제도개선 이후에도 실질적인 수요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 폐지 또는 예산 미편성을 포함하여 사업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할 것		

마. 소방청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징계부가금 감면 및 재결정 관련 징계위원회 운영 일정의 체계적 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세입 - 징계부가금(12-56-564)	제도개선	소방청
		지적사항	○ 소방청은 해당 징계부가금에 대한 감면 및 재결정을 위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징계위원회가 2025년도 중에 개최되지 못함에 따라 해당 징계부가금이 장부상 미수납액으로 남게 되었음 ※ '25.12.3일에 환수금 및 가산징수금 완납		
		시정요구사항	○ 소방청은 징계부가금 감면 및 재결정을 위한 징계위원회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최종 확정된 징계부가금을 조속히 징수 납부 처리하며, 향후 징계부가금 감면 및 재결정을 위한 징계위원회의 심의가 결산 연도를 넘기지 않도록 징계위원회 운영 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		
2	119항공 정비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철저한 사업 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전국 소방헬기 통합관리 운영 지원(1132-312)	제도개선	소방청
		지적사항	○ 공사비의 대규모 이월 부적절 : 2025년 12월에 공사에 착공함에 따라 공사비 예산(114억 9,500만원)의 74.0%인 85억 1,700만원이 2026년으로 이월되었음 ○ 2027년 7월에 준공 예정인 119항공정비실의 정상 가동을 위해서는 전문 정비인력의 적기 충원, 지자체 소유 헬기 정비를 위한 「항공안전법」 개정 및 정비조직원증 취득, 중앙-지방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소방청은 119항공정비실 건립 사업에서 대규모 이월이 발생하였는 바 사업 과정을 철저히 관리해 119항공정비실이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고, 통합정비체계 구축일정에 맞추어 정비인력 확보와 장비 구축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	국고보조금 교부 절차 개선 및 집행 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화재안전 및 시설기준 개발(1133-300)	주의	소방청
		지적사항	○ ‘화재안전 및 시설기준 개발’ 사업 중 ‘25년에 추경으로 편성한 ‘산림인접마을 비상 소화장치함 설치 지원’ 내역사업은 산불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임. 보조금 교부 시에는 보조금 분할교부 및 지방비 부담능력·연내 집행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하나 소방청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교부하였음 - 동 사업의 실집행액은 약 20억 1,600만원(집행률 39.1%)이고, 특히 강원(집행률 0%)·경북(집행률 1.6%)·충남(집행률 6.3%)은 실집행률이 저조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소방청은 국고보조금 교부 시 지자체별 재정력 및 연내 집행 가능성을 교부 전에 확인하고 사업 진도에 따라 보조금을 분할 교부하는 등 국고보조금 교부·집행관리 절차를 강화하며,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집행지연 등이 최소화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4	소방안전 빅데이터 분석 결과 활용도 제고 및 과제 관리 체계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119빅데이터 분석·운영(1133-311)	제도개선	소방청
		지적사항	○ 분석결과 활용감소에 따른 사업 효율성 저하 : 2021년 이후 분석결과 활용현황을 살펴보면 분석 주제 1건당 평균 활용 횟수는 2022년 9.6회, 2023년 6.8회, 2024년 3.5회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과제 선정 및 활용 관리 필요 : 소방청은 119빅데이터 분석 사업 목적을 “과학적·선제적인 소방 정책수립 및 현장대응 지원” 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일부 과제는 기존 정책의 효과를 재확인하거나 정책 홍보를 지원하는데 활용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소방청은 119빅데이터 분석 사업의 과제선정 기준, 활용성과 관리, 환류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빅데이터 분석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과제가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	소방 예방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의 예산 편성·집행 및 성과 관리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소방행정 정보화(정보화)(1150-506)	제도개선	소방청
		지적사항	○ 부적정한 예산 편성 및 타 세부사업 예산 집행 부적절 - ‘25년도에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일반연구비만 6억 2,400만원 계상되어 있을 뿐, 동 사업에 따르는 감리비, 조달수수료, 심의 수당 등은 독립적으로 편성되지 않았음 - 이에 따라 감리비(4,200만원)는 소방정보시스템 구축 세부사업(1150-500)의 관리용역비 낙찰차액을 전용해서 집행하였고, 심의 수당과 조달수수료는 빅데이터 분석운영 세부사업(1133-311) 등 타 세부사업에 편성된 수용비를 전용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하였음 ○ 소방예방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성과 확인 필요 - 동 사업을 통해 기존에는 소방서 등을 직접 방문하여 처리했던 소방민원 중 소방시설 감리계획서 등 31종을 온라인 상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으나, 현 통계만으로는 동 사업의 온라인 민원 처리 증가에 대한 영향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움		
		시정요구사항	○ 소방청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적정하게 편성하고 다른 사업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하지 않는 등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며, 이용자 만족도, 처리기간 단축 등 소방예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스템 고도화 및 운영 개선에 반영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	119구급 현장대응 스마트 시스템 구축 사업의 철저한 일정 관리 및 성과 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119구급 현장대응 스마트시스템 구축(1150-511)	제도개선	소방청
		지적사항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집행 부진 및 대규모 이월 - 동 사업은 소방청의 자체 개발 결과물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서버에 연계한 후 기능 점검 및 보안 확인 절차를 거쳐야 사업이 완료되는 구조인데, '25년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에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동 사업 완료 시점이 '26년 7월로 연기되어, ' 25년도 예산 집행률이 10.0%로 저조했음 ○ 이송병원 선정기능 실효성 미흡 - '이송병원 선정기능' 의 구급대 이용률이 21.8%('26년)이고 의료기관 응답률은 47.9%(' 25년)임 - 현재 통계도 환자 단위가 아닌 요청 건수 기준으로 산출돼 같은 환자에 대한 반복 요청 등이 포함될 수 있어 실제 활용성과를 정확히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소방청은 '25년도 이월사업과 '26년도 사업 일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환자 중증도별 이용률, 의료기관 응답률, 이송시간 단축 효과 등 실효성 있는 성과지표를 마련하여 이송병원 선정 기능의 현장 활용 성과를 제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철저한 일정 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리튬기반 배터리 제조소 및 저장·취급 시설 안전을 위한 기술개발(R&D)(1160-627)	제도개선	소방청
		지적사항	○ 연구기관의 연구비 실행행위 저조 - 5개 신규 과제 모두 9개월 분을 편성하였으나, 부처 간 협의 등에 시간이 걸려 ‘25년 6월부터 연구비를 지출하는 등 사업이 지연되었음. 그 결과, 5개 과제 모두 연구비 일부를 집행하지 못하였고, 특히 ‘리튬금속 등 배터리 소재·제품에 대한 화재성상 및 소화 성능평가 테스트베드 구축’ 과제는 집행률이 19.8%에 불과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소방청은 국가연구개발(R&D) 사업 추진 시 협약체결 등을 적기에 수행하여 연구사업이 일정 대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보다 면밀하게 수행할 것		
8	소방장비 도입사업의 사전검증 및 철저한 사업 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중앙119특수구조대 지원(1171-301)	제도개선	소방청
		지적사항	○ ‘25년 사업(1대): 입찰 조건 설계 미흡으로 인한 전액 이월 - ‘25년 추경 배면물탱크 구매 사업은 외화 물품 구매임에도 입찰 기준을 원화로 설정하여 환율 변동으로 입찰금액을 초과하여 전액 이월 발생 - 소방청은 ‘25년도에 계약 기준액을 ‘원화’로 설정하였는데, 환율이 계약요청일(‘25.7.21) 대비 개찰일(‘25.12.23.)에 1달러 당 91원이 상승하여* 예산 대비 입찰금액이 초과되었음 * 계약요청일 1USD=1,391.70원, 개찰일 1USD=1,482.70원 ○ ‘22년 추경을 통해 추진된 총 10대의 헬기 배면물탱크 설치사업 중 현재까지 4대가 미완료 - 동사업은 추경 편성 당시 SB(Service Bulletin, 제작사 기술지침) 발행 결정만 있었을 뿐 실제로는 ‘25년 하반기에 SB가 최종 확정되는 등 사전 준비가 불충분하여 사업이 장기화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소방청은 향후 유사한 외산 장비 도입시 제작사 기술지침 확정 일정을 사전에 검토하고 환율변동 등 집행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한 관리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며 국고보조사업의 시·도별 추진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고, 예산편성 전 제작사의 기술보증 및 부품생산 가능성 등에 대한 사전기술검증 절차 도입을 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9	공급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추가 감리비의 공급업체 부담 근거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중앙119특수구조대 지원(1171-301)	주의	소방청
		지적사항	○ 선박 공급업체의 귀책사유로 감리비 증액분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해당 업체가 부담하도록 할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국가가 이를 부담 - 선박건조 계약기간이 만료(' 25.6.30.) 이후에도 만 6개월 동안 책임감리가 추가로 수행되었고, 책임감리 계약이 연장되면서 계약금액이 8,900만원에서 2억 6,900만원으로 1억 8,000만원 증가되었음 - 실제 선박 건조에 대규모의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에 별도의 책임감리 계약을 발주하는 사유가 당초 계획된 품질 확보 및 안전성 보장 등을 확보하기 위함인 점을 고려할 때, 선박 공급업체의 귀책사유로 추가적으로 발생할 감리비 증액은 품질 및 안전성 보장 측면에서 선박 공급업체가 부담하는 것이 적정하나, 당초 선박 공급 계약에 이 내용이 없어 소방청이 책임감리비 추가분을 부담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소방청은 제품 공급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책임감리 기간이 연장되어 추가 감리비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비용을 공급업체에 청구할 수 있도록 계약조건에 근거를 명시할 것		
10	국고보조 사업의 연례적 집행 부진 사유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실화재훈련시설 구축(1132-324),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1131-302)	제도개선	소방청
		지적사항	○ ‘실화재훈련시설 구축’ 사업: 서울시는 ‘24년에 교부받은 13억 6,500만원을 집행하지 않고 전액 ’ 25년으로 이월하였고, ‘25년 6월에 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11월에 선금 약 6억 원만 집행한 후 7억 4,800만원(교부액의 54.8%)을 불용 반납함 ○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사업은 대체 인력 확보를 위해 국고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국고보조율 100%), 인구가 적고 지리적 거리가 넓은 도 단위 광역지자체에서 실집행 실적이 저조함 * 실집행률: 경북(45.8%), 충북(63.9%), 경남(68.7%) 등		
		시정요구사항	○ 실화재훈련시설 구축(1132-324),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1131-302) 사업의 보조금이 연내에 집행되지 않는 사유를 분석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3. 시정요구사항(예비비)

가. 행정안전부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화재피해복구 예비비의 적정한 편성 · 집행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운영(정보화) (2036-500)	제도개선	행정안전부
		지적사항	○ 화재피해복구를 위해 예비비 약 320억원을 배정하였으나 상당액이 이월·불용되는 등 연도 내 집행이 미흡하였으므로, 향후 예비비 배정 시 사업의 시급성, 소요액 및 연도 내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행정안전부는 향후 재난·사고 등에 따른 예비비 배정 단계에서 사업별 추진일정, 소요액 및 회계연도 내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 집행 가능한 범위에서 예비비를 배정하고, 배정된 예비비가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하는 등 예비비 운용의 적정성을 제고할 것		
2	선거 관련 예비비의 합리적 편성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공직선거관리 및 지방의회역량강화(1132-300)	제도개선	행정안전부
		지적사항	○ 역대 대통령선거 등의 실집행액 등 과거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예비비가 실제 필요한 규모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다고 보이며, 6.3. 대통령선거는 대통령 궐위에 따라 실시되어 실질적인 선거관리기간이 58일에 불과하였음에도 실제 선거기간 및 집행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행정안전부는 행정실무원 인건비는 4개월, 상황실 물품 및 전산장비 임차료 등은 3개월을 기준으로 예비비를 산정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행정안전부는 향후 선거 관련 예비비 편성 시 선거 유형별 준비기간, 과거 비목별 집행 실적 및 실제 집행수요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예비비의 과다 편성과 대규모 불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예비비 집행 사업 소요 추계의 정밀화 필요	관련사업명	총괄 - 예비비	주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적사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예산의 전체 불용액은 282억 9,700만원이고, 예비비가 배정된 10개 세부사업에서 발생한 불용액은 총 267억 9,400만원으로, 불용액 기준 전체 불용액의 94.7%에 해당하는 불용이 예비비가 배정된 사업에서 발생함		
		시정요구사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예비비의 비목별 편성액, 집행액, 불용액을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예비비 요구시 과거 공직선거 집행실적과 실제 집행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과다 편성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		
2	임차료 세목조정의 적정성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대통령선거관리(1131-300)	제도개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적사항	○ 예비비 배정 6주 후인 2025.5.20. 동 사업 내 일반수용비(1억원) · 특근매식비(2억 3,000만원) · 일반용역비(8억 3,000만원) · 관리용역비(4,100만원)에서 총 12억 100만원이 임차료로 (세목)조정되었으나, 이 중 8억 7,600만원(조정액의 72.9%)이 불용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임차료로 집행된 투 · 개표소 시설 및 회송차량 확보 방식의 변화 추세를 선거경비 산출기준에 사전 반영하고, 세목조정 시에도 잔여 선거일정 기준의 실집행 가능 규모를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	긴급 수의계약의 특정 업체 집중 지양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대통령선거관리(1131-300)	주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적사항	○ 대통령선거관리 사업에서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계약은 총 69건, 계약금액은 총 272억 500만원이며, 이 중 “긴급한 행사 등으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를 근거로 체결한 계약은 15건, 209억 7,300만원으로 전체 계약금액의 77.1%를 차지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향후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선거물품·용역에 대해서는 대체 가능한 업체와 시장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복수 업체의 사업 참여가 가능하도록 기술·규격상 진입요인을 점검하는 등 경쟁 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수의계약 사유 발생시 특정 업체에 대한 장기적 의존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할 것		
4	투표용지 인쇄매수 산정기준에 대한 정기적 점검·평가체계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대통령선거관리(1131-300)	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적사항	○ 지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투표용지 인쇄매수 산정기준의 문제로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였고, 그 원인 중 하나로 2025회계연도 중 이루어진 인쇄매수 산정기준 변경 절차의 적정성 및 투표용지 산정방식 검증이 문제가 제기되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통상 지방선거 실시 전년도에 지방선거관리경비 산출기준을 전반적으로 점검·개정하고 있으나, 투표용지 인쇄비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점검·평가 자료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음. 이는 선거관리의 핵심 물품인 투표용지의 인쇄매수 산정방식이 실제 수요와 집행실적을 토대로 정기적으로 검증·보완되기보다 기존 기준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측면이 있음을 보여줌		
		시정요구사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등 선거관리 핵심 물품의 예산 산출기준에 대하여 선거가 있는 연도마다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	대통령선거 용역비 급증에 대한 점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대통령선거관리(1131-300)	제도개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적사항	○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일반용역비와 관리용역비가 직전 대선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일반용역비는 제20대 대통령선거 94억원에서 166억원으로, 관리용역비는 8억원에서 32억원으로 증가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용역별 계약건수, 계약 방식, 계약금액 및 주요 과업을 비교 및 분석하고, 용역비가 급증한 구체적인 사유와 향후 비용절감 방안을 마련할 것		
6	특별정려금 지급 필요성 및 지급방식 재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대통령선거관리(1131-300)	제도개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적사항	○ 특별정려금 지급대상은 규정 개정으로 기존 선관위 직원에서 파견·위촉공무원까지 확대되었으나, 15일 이상 근무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인해 실제로는 읍·면·동선관위 간사·서기만 지급이 가능하고, 투표사무원·개표사무원 및 투표관리관 등 단기간 위촉되는 선거사무종사자는 여전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음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에게는 업무성과와 관계없이 월정액으로 일률 지급되고 있어, 본연의 선거사무 수행에 대해 별도의 격려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의문이 제기됨		
		시정요구사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월정액으로 지급되고 있는 특별정려금에 대하여 지급 필요성과 지급 방식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 까지 포함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의 수당 체계를 참고하여 특별정려금의 명칭 정비와 관련한 논의에 적극 노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	재외선거관 파견 여건을 반영한 소요액 산정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대통령선거관리(1131-300)	주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적사항	○ 재외선거 인력운영 세부사업의 비목 중 국외업무여비(220-02)는 3억 9,200만원 중 6,400만원(16.3%)만 집행되었으며, 그 중 파견인력 체재지원 명목은 3억 3,600만원 중 4,500만원(13.4%)만 집행되었음 ○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관 파견은 2025년 4월 출국, 6월 복귀의 약 2개월 남짓한 단기 파견이었는바, 그럼에도 통상적인 1년 단위 파견(가족동반)의 편성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여비를 산정한 결과, 세부사업의 절반이 넘는 불용이 발생한 것임		
		시정요구사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관리 예산의 불용 원인을 세부 비목별로 분석하고, 향후 궐위선거 등 긴급한 선거에서도 실제 파견기간, 인력수요 등을 반영하여 예비비를 적정 수준으로 산정할 것		

4. 부대의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관리상 문제점을 철저히 점검하고,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및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쇄신대책을 마련한다.
- 인사혁신처는 청년인턴의 중도 퇴사 등에 따른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고, 근무환경 개선·업무경험 제공 등을 통해 청년인턴이 실제로 업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 경찰청은 청년인턴의 중도 퇴사 등에 따른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고, 근무환경 개선·업무경험 제공 등을 통해 청년인턴이 실제로 업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 소방청은 청년인턴의 중도 퇴사 등에 따른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고, 근무환경 개선·업무경험 제공 등을 통해 청년인턴이 실제로 업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